정책보고서 2011-

정경희 이금룡 홍백의 이수연 김소영
권중돈 김기홍 선우덕 우석진 이소정
박영란 장석인 정순둘 천현숙 한경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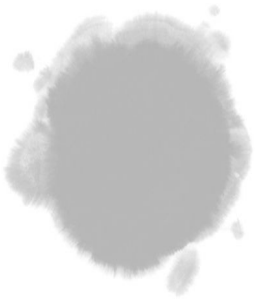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산발적인 관심과 일시적인 정책적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기회로 작용될 때 그 정책적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2010년에 은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20년이 되면 이 세대가 전부 65세 이상이 되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다. 이들은 노년기를 향유하고 있는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하여 현재는 노인이 아니지만 곧 노인이 될 노화의 과정 에 있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노화과정을 경험해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들이 모두 노인이 될 2020년의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부담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즉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가에 따라서 이들이 우리사회의 자원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으며, 베이비 부머 자신의 삶의 질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베이비 부머는 총 인구의 14.6%로 그 규모가 크며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 규모는 노인인구 규모인 11.3%보다 큰 규모이다. 이러한 양적 규모 외에도 이들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들의 전 세대인 현재의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베이비 부머가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제특성은 그들의 욕구의 내용 및 서비스 기대수준 등에 변화를 가져와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험해온 우리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

여 전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처를 실시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의 삶의 질 향상과 노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양적·질적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 2015)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하는 등 정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에서 베이비 부머로 확장하였다. 또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자료 및 정책방안 모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가 진정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산발적 노력을 종합하고 유기적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구심점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체계적·유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매월 개최된 미래구상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기초로 하여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수연 연구원과 김소영 연구원이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해주신 본원의 오영희 부연구위원과 이윤경 부연구위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2011 12

『

』

< 2-1> 「 」 18
< 3-1> 70
< 3-2> · 72
< 3-3> , 73
< 3-4> , 73
< 3-5> , 74
< 3-6> , 74
< 3-7> 75
< 3-8> 75
< 3-9> , 76
< 3-10> , 77
< 3-11> 77
< 3-12> 78
< 3-13> 79
< 3-14> 80
< 3-15> 83
< 3-16> , 84
< 3-17> 85
< 3-18> 86
< 3-19> 87
< 3-20> (1 5 1) 88
< 3-21> (, ,) 90
< 3-22> (, ,) 91
< 3-23> 93
< 3-24> 96

< 3-25> 98
< 3-26> 98
< 3-27> 101
< 3-28> 104
< 3-29> 105
< 3-30> 106
< 3-31> , 107
< 3-32> , , , 107
< 3-33> , 108
< 3-34> 109
< 3-35> 109
< 3-36> 110
< 3-37> 110
< 3-38> 111
< 3-39> 111
< 3-40> 112
< 3-41> 113
< 3-42> ( ) ( ) 115
< 3-44> 145
< 3-45> , 1991~2010 147
< 3-46> , 148
< 3-47> 149
< 3-48> 153
< 3-49> 155
< 3-50> 156
< 3-51> 167
< 3-52> 168

< 3-53> 171
< 3-54> 173
< 4-1> 188
< 4-2> 190
< 4-3> · 190
< 4-4> (2010) 191
< 4-5> 194
< 4-6> 195
< 4-7> 196
< 4-8> 200
< 4-9> 235
< 4-10> 10 235
< 4-11> 236
< 4-12> 237
< 4-13> 237
< 4-14> 255
< 4-15> : 45~49 256
< 4-16> 257
< 4-17> 259
< 4-18> PIR, RIR 278
< 4-19> 279
< 4-21> 283
< 4-22> 295
< 4-23> 296
< 4-24>
298
< 4-25> 301

< 4-26> 314
< 4-27> 325
< 5-1> 338

[1-1] 13
[3-1] 69
[3-2] (vs. & vs.) 114
[3-3] IPA 117
[3-4] IPA 118
[3-5] 146
[3-6] 148
[3-7] 149
[3-8] 151
[3-9] 152
[3-10] 158
[3-11] 159
[3-12] 160
[3-13] 160
[3-14] 161
[3-15] 162
[3-16] 163
[3-17] 164
[3-18] 164
[3-19] 165
[3-20] 166
[3-21] 167
[3-22] 170
[3-23] 171
[3-21] 173

[3-25] 174
[3-26] 174
[3-27] 175
[3-28] 176
[3-29] 176
[3-30] 177
[4-1] OECD : 1986, 1996, 2006 186
[4-2] OECD : 1986, 1996, 2006 186
[4-3] 187
[4-4] 45 187
[4-5] 189
[4-6] 205
[4-7] 207
[4-8] 211
[4-9] 225
[4-10] 228
[4-11] 234
[4-12] 238
[4-13] 252
[4-14] (2010, %) 253
[4-15] (2010, %) 255
[4-16] Health Plan 2020 261
[4-17] 264
[4-18] 267
[4-19] 「 21」 270
[4-20] 276
[4-21] 282

[4-22] 291
[4-23] 296
[4-24] 306
[4-25] 308
[4-26] 309
[4-27] 310
[4-28] 333

Abstract

Policy Response to the Retirement and Ageing of Baby Boomers

.

14.6% ,

. ,

40 50 ,

.

.

'F F B B .' 11

, 2

, 4 .

" ", " ", "

", " ", " ", " ", " -

". E 4 :

, ,

, .

2 .

. B

,

. B

' F C ' ,

- - -

.

1. 연구 목적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체계적·유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이 활용되었음.

○ 매월『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정취.

○ 관련 조사자료의 재분석 및 사례조사 실시

○ 해외출장과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은 2011년 1월 27일의 1회 포럼부터 2011년 12월 16일의 11회 포럼까지 총 11회의 포럼을 개최하였음.

분야별로 도출된 정책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 공공이나 민간의 참여만으로는 베이비 부머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음.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 현세대 노인과는 다른 특징과 욕구를 갖는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의 특성을 반영된 특화된 서비스와 정책 개발과 동시에 정책의 기본기조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우리가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 정책에서 전제하였던 평생고용, 전통

적인 성역할분담, 기본욕구의 충족 중시 등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대응해가야 할 것임.

○ 각 제도는 별개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서는 안되며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개별정책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분야별로 도출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채과제는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 ▪ ▪

심층연구가 필요한 여가활동 및 소득불평등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 실시되었음. 양적 및 질적 연구결과 도출된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동 실태와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시간에는 평일과 휴일간의 차이가 큼.

–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3.68시간이나 휴일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6.56시간임.

○ 이들의 희망에 비하여 실제의 여가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현되지 못한 여가욕구가 많음.

– 희망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동일한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 베이비 부머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여가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남.

○ 성별 여가활동 행태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

으로 여가시간이 많지만, 남성(월 평균 약 22만 2천원)이 여성(월 평균 약 13만원)보다 약 9만2천원 더 많이 여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 여가활동의 목적에도 성별 차이가 커, 남자는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음.

○ 베이비 부머는 현재의 예비노인이나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점이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는 세대적 특성인지( )인지 아니면 베이비 부머가 현재 중년이라는 생애단계에 있다고 하는 연령효과( )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베이비 부머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4(5점 척도;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로 다소 불만족 상태임.
  -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41.6%)임.
  - 경제적 부담은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시간 부족의 비율은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현재에 비하여 노후에 여가생활이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하여 준비는 소홀함.

○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베이비 부머는 다양한 여가활용 기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1991~2010년까지(20년간)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소득 변화를 살펴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령별 총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56세 이상 중고령자 및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비하여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55세 이하의 연령집단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

○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경향을 보임.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28세에서 45세까지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다가 이후 55세 이르기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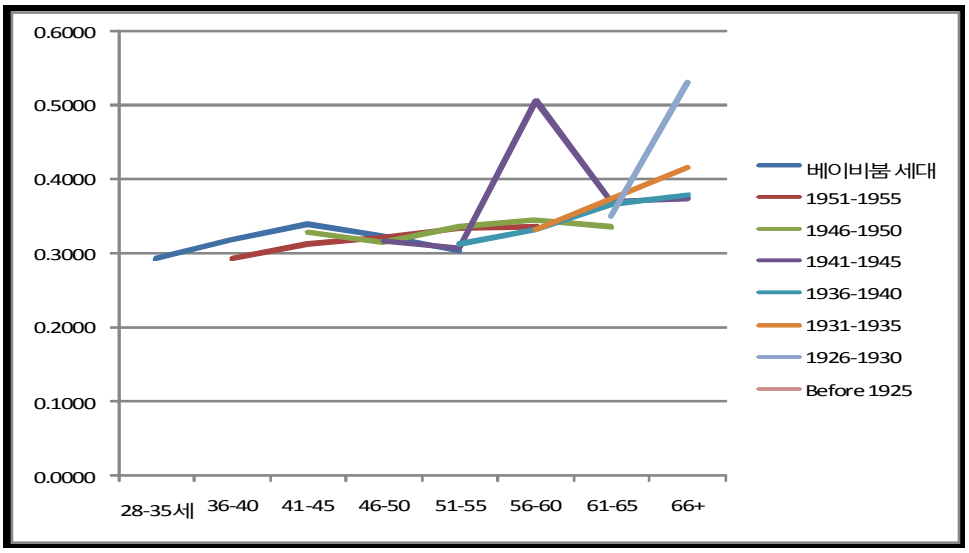

○ 근로소득

– 베이비 부머를 포함 모든 집단에 걸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코호트에 비해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사업소득

– 세대별 차이 보다는 시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에 사업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모든 코호트에 걸쳐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2006년에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급속하게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재산소득

– 과거 세대에 비해 최근 세대에 올수록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

는 영향이 줄어듦.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정도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전쟁 중 출생한 코호트, 1946-1950년에 출생한 코호트, 그리고 그 이전 세대로 점차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
- 단 1941-1945년에 출생한 코호트의 재산소득의 영향만이 급속하게 낮아지는데, 이는 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이 세대에 특수한 현상임.

○ 공적이전 소득

–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모든 코호트에 걸쳐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감소.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 아직 본격적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점차로 그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사적이전 소득

–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모든 출생 코호트에 걸쳐 불평등 감소.

- 특히 이러한 불평등의 변화는 근로시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노령기에 접어들어 크게 변화

○ 총가구소득의 불평등 경향은 2001년 이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01

KIHASA

1

제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산발적인 관심과 일시적인 정책적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기회로 작용될 때 그 정책적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2010년에 은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20년이 되면 이 세대가 전부 65세 이상이 되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다. 이들은 노년기를 향유하고 있는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하여 현재는 노인이 아니지만 곧 노인이 될 노화의 과정에 있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노화과정을 경험해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들이 모두 노인이 될 2020년의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부담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즉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가에 따라서 이들이 우리사회의 자원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으며, 베이비 부머 자신의 삶의 질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베이비 부머는 총 인구의 14.6%로 그 규모가 크며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 규모는 노인인구 규모인 11.3%보다 큰 규모이다. 이러한 양적 규모 외에도 이들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들의 전 세대인 현재의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베이비 부머가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제특성은 그들의 욕구의 내용 및 서비스 기대수준 등에 변화를 가져와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험해온 우리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전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처를 실시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의 삶의 질 향상과 노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양적·질적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 2015)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하는 등 정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에서 베이비 부머로 확장하였다. 또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정경희 외, 2010; 한경혜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자료 및 정책방안 모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가 진정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산발적 노력을 종합하고 유기적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구심점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체계적·유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보고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안을 크게

, , ,

, , ,

(그림 1-1 참조).

이러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첫째,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을 개최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모색함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 교환 및 공론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관련 조사자료를 재분석 하거나 필

요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대하여 경험적 이해를 강화하였다. 셋째, 정책제언의 구체성을 심화하기 위하여 해외사례를 해외출장과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넷째,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제언 도출에 있어 기초로 활용하였다.

[1-1]

02

KIHASA

2 『 』

본 장은 베이비 붐 세대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2일에 발족한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의 개요와 포럼의 발표내용과 주요 논의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1].

제1절 개요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은 베이비 붐 세대관련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은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작 자신의 은퇴 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여 암울한 노후를 보내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우리사회에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러한 우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붐 세대관련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구성되었다. 즉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의 목적이다.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은 단순한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중고령 인력의 고용, 창업 등 노동력의 활용문제와 은퇴 후 여가 및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문

1) 각 포럼 자료는 별책자료로 발간되었음. 1~3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어 각 포럼차수별로 자료집으로 발간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한 4~11회의 포럼자료집은 통합하여 본 보고서의 별책형태로 발간되었음.

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 국책 및 민간연구원,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의 포럼위원이 임명되었다(부록1 참조).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은 2011년 1월 1월 27일의 1회 포럼부터 2011년 12월 16일의 11회 포럼까지 총 11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주요 주제는 <표 2-1>과 같다. 포럼은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기반에 기초한(-) 정책개발을 위한 베이비 부머 대상 전국조사의 주요결과에 대한 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주요 영역별 정책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정책제언 도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 2-1>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4 4 29	: ( ) : : 1. (,) 2. (,)	( ) ( ) ( ) ( )

5 5 30	: ( ) : 1. (,) 2. - - (,) 3. - - (,)	( ) ( ) ( ) ( )
6 6 21	: ( ) : 1. (,) 2. (,)	( ) ( ) ( ) ( )
7 9 2	: ( ) : 1. (,) 2. (,)	( ) ( ) (.) ( )
8 9 30	: ( ) : 1. (,) 2. (,)	( ) ( ) ( ) ( )
9 10 28	: ( ) : 1. (,) 2. (,)	( ) ( ) ( ) ( )
10 11 25	: ( ) : 1. (,) 2. (,)	( ) ( ) ( ) ( ),
11 12 16	: ( ) : 1. (,) 2. (,)	( ) ( ) ( ) ( )

제2절 주요 내용

1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베이비 부머의 특성 파악과 이들의 노년기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의견 교환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 부머 3,027명과 50대 후반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실시된 첫 전국조사이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7월 8월 층화추출 된 전국200개 조사구에서 실시되었으며, 가족사회관계, 건강상태 건강행태, 경제상태 소비스타일,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가치관 정책인지도, 삶의 만족도를 주요 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 나타난 베이비 부머의 특징에 대한 발표와 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안되었다.

첫째,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는 경제적 생산성 개념의 확대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생산성 개념으로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넘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으로 근로자의 일과 부모의 역할 양립에 대한 관심이 일생전반에 걸친 시간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대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이 진입장벽으로 통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령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 구축, 특성별 건

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효과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시스템 확립, 맞춤형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여가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실시,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 및 시장 활성화, 장례서비스의 다양화,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가입자의 확대와 미불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등 의 정책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험금 인상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국민적 논의의 공론화와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비용의 시설 업소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 개발 및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지역사회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요양 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특성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직장 내에서의 사전적인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개발, 스포츠활동이나 문화 강좌의 수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지역 내 스포츠 클럽 및 문화강좌의 수강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활성화하여 특성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사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베이비 부머와 같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예방대책을 통한 의료비 절감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할 때 베이비 부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립한다. 맞춤형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 뿐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베이비 부머의 은퇴이후 제2의 커리어에 대한 정책 개발시 계층적 특성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베이비 부머 중 일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장기간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년기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는 사회적 시스템 및 분위기 형성

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활동참여 경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선호하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내용을 고급화로 여가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를 기한다. 체계화된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 및 향후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사회적 공론을 형성한다.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활용하시 못하는 다수의 베이비 부머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거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또한 장례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화장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인식의 확산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을 조성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존엄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기증 의사가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각종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감소, 자산가격 급락, 재정건정성악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탄력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기업,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노동력 감소 및 기능노하우 손실, 자산가치 하락 및 부동산 가격붕괴, 사회보장 비용 급상승 및 개정건정성 악화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충격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제안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해 양적감소를 대비하고, 직능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생산현장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시장 안정운용을 위해 재무리스크 완화를 위해 개인연금, 기업연금을 확충하고, 베이비 붐 세대 은퇴를 신금융상품 출시 기회로 활용하는 역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역모기지의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을 확충하고 사회보험 의존도 축소한다. 연금 및 보건 지출을 고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을 통해 재전 건전성을 강화한다.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 새대가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전체적인 특성파악에서 진일보하여 베이비 부머 내의 다양성을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베이비 부머가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소외되는 계층이 있기 말련이므로 그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복지욕구에 상응하는 공적인 서비스의 양과 질 확보가 필요하며, 공적 서비스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순위설정이 요구되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가 사회참여나 기여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인 대응 외에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정책적 대응 외에도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에 대한 패널조사를 기획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가 메트라이프의 후원을 받아 한경혜 교수 및 공동연구자에 의하여 진행된 「한국 베이비 부머 패널연구」의 주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 위원들의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공유되어야 할 중요 정보가 많다는 점에서 메트라이프의 후원으로 서울대 한경혜 교수 및 공동연구자가 주관한 발표회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차 포럼의 발표자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으며,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베이비 부머의 코호트적 특성, 일과 은퇴 (한경혜, 서울대)
나) 베이비 부머의 재무상황과 재무준비 (최현자 서울대, 주소현 이화여대)
다) 베이비 부머의 가치관 (은기수, 서울대)
라) 베이비 부머의 가족 (이정화, 전남대)
마) 베이비 부머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 (김주현, 서울대)
바) 미국의 베이비 부머이슈와 과제 (. ,
)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체계적 실증자료의 수집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준비는, 이들 집단이 규모면에서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베이비 부머 당사자들의 삶의 질 문제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작업의 의미를 가진다. 베이비 부머들의 노화에 대한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준비를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들이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코리아 재단은 2010년부터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패널연구를 시작하였다. 2010년 1차년도 조사에서는, 한국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4,66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세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증 자료를 수집하였고, 베이비 부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 일, 은퇴, 재무, 건강,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총 7개의 연구영역을 설정하였다.

베이비 부머 패널 조사 결과 베이비 부머는 전체적으로 미래 재무상황을 낙관적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재무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100점 중 57.6점), 미래 전망은 긍정적이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월 평균 노후대비 저축액은 172천원이다. 10명 중 8명이 노후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85%, 은행저축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는 69%이다.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은퇴소득 필요액을 미리 계산해 본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이들의 투자성향을 보면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서,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험만을 감수하겠다는 비율이 3/4이상, 평균적인 수익을 위해 평균적 수준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비율은 1/5이다. 베이비 부머 중 42%가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하며,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은 82%나 되는 반면, 금융자산은 15%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결과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노년기 삶에서의 불평등성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관찰되는 이질성이 어떻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성으로 연계 구체화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베이비 부머들에게서 현재 관찰되는 이질성과 불평등성이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이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점에 선 베이비 부머,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기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모습과 질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와중에 있는 전환기적 세대의 특성상 노년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년기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본이 부족하다. 노년기 준비를 위한 삶의 지침이 없이, 그들만의 새로운 노년 문화를 개척해 가야하는 변화의 최전선 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과연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끼인 세대 로서의 부담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부담과 노부모 부담의 이중 부담에 힘겨워할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대안과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과, 서구의 경우처럼 돌봄 기능을 가족, 국가와 기업이 분담하는 3자 체계화하는 정책과 관련 서비스구축이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들의 노화에 대한 개인, 사회, 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노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베이비 부머들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노후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있어, 가족에서부터 재무,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 생애설계에 대한 개인 수준에서의 준비, 은퇴 후 삶에 대한 유연한 적응을 위한 기업차원의 프로그램 제공, 국가의 정책마련 이러한 3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특성·가족·일과 은퇴·은퇴재무설계·가치관·라이프스타일·건강 등 7개 부문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분석함으로써 베이비 부머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에서 베이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말에 확정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 베이비붐 세대 관련 36개 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①다양한 고용기회의 제공 ②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③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④노후생활 설계 강화) 또한 우리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확한 문제진단과 해결의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학계 관련전문가 등 21명으로『미래구상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노령지식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앙코르프로젝트 사업 을 올해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71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68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5%,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7,58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다른 가치관과 자산보

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의 노인층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각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흐름을 따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 자산시장과 국가재정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이에 따른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민간이 손을 맞잡고 함께 고민하여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노령층을 사회문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한 중심축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3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후소득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의 개선방안과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고령화, 핵 가족화 심화, 노인부양부담증가의 사회적 환경변화와 경기침체, 저성장, 실업률증가. 고령자 조기퇴직증가 등의 경제여건의 변화로 연금수입이 감소하고, 연금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재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될 경우 늘어나는 수급기간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2008년 재정계산 이후 평균수명 증가추이 반영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저소득 자영자, 건설 일용직 등 다수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미적용에 따른 잠재적 연금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정부 부담으로 귀착할 것이다. 또

한 저소득층 연금사각지대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부자를 위한 연금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수명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국민연금 재정 전망필요성에 따라 분석 결과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해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평가기간이었던 70년(2078년까지 전망)을 90년(2100년까지 전망)으로 20년 연장하였다. 평균수명 연장 반영할 경우연금수급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될 경우 연금수급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금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시점이 기존 가정에 비해 앞당겨질 것이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제도부양비 및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 증가하게 된다.

정책과제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 제고 노력 필요,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수지 적장 및 기금조진 시점이 앞당겨져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 평균수명 연장추이에 연금수급기간을 자동 연동시키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도록 중·고령자 고용가능성 제고, 탈빈곤 등 자립의지가 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매칭 형태의 국고를 활용한 보험료 일부지원제도 도입 검토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집중 검토해야한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달라진 가치관, 자녀의 사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정책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출산율 제고가 수월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고 노력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향을 모색하려면 평균수명 연장추이에 연금수급기간을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연금재정과 자동 안정화 장치(- -)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또한 제도발전 방향이 모호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00세 시대에서도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여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력 재교육을 통하여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 하고, 노동생산성에 비례(임금피크제)하는 임금체계 도입과 부분근로(-), 부분연금( )제도로 점진적 퇴직( )이 활성화될 여건 조성(국민연금 연기연금 활성화)을 통해 시대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근로체계를 개편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건설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적인 사회수당제도인지, 아니면 공공부조제도인지 장기제도 발전 측면에서 제도 속성을 명확히 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향후 도래할 초고령사회에서도 정치적·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 검토하여 노인인구 급증 등 향후 급격하게 변화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제도 운영방안 모색한다.

현행 보장방식의 문제점으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 과도한 자영업자의 비중,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임시직과 시간제, 연평균 노동시간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사각지대를 정의하고,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기존의 사각기대 해소방안을 살펴봄으로 사각지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한나라당, 한국노총, 참여연대 안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한나라당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인 1연금체제이며, 조세를 통한 국고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과방식이다. 급여액은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20%이다. 한국노총 안은 정년연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초연금도입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원은 조세방식(소득세의 10%, 부가가치세 10%, 고액재산세)으로 한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독신과 가족을 구분하여 차등적용하며, 와 크레딧제도를 도입한다. 참여연대안은 기초연금+최저연금보장형 소득비례이며, 기초연금은 전 국민 대상 1인1연금체제, 평균임금의 10%, 일반조세로 한다. 최저임금연금은 독신 평균소득의 30%, 부부는 45%보험료 충당하고, 소득비례부문은 강제가입의 장기저축제도, 명목확정기여방식이다. 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구조는 공적연금제도에의 포괄율을 현행 30.7%→58.5%로 확대

하고, 급여수준(월 8만원)은 충분하지 않으나, 국민연금 가입자외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었던 현 세대 노령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최소한의 소득보장 책 이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소득 준비수준 조사결과 ECD국가와 비교시 한국의 노령인구 소득원은 공적소득이전 비중이 가장 낮고, 근로 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베이비 부머의 국민연금 가입실태 및 노령연금 수급전망 2009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보유한 베이비 부머는 490.6만명으로, 전체 베이비 부머 중 68.7%이다. 베이비 부머 연령대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 (전체)35 50%, (남성)50 70%, (여성)15 30% 수준으로 전망된다. 베이비 부머는 타 공적연금의 퇴직연금 수급률 최대 5% 정도를 합하면 탄생년도별로 40~55% 정도가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 부머 소득보장대책으로 국민연금 향후 대책은 베이비 부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남은 가입연령기간 동안 가입자 개인, 정책, 관리 측면에서 추가 납부이력 축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입구조개편과 함께 임의가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가입 크레딧 확대, 최소가입기간 단축 등의 시행 검토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타 대책으로는 베이비 부머 중 1950년대 생은 노후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미 퇴직하였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이외에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1960년대 생은 사적연금 가입이나 저축 활성화를 꾀하여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확보하도록 함 전반적으로 소득계층별, 연령별, 성별 노후소득확보 차별 전략이 필요하다.

4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삶의 질 확보

에 있어 핵심이 되는 건강과 생활의 활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나아지는 시대에 살아왔지만, 그 반면에 서구식의 식생활패턴의 변화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질병발생을 높이거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산업작업장환경의 불결상태 등 주거·작업환경의 악화도 발생되어 부정적인 경제과실의 주 피해자로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베이비붐세대인 중장년계층은 산업경제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과실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그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건강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정부로써는 건강수준의 유지 및 향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건강수준의 악영향을 완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수준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베이비붐세대들의 건강의식이나 건강실천행위측면에서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각종 보건의료제도가 베이비붐세대의 성장과 함께 적시에 도입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베이비붐세대의 건강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보건의료제도를 제시하면, 1977년도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학령기에 도입된 것으로 이른 시기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고 발전됨에 따라 의료기술자체도 향상됨으로써 건강증진에 큰 도

움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1995년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베이비붐세대가 40대의 중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면서 성인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도입됨으로써 건강증진에 대한 의식이 늘어나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각종 의료제도의 개선이나 공중위생의 개선 등도 1990년대 이후 크게 이루어져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수준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지만, 1990년대말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경제사회의 구조조정을 일으켰고, 베이비붐세대 이전의 기존세대들의 조기·명예퇴직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물러나면서 그 업무를 베이비붐세대가 떠안게 됨으로써 업무의 과중과 함께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직을 권고 받는 계층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근로현장을 반영하고 있듯이 베이비붐세대에는 상대적으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과질환이나 중독·과로 등의 각종 사고사가 높은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붐세대는 건강증진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못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도 하다. 즉, 흡연율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음주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운동이나 식품섭취행태는 오히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 정신심리적인 문제를 음주 또는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러한 건강증진의식은 본인당사자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의식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감안하여 정책제언을 정리하면 첫째, 중·장년계층 대상의 특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베이비붐세대가 음주율이 높고, 운동실천율도 높다는 점은 결국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건강증진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장내에서의 사전적인 업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사후적으로는 음주보다는 운동 등, 스포츠활동이나 문화강좌의 수강을 통한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 지역내 스포츠클럽 및 문화강좌의 수강비용을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년계층 대상의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생활습관병의 조기예방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시 고혈압의 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건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운동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바우처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보건소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료기관까지 내포한 지역사회중심의 만성질환예방관리형 건강바우처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주요 만성질환의 관리 소홀은 일상생활기능의 장애발생과 깊은 관련성이 있고, 장기요양비용의 증가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질환이환율의 현상은 반드시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요양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베이비붐세대인 중장년계층의 장기요양욕구를 분석해 본 결과,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를 선호하고, 그러한 시설서비스는 소득수준 등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 보다 높다는 점은 재가에서의 방문진료나 요양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기요양비의 적정유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설중심의 서비스지원체계에서 가족·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지역사회케어서비스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코호트연구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노인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의 장래추계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결과를 건강보험재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적 유지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연령계층보다도 규모면에서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건강수준이 좋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인의료비 등,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의료비지출측면이나, 더 나아가 장기요양비용지출측면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양호한 측면은 제고시키고, 불량한 측면은 적극적으로 제어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베이비 부머의 맏형(1955년생)이 노년기 진입까지는 10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막내 베이비 부머들(1963년생)이 노년기에 진입하기까지는 18년이 걸린다. 전기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가 직면해 있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들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직장생활

을 하게 된다. 이들이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은 물론 은퇴 이후 노년기 진입시기까지 어떠한 개입이 요구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있어서 시차( )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에서 노년기 진입시기인 10년간 이들에게 일어나는 개인적, 환경적 변화에 대해 본 발제에서는 은퇴 이후 경제활동, 생활기반의 변화, 빈둥지 시기의 연장,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알아보았고, 40대 이후 자원봉사자 비율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제안하였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잠재력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주로 취업이나 일자리, 창업 등 고용과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들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구조지체현상( )으로 설명하였다. 정책적으로나 지역사회 실천현장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베이비 부머의 특성( ), 은퇴시기와 노년기 진입이전 시기까지의 변화( ),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미흡( )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맞춤식 접근 ( )과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동기 연구를 통해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 지역사회차원, 인터넷 동호회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능력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주로 퇴직 후의 재취업이나 창업에 초점을 맞추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노후의 여가, 인간관계, 건강 등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예: 행복노후설계센터)을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은퇴자들의 B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하여 은퇴 이후 생활기반이 직장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에 맞게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족봉사단 활성화, 부부중심의 프로그램개발, 전문자원봉사 영역의 강화도 이루어 져야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베이비 부머들의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자원봉사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가활동을 자원봉사활동과 결합시키는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데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문화예술활동 역량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가활동(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밑으로부터의(-) 자원봉사체계 구축을 통해 일과 여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총체적 연계과정에서 활동들 간의 위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 방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여가활동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일자리로까지 이어지는 위계성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한 의 역할 강화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후 혹은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성화 정책과 전략들을 강화해야 한다. 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체를 라고 칭한다면, 정부(지자체), 기업, 시민, 그리고 비영리기관에서 은퇴 전·후의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사례에서

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평생교육과 자원봉사,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인지도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역할을 인식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들 기관들의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중·장년층이기 이전에 고유한 특성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모집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베이비 부머들의 지리적, 인지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교육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는 물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안한 지자체 중심의 시니어전문자원봉사센터 모형에서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전문직 은퇴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이들을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은퇴자들의 전문자원봉사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 및 실천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요구되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나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중장년층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들의 특성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동기,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물론 40대에 높은 자원봉사자 비율을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에 개인적 측면은 물론 사회, 문화, 제도적 측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외국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들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통계적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건강 실태 및 관리 방안의 발표에서 베이비붐 세대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긴 하지만, 연령효과, 시대 효과, 코호트 효과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에 동의하나, 정보제공이나 개인단위접근은 효과가 적고 비용이 크다. 건강 수명의 제한성을 볼 때, 만성질환자가 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2차 베이비 부머까지 더하면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대안이 필요하며 보건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서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이었던 과거에 비해 베이비 부머 전체의 욕구 기반이란 보편적 의미의 자원봉사 방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 필요하다. 자원봉사 비활성 실태에 대해 구조적 지체 문제보다는 베이비 부머들의 인식적 지체가 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적 자원을 잘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전문적 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봉사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능동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5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해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기조발표와 더불어 구체적인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설계 실태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78.1%는 노후에 대해

자주 또는 가끔 생각하며 노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후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빈도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고 직업계층이 낮을수록 노후에 대한 생각빈도는 낮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노후 걱정거리는 건강(39.8%), 생활비용(34.3%), 치매 및 중풍(10.1%), 무위(8.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활비용, 무위, 가족 부양 등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상실, 치매 및 중풍 등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저학력 층의 경우 건강상실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타 학력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의 중간학력 층의 경우 생활비용에 대한 염려,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무위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노후설계 교육 서비스>전문가 상담 서비스>맞춤형 관리 서비스의 순서로 나타났고,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44.4%는 희망하는 노후 활동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종교 등 신앙생활(13.9%), 자원봉사(13.5%)의 순이며, 일자리와 관련된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직업관련 일들 (7.6%), 전혀 새로운 다른 일 (3.4%) 등 약 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 희망 활동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응답이 타 활동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현황을 토대로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 전문성을 노후설계 지원체계의 구축원칙으로 살펴 볼 수 있겠다.

노후설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민간기관의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활성화 지원, 노후설계 컨텐츠 개발, 노후설계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전국민의 노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방안,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별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기관의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이미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또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들이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 자원을 보다 협력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하다. 일반인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컨텐츠

로 구분하여 표준안 개발 필요하다. 노후설계 가이드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하여 노후설계 컨텐츠를 개발한다.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및 자격증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후설계 전문가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안 등의 개발 필요하다. 노후설계서비스 위탁기관 지정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설치, 노후설계서비스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전 국민의 노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 검토 필요하며, 각각의 법률은 독자적 제정목적, 입법목표도 상이하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중년학교)에 대한 노후준비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길어진 30년에 대한 준비, 인생 후반전을 의미지향적인 삶을 지향,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준비된 중년의 삶의 모델, 체계적, 장기적 접근, 고령시대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형성, 은퇴직전보다 직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어 직장변화 유도 등이 있다. 한국경제 기초체력의 약화로 노후준비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중년시대에 대한 발견과 의미를 재고한다. 노인복지관은 중년 세대의 전문성과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름다운 중년학교 를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중년학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류재룡 부회장이 고령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년정체성 확립, 친교를 통한 공동체정신 구현을 목표로 복지기관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건강관리, 가족관계, 경제관리, 여가관리 교육을 진행 한다. 1년 기본과정으로 세미나 및 토론회, 주1회 3시간의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교류의 장을 통해 바람직한 중년의 삶 모델

을 제안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중년학교 외에도 준고령자를 위한 사회환원 프로그램 인재마루, 최고위 명강사 과정, 취미 여가 지원 서비스인 노인여가 매트릭스, 온라인 창업 지원 교육인 어르신 온라인창업 아카데미, 노년기 적응 지원 서비스인 실버플래너, 애니타임투게더, 우울증 및 치매 예방 집단 프로그램, 농어촌 지역 지원 서비스인 참살이 농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작한 노후설계 사업은 상담, 교육, 온라인의 3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적인 생애설계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노후설계사업 서비스의 정의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과 노후생활 관련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교육·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상담서비스는 재무설계 상담, 일·건강·여가 등 노후생활설계를 위한 - 종합정보 생활상담을 하고, 영역별 사회자원에의 연계서비스 제공한다.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 취약계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는 노후설계종합포털 내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자가 점검 프로그램을 제공, 노후설계에 필요한 정보, 온라인 상담, 인터넷카페 행복준사 등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경험에 기초하여 볼 때 개별적인 전문적 정책과 실천들에서 나아가 어느 영역에도 치우치지 않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들 간의 통합적 맥락에서의 공적 개입 필요하다. 중립적인 공적 기구 설치 및 전문위원의 구성이 이루어져야하며,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성 제고(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전가정지원센터 등)가 필요하다. 높은 자기개발 욕구, 예술 문화욕구를 지닌 베이비 부머의 자원 활용, 직장 내 찾아가는 노후준비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서 생애과정과 주기적 접근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참여로

접근할 때 비교적 젊은 층은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노후준비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라이프 매니지먼트 등의 다양한 용어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표에서 제시된 4가지 노후준비 구축 원칙에 더불어 균형성 을 더하여 노후준비 영역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통합성·중립성·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후준비는 중복적인 서비스가 될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과연 적합한지 의문. 오히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연계되는 서비스 통합이 더 필요할 것이다. 대다수의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의 은퇴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데 즉, 생산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노인 집단으로 사회와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인 은퇴설계가 점차 심리적 노후준비로 변환하여야 한다. 현재 노후준비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베이비 부머 관련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이 난무하는데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이다. 따라서 역할이 부처마다 분산되고 각 영역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을 통일성 있게 묶을 수 있는 막강한 노후준비관련 정부기관이 통제해야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

6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가 일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발표가 이루어졌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37.9%, 베이비 부머64%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져야 되는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샌드위치 부담, 즉 자녀양육 및 부모부양의 부담이 베이비 부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고령화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자녀양육 부담의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부양 부담의 경우, 부모 생존여부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부모님과 동거로 측정하는 경우에 베이비 부머인 자식의 경제활동참가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고령자가 진로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중고령자는 가정이 일과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직자의 진로전환 지원이 단지 구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원만한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진로전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요구를 검토한 결과, 건강관리 및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양강좌(3.43),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는 교양강좌(3.43), 걱정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3.7)과 같이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에 대하여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만큼이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진로전환 지원 체제 및 개선 방안으로는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망 강화, 정부와 기업 및 중고령자 개인의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고령자를 위한 국가 진로전환 지원 체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제반의 진로전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가 진로전환 지원 체제의 중심에는 전담 업무를 하는 가칭 중앙진로전환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하여 중고령자의 진로전환 지원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연계·협력

을 위한 중간 허브( )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권역별 중견전문인력 관련 공공 및 민간 지원 센터 확충과 특성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평생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 개발계좌제와 연계한 직업경력카드제·재직 중고령자에 대한 학습휴가제 도입을 제고해야 한다.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가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처들(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각 부처별의 업무는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되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으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집중화하고 상호 조율·조정하는 데는 미비하다. 중고령자를 전문화한 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해 기존의 유관기관 간 지원정보 네트워크의 분산 및 연계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중앙진로전환지원센터 는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생성·수집·가공하여 지역진로전환지원센터나 관련기관이나 개인 및 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갖추어야 한다.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특성화된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령대상 그룹이나 중고령자 종사 직종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우수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은 중앙진로전환지원센터 가 표준화하여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지자체 간,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중앙단위에서 통합협의체를 만들고, 지역단위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중고령자 개인의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나 협의회 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기관의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중고령자 적합 일자리 확보 및 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전문인력에 대한 정규직화와 안정화된 직무체계 확립, 전문인력 양성과 연수지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마련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중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계형 취업이나 봉사형 취업, 전문직종과 단순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진단 및 진로 설정, 의욕과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기관들은 재취업을 원하는 중고령자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쉽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 자료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기업과 중고령자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는 상시적인 진로전환 체제를 갖거나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보조금 확대, 표준화된 진로전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공공의 진로전환 서비스 활용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중고령자 개인에게는 진로전환 상담 및 정보 제공, 진로전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진로전환 프로그램과 고용훈련 연계 지원, 진로전환 프로그램 이수 시 실업급여 지급, 기초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자녀양육부담과 부모부양부담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는데, 베이비 부머의 경제 참여를 보기위한 변수로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과연 청년 실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년연장, 점진적 퇴직 정책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중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중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중심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재정비해야 한다. 두 발제 모두 현황에 대한 분석만 있고 실질적인 방안은 부족하며, 현황조사결과와 구현방안의 연계성도 적어 보인다.

베이비 부머 은퇴 후 대체 세대는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노동공급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호소하며 중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연령 증가가 생산성 저조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높아지는 임금 대비 생산성은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현재 중고령자 지속고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직된 환경을 인식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난 10여년 간 정부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만 만들어 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후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써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 삭감 등으로 오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노령화에 대한 암울한 의식에 대하여 고령기를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가 맞는 방향이긴 하나, 좀 자율적인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화가 효과적일 것이며 의무화/획일적 정책도입은 오히려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값 등록금, 부실대학에 대한 조치 등의 사회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청년교육기능을 수행하던 대학에서 고령화 사회에는 평생교육으로 부분 대체하여 현실적으로 중년기 이후의 교육도 함께 운영해야 지속가능한 대학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률이 높아, 정책 논의자가 자주 바뀌면 일시적 논의로 남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 있는 정책개발프로세스가 필요하다.

7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가족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 급증하였으나,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체계적 정보 및 실증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베이비 부머 패널연구(연구책임자 : 한경혜) 의 1차년도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베이비 부머의 가족구조, 관계 및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베이비 부머 가족생활에 있어 연령, 교육, 소득 등 하위집단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베이비 부머 이슈를 다루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이들 코호트 구성원들의 다양성, 이질

성에 기초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관찰되는 이질성이 삶의 영역에서 불평등성으로 연계, 구체화되는지에 주목할 필요성과 특히 가족불안정성 등 관련 위험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관찰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가족생활주기 상으로는 자녀양육기에서 빈둥우리기로, 생애단계상에서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점에 있으며, 따라서 가족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정책적 지원 욕구가 증가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노부모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면서 동시에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 지위, 손자녀 양육 등 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서, 끼인 세대 로서의 특성이 현재로서는 강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견 가능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 전반의 모습은 한국의 베이비 부머라는 코호트적 특성, 중년기라는 생애단계상의 특성, 자녀 양육기 혹은 독립기와 같은 가족생활주기 단계상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베이비 부머 가족의 현주소 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 부머 고유의 특성 , 즉 이들이 거대한 규모의 특정 코호트에 속했다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차별화되는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다른 코호트와의 비교 및 종단적 자료 수집이 병행될 때,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012년 2차 자료수집과 함께 격년으로 종단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타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세대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세대 가족을 위한 함의점을 찾고자한다. 베이비붐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세대가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이었을 때의 가족상황을 살펴보고, 2010년 현재 이들 세대들의 가족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타 세대와 비교한 베이비붐세대의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결혼 및 출산패턴에서 베

이비붐세대의 결혼율이나 결혼연령은 부모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대에서 결혼율이 낮아지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베이비붐세대의 출산패턴은 부모세대에 비해 출산기간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첫아이 출산연령이 늦어졌고, 자녀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에도 계속되었다.

결혼(부부)생활을 보면, 베이비붐세대는 부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부부간 만족도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편이므로 길어진 부부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 부부만의 생활에서 적응하고, 앞으로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중년기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이혼율은 부모세대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재혼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세대에서도 동일하다. 재혼에 대한 견해 역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러한 생각은 베이비 부머와 부모세대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세대와 세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모든 세대에서 기본적으로 대학교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손자녀돌봄에 대한 지원도 베이비붐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와 동거의향은 낮아 부모세대와 다르지 않다. 노부모와 관계특성에서 베이비붐세대와 부모세대의 정서적 교류는 부모세대에 비해 낮아지지 않았고, 세대역시 낮지 않아 세대차이가 없다.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모든 자녀, 부모세대는 장남부부, 세대는 부모님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하여 세대간 차이가 있는데,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부모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이 부모세대보다 더욱 길어졌으며, 세대는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 이는 부양기간도 길어짐을 의한다. 부양부담이 커진 세대는 실제로 베이비붐세대라기 보다는 세대로, 이들의 부양부담은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2배 크고, 부양을 공유할 형제자매수도 적어 이들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더욱 요구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노부모, 자녀 부양, 자신에 대한 부양을 정리해보면,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은 하지만, 자신들은 자녀에게도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 역시 샌드위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세대비교는 세대특유의 특성인지 생애주기의 발달단계로 인한 연령특성인

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의 발달과정과 세대구분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어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세대간 차이를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계열적 분석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지 못한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한다. 다양한 원인으로 베이비 부머 자신들은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에 대하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 뿐 아니라 가족부양 및 돌봄을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의 경우처럼 돌봄 기능을 가족, 국가와 기업이 분담하는 3자 체계화하는 정책과 관련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남성은퇴자 중심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베이비 부머를 소외시킬 수 있다. 여성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주목 필요하다.

중년층과 중고령 예비노인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년층이란 말 넣을 때 더 편한 거 같다. 베이비 부머라는 용어를 쓸 때 반영되는 가족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킬 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며, - - 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베이비 부머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들이 무엇인지 더 정의한다면 논의하는 바가 더 분명해 질 것이다. 베이비붐세대의 특징을 뽑아내려면 부모세대, 자녀세대 연령층과 비교하고, 성별에 따라 베이비 부머라는 특성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 고려하고, 베이비 부머의 손자녀 돌봄, 가사분담 지원과 노후준비에 있어서 이중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취약대상지원, 여성베이비부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자원활용부분)가 있으며,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예비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두세대의 연구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가족 이슈들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이슈 중요하지만 모든

구성원의 미래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나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그 안에서 정책적 선택 향후 과제로 남아야 하지 않을 까하는 의미에서 100세 가족 논의와 함께 가야한다.

과거 노인집단을 문제 삼았던 것처럼 베이비 부머가 문제 집단화 되는게 문제다. 당장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하지 말고 논의해보기 가족 사회자본의 한 형태이며, 앞으로 어찌 정책화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8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10여년에 걸쳐 진행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내재된 도전과 다양한 기회를 살펴보면서 선제적 정책대응 중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중에서도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니즈에 기초하여 향후 어떤 소비행태와 사회적 요구가 나타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적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산업적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이 되어 전개될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기회를 산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유망한 고령친화산업과 그 발전여건과 향

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정부의 추진해 온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력과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간략히 평가한 후 향후 선제적 대응차원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활성화 정책제언으로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이 이루어 져야하며, 인력파견업과 재취업교육서비스 활성화 제약요인 개선되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와 금융자산 관련 자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 항노화 산업,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실버주거지 및 주택, 세계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 및 유헬스(-) 산업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 이 이 요구된다.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정부 &D 투자 확대, 장기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및 급여지급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요양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모멘텀 제공하고, 양질의 저가제품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하여, 산업현장수요와 발전단계를 고려한 인력수급전망과 양성계획 수립하고, 중장기 &D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 져야한다.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설치하고, 고령서비스 니즈와 수요특성, 글로벌시장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강관리서비스·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화, 최저품질 기준 마련 등 품질 관리 체계 마련과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주거안정의 문제점과 당면과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은퇴이후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하다. 현재 주택정책은 소득수준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저소득층에도 속하지 않는 베이비붐 가구는 소득감소로 주거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퇴로 소득이 감소한 베이비붐 세대의 점

진적 주거수준 조정 지원 대책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가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거정책방향으로는 한국에서 베이비붐 대량은퇴는 향후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은퇴 후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수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책이 있지만 은퇴 후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들로 범위를 확대를 통해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가구들이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의 갭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이나 국민연금 수령까지 역모기지 가입 연령조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보유주택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관점, 공급자관점, 우리나라 성장동력 관점의 균형이 필요하다. 다양한 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공통 서비스 개발·확대와 구매력 있는 소수의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동시 추진 또한 필요하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은 베이비 붐 세대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게도 적용된 다는 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측면 , 소비자측면 의 연구가 필요하다. 소비층의 구매력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생물학적 노화에 초점을 둔 하드웨어적 접근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노화를 반영한 컨텐츠 중심의 접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조속적인 &D 투자를 통하여 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을 개척해가고, 소비자는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규정한 고령친화산업

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전 분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괄 기구 및 체계적인 DB구축이 필요하며,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중 특히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체계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자료와 추계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베이비 부버의 은퇴 자체가 아니라 소유 에서 거주 로 주거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 큰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의 이행기에 노년기에 진입하게 된 베이비 부머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은퇴 베이비 부머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각종 주택 분양시 은퇴 베이비 부머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제안된 산업 외에도 가계금융자산 컨설팅,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개조 서비스, 젊은 인력 양성, 초·중학력자 대상의 평생교육서비스 등도 유망한 분야라는 논의가 있었다.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 변화를 고려해볼 때 여가문화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그들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9차 포럼은 다양한 여가활동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3.58 , 6.56

, 4.93 , 8.17

1 30

. ,

(:3.78 , : 3.37),

(:6.37 , :6.76).

175.74 112.14 , 171.86

, 278.2 .

(21.3%), (21.0%), (20.0%),

(17.9%) .

1 , TV

(60.0%) , (4.6%),

/ (4.2%), (3.0%), (2.7%), (2.5%), /

(2.1%) .

.

5 3.24

. (,

2010) 69.4%

, 83.7%

. (37.0%) (59.6%)

(38.8%) (48.4%)

.

,

. ,

, , ,

.

.

-

.

현재 노인복지관은 현 세대 노인을 위한 여가서비스 등의 제공에도 인력 및 재정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중하므로,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 부머를 위한 여가서비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역량과 여력에 한계가 있다.

베이비 붐 세대와 현 노인세대의 노후 경제활동 참여와 여가생활, 평생교육에 관한 비교 및 예측을 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현 세대 노인보다 높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현세대 노인이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았던 반면 베이비 부머와 예비노년층의 경우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등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는 다른 형태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할 경우에도 개인적 즐거움 추구, 건강유지 및 향상, 휴식과 소일을 목적으로 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의식은 현 세대 노인보다는 여가참여율이 높고 여가활동 유형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여가 예비사회화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여가참여율과 여가활동 유형은 편차가 클 것이다.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노인복지관이 시설 접근도 뿐 아니라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베이비 붐 세대 노인으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내재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노인복지관의 위상과 성격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인문제 발생의 예방 기능이 노인복지관의 핵심 목적이긴 하지만, 문제해결과 사후 개입 역시 노인복지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관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한다. 노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고령친화사업의 발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에도 존재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 여가, 건강, 평생교육, 가족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 중에서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 서비스 특성화하고 고급화하는 전략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조정과 분담도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베이비 부머의 노화로 인해 나타날 현상에 대한 예측은 최소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한 단순한 예상 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복지관은 법적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노인복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이상에서 논의한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예측은 모두 빗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한다. 베이비 부머의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노인복지관의 주요 목적은 1차적 예방이며, 현 세대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건강생활, 취미여가, 고용,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이 핵심적 기능이 될 것이라는 점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하여 서비스의 특성화와 고급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위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연령서열형 사회의 특성,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양극화 현상,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분담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로 노인복지관의 역할에서 다른 젊은 세대의 노후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가도 경력이 필요한데, 체험하거나 학습하지 않던 사람이 은퇴 후에 여가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가에 있어서 세대별 차이보다 오히려 소득수준에 대한 차이 즉, 계층에 대한 차이가 더 크다. 베이비 부머와 다른 세대와의 차이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생애주기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풍요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성별에 따른 여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여가패턴분류에서 동일형 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전략, 모델개발이 요구되며, 노인복지관의 특화된 서비스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특정계층의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가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 된 것인지 필요하며, 여가 활동 영역을 의미상으로 구분해야한다. 일과 연관되어 밀접한 부분이 다른 사회활동과 같이 보아야 한다. 또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 베이비 부머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해서 여가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여가문화활동참여에 있어서는 비용과 시간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구성 분포가 예전과 다르고, 수명과 퇴직 시기가 다르다. 또한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힘이 발생하고, 은퇴 후 총 생존기간이 늘어나 은퇴 후 총 생활비에 대한 부담걱정이 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일정부분을 삭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은퇴자들에게 없었던 새로운 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여가문화가 어떻게 스트레스 줄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여가문화부분에서 어떠한 일을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하는지 모색되어야 한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 목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점에서 소비성의 여가생활이 아닌 생산적인 여가생활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의 여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현재 노인세대들, 신노년층에게 노인복지관이 새로운 공간과 장소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노인 문화를 창출해 내고 기존과 다르게 될 것 인지에 대해서 가시화 될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베이비 부머에 대해 장기적, 단기적인계획을 담은 세분화작업이 필요하다.

여가를 즐겨도 혼자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가족과의 활동도 중요하며, 노인복지관 전반적으로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일하는 것 보았을 때 인프라 부분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노인복지관 역할중요한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여러 정보도 얻고 레저 여가의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 되었으면 한다.

10차 포럼은 베이비 부머의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선언적인 조치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베이비 부머의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기조발제와 구체적인 인력활용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노령인력의 사회참여 및 사회적 활용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노인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학력자의 경우 현 고령자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이나 정치사회단체 참여에 높은 관심과 활동경험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들의 능력과 관심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요구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자원의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 1,00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공부문, 기업, 민간단체와 같이 3개의 섹터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섹터별 고령인력 고용여부(신규 및 재고용 등 포함)를 비교해 보면 제1섹터(공공기관) > 제3섹터(민간단체) > 제2섹터(기

업) 순으로 나났다.

베이비 부머의 인적자원 특성 및 활용방안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루트 다원화, 사회공헌형 일자리(제3섹터 일자리)의 연결통로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개편, 베이비붐 세대 제3섹터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칭)퇴직자 사회참여 정보센터, 중고령자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아이템 발굴 등이 요구된다.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은 대량·조기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55 63년생, 712만명)의 인력을 제3섹터(사회복지분야, 비영리민간단체분야, 사회적 경제분야) 등에 연계하여 사장되는 노령지식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창출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단구성, 교육과정개발, 참여자모집 및 교육, 교육서포터즈운영, 현장실습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 강사활동, 취업, 취업·봉사복합, 전략직종(미소희망봉사단), 자조적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연간목표는 250명 모집, 200명 수료(교육이수율 80%), 140명 연계(수요처 연계율 70%)이었고, 달성률은 255명(102%)모집, 156명 이수(교육이수율61.2%), 147명을 수요처에 연계(수요처 연계율 94.2%)하였다.

수요처 발굴에 있어서 실제 실습 배치인원이 많아, 실습기관의 부담과 실습의 질적 저하 우려되고 수요처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 전방배치 및 기관별 실습인력 하향조정이 요구된다. 수요처 발굴 외에도 참여자 모집측면, 교육운영 측면,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베이비 부머 인력의 인력활용이 베이비 부머세대의 현실적 욕구(현실)와는 다르게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으로 너무 단순하게 접근, 유인함으로써 활용방안이 축소되었다고 본다.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접근과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사회적 참

여는 인적자원 활용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자아실현 또는 삶의 질이나 만족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참여사업, 사회공헌형 일자리, 자원봉사형 근로 등 참여가 가능한 인구규모에 대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루트 다원화는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 접근 요구되며,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연결통로로서 자원봉사 활성화방안보다는 바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반 조성, 접근이 우선한다고 본다.

베이비붐세대의 인력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방안 모두 중요한 제언이며, 공공부분에서의 인력활용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체계적인 베이비 부머 인적자원 활용방안이 정책적으로 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인력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년연장이 아니라 보장이 중요한데, 기업의 동참이 요구된다. 노후소득은 나라에서 보장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금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소득보장문제에 대해서 노인 스스로 일해서 충당해야하는 것이 문제이다. 소득보장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참여에 있어서 소득을 보전에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한다. 사회에서 배제가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사회참여 측면에서 필요하다. 메인 직에서 퇴직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일자리창출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인적자원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처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적인 부분 접근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1차 포럼은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의 2011년도 마지막 포럼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의 발표와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적 대응의 모델을 정립해보는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삶의 근간이 될 소득과 관련하여 이들 소득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 발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모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복지욕구, 베이비 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 관련 해외 대응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가 제시한 활동적 노화( )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건강, 사회참여, 돌봄 등의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생활보장의 기본 개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정책제언은 베이비 부머의 활동적 노후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앞으로 약 15년 뒤에 도래할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차지)에서 노년기를 보내게 될 베이비 부머들의 행복한 노후맞이 를 준비하기 위하여 활동적 노후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 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활동적 노후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복지 모형은 약 72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성 , 미흡한 노후 준비 , 복지의 사각지대 등의 특성에 주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거주 지역, 학력수준, 취업 현황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며 성별간의 특성도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장수 시대의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소득보장 , 건강한 노후생활 , 돌봄 , 사회참여 의 4대 핵심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필요한 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은퇴 준비기, 은퇴 직후 생애전환기 및 노년기의 3단계에 걸친 노후보장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은퇴준비기에 있는 베이비 부머를 위해서 퇴직 준비 교육과 노후생활 설계 서비스를 확충될 필요가 있다. 퇴직 후 노인복지 시스템 진입 이전 단계의 생애전환기에 놓여 있는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1인 1역할 이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취업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베이비 부머들의 노인복지 시

스템에 진입하는 것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 소득 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돌봄 지원 사회 참여 의 4대 복지 영역별로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노후 소득 보장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적소득보장 제도 기능 강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행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기능을 보강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 베이비붐 세대 욕구를 반영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등), 건강한 노후생활 (직장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의 확대, 건강관리 바우처 프로그램 도입, 중장년계층 대상 특정 검진 및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질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역중심의 예방적 보건복지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노년기 정신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돌봄 지원(노인장기요양 인프라 기능 강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지역사회 중심의 연속형 돌봄 ( ) 시스템 구축,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 참여 지원 프로그램 확대(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역사회봉사와 평생교육 연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강화,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사업 확대, 정보화 교육 활성화 등)

소득구성의 변화를 현재의 노인세대와 비교 분석하여 각 소득요소별 불평등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총소득 및 요소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의 노인세대 그리고 그 중간세대들의 소득의 구성 형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노년기 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세대 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의 불평등 변화를 5년 간격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소득의 구성요소별로 불평등변화와 요소소득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총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56세 이상 중고령자 및 노인의 소득불평등이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근로연령층에 비해 높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및 중·고령자의 근로소득불평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세대별 차이보다는 시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층의 사업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노령층에 비해 근로연령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이전 소득은 모든 출생코호트에 걸쳐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노령층의 불평등 감소효과가 크며, 장기적으로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불평등 감소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의 불평등 증가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한데,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 불평등의 완화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령기 근로소득의 불평등 완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근로소득보전세재(E C) 제도의 급여 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적용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의 확대는 근로연령층뿐만 아니라 노령계층의 근로소득 불평등 완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 인구의 근로활동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되는데, 노령층의 근로활동을 현재의 사적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공적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을 갖는 노인의 비중을 확대시킴으로써 노령층 내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과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 성숙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 근로연령층에 대한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 노령층 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을 위한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 필요하다.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퇴직 후 정책당국, 사회교육기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자산관리 교육지원과 (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2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변동이 앞으로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념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는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어 복합적 정치성향을 지닌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세대이며, 사회복지적으로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현재 베이비 부머에 관한 논의를 보면,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이 퇴직하고, 노인세대로 접어든다는 특정한 세대의 문제에 관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에 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고 있다.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조기퇴직자가 많다는 점과, 충분한 아니 최소한의 노후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조기 퇴직하였지만, 충분한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및 노후 소득 보장 대책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 노령기 근로소득 불평등 완화차원에서 근로소득보전제도(E C) 도입의 급여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의 증대가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뿐 아니라 인구고령화라는 더욱 큰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은 고령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직면하게 될 정부의 예산제약에 기인한다. 분석 결과의 함의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년기 불평등 전망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필요하다.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전략모색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상승을 위한 예산확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 예비노인에 대한 연구, 세대간 격차가 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기초연구 즉, 베이비붐 세대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 기본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통계자료가 요구된다.

03

KIHASA

3

본장은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여가·문화활동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두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분석결과와 그러한 분석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가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참여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첫 번째 주제로 여가·문화 활동 관련 전국조사자료를 심층분석하고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 활동 현황과 참여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노년기 불평등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연령군별 소득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경험하게 될 불평등 실태를 전망하여 보았다.

제1 절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 욕구 및 대응 전략

(leisure) ‘ ’, ‘ ’

(licere) “ ” (schole)

. ,

. , (餘)

(暇) ‘ ’

(, 2004).

,

24 ,

,

(Murphy, 1975; Parker, 1976),

, ,

.

(McGuire et al., 1996).

(trajectory) . ,

,

. ,

(Hooyman & Kiyak, 2005).

,

. Roberts(2006)

,

68

.

.

,

,

(Iso-Ahola, 1980). , ,

,

(repertoire)

(Hooyman & Kiyak, 2005).

.

.

. .

, .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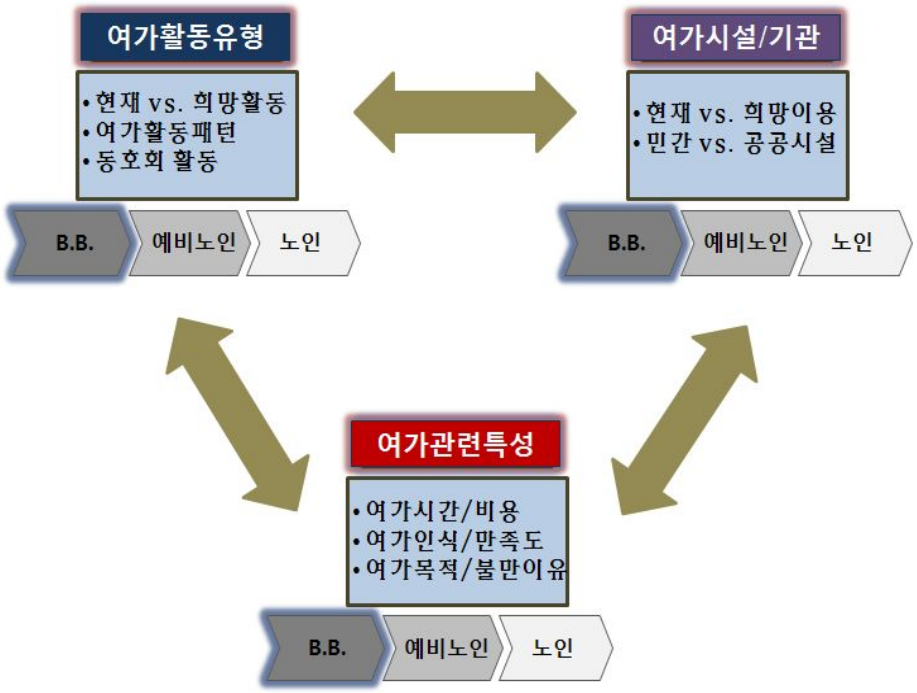
여가활동유형
• 현재 vs. 희망활동
• 여가활동패턴
• 동호회 활동
B.B.
예비노인
노인
여가시설/기관
• 현재 vs. 희망이용
• 민간 vs. 공공시설
B.B.
예비노인
노인
여가관련특성
• 여가시간/비용
• 여가인식/만족도
• 여가목적/불만이유
B.B.
예비노인
노인

, 1 3

, ,

.

, .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

.

,

(56 -64) (65) .

1) 질적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 60 .

. , ,

,

4 2 8

.

< 3-1>

A		65					
B		63					
C		63					( )
D		63				,	
E		61					
F		60					
		63				( )	( )
		62					( )

(2) 자료수집 및 면담 가이드

2011 8 10 4

71

, , G H

. 1 1

3

30 ,

.

① 40 50 , ②

( ), ③ 4,50

, ④

.

2) 양적 연구 방법

2010 「 」

.

2006 2 , 2010 3
. 15
15 2010 7 5 7 16
. 3,051 (1963
-1955) 525 , (1954 -1947) 350 , (1946
) 634 .
① ; , , ,
, ② ; , , , ,
, ③ ; 40 , ,
④ ; .

1)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25
, 84% .
(39.8%) , (31.8%) (28.4%)
. (200
500) 48.8% .

62.9% . 57.9%
15% , 38.6% ,
81.4%, 200 ‘ ’
76.3% .

< 3-2> .

(: , %)

		(1963~1955)		(1954~1947)		(1946)		((%)		χ^2
		260	(49.5)	166	(47.4)	267	(42.1)	693	(45.9)	6.76*
		265	(50.5)	184	(52.6)	367	(57.9)	816	(54.1)	
		13	(2.5)	5	(1.4)	1	(0.2)	19	(1.3)	243.21***
		439	(83.6)	282	(80.6)	376	(59.3)	1,097	(72.7)	
		24	(4.6)	46	(13.1)	245	(38.6)	315	(20.9)	
		49	(9.3)	17	(4.9)	12	(1.9)	78	(5.2)	
		167	(31.8)	220	(62.9)	516	(81.4)	903	(59.8)	296.44***
		209	(39.8)	82	(23.4)	70	(11.0)	361	(23.9)	
		149	(28.4)	48	(13.7)	48	(7.6)	245	(16.2)	
		160	(30.5)	158	(45.1)	484	(76.3)	802	(53.1)	290.60***
		256	(48.8)	165	(47.1)	135	(21.3)	556	(36.8)	
		109	(20.8)	27	(7.7)	15	(2.4)	151	(10.0)	
		525	(100.0)	350	(100.0)	634	(100.0)	1,509	(100.0)	

: (2010).
* <.05, ** <.01, *** <.001

2) 여가 특성 및 욕구

(vs),

(vs), ,

.

< 3-3> .

3.58 ,

6.56 .

1 30

.

< 3-3> ,

						F
			3.58	4.20	6.19	143.74***
			6.56	6.18	7.34	17.99***
			4.93	5.32	6.48	67.23***
			8.17	7.68	7.95	3.24*

: (2010).
* <.05, ** <.01, *** <.001

< 3-4> ,

		( )				( )			
			t		t		t		t
		3.37	-2.29*	6.76	1.45	4.65	-3.52***	8.33	1.31
		3.78		6.37		5.21		8.01	
		3.78	-2.21*	6.55	0.10	5.08	-1.84	7.91	2.05*
		3.39		6.58		4.79		8.41	

: (2010).
* <.05, ** <.01, *** <.001

,

.

,

.

.

. 1 21 (:1.28 , :1.48)

, 1 37

(:1.57 , :1.64) .

< 3-5> ,

					F
		3.82	3.52	3.39	1.88
		6.35	6.31	7.16	4.04*
		5.26	4.81	4.72	4.00*
		7.81	8.05	8.72	4.60**

: (2010).
* <.05, ** <.01, *** <.001

.

,

.

. .

< 3-6> ,

					F
		4.19	3.28	3.38	10.79***
		6.65	6.33	6.98	1.84
		5.27	4.78	4.78	3.92*
		7.89	8.18	8.52	1.67

: (2010). .
* <.05, ** <.01, *** <.001

, , , ,

< 3-7>

			( )	t
		525	3.41	
		260	3.43	0.49
		265	3.39	
		254	3.33	1.88
		271	3.49	

: (2010).
: *) 5 (5 → 1)

,

.

< 3-8>

				F
)	3.28	3.51	3.36	2.95

: (2010).
:) 5 (5 → 1)

,

.

, ‘ ’ (3.51)

‘ ’ (3.36) .

< 3-9> ,

		( )	( )
		175.74	281.09
		222.27	335.90
		130.08	227.30
		177.17	272.13
		174.39	289.48

: (2010).

(22 2) (13) 9 2

.

.

33 6 11 3

, 22 7

9 7 .

,

1 7

.

< 3-10> ,

		( )	( )
		175.74	281.09
		278.2	365.96
		171.86	290.17
		112.14	208.73
F		22.96***	16.28***

: (2010).
*** <.001

, , 27 8 ,
, 11 2 15 .
10 12
,
, , .

< 3-11>

(:)

				t
1)	3.33	3.49	3.41	1.88
2)	3.72	3.67	3.69	-0.67
3)	3.20	3.27	3.24	0.73
4)	6.44	6.59	6.52	0.90

: (2010).
:1) 5 (1 → 5)
2) ; 5 (1 → 5)
3) ; 5 (1 → 5)
4) ; 10 (1 → 10)
* <.05, ** <.01, *** <.001

, , ,
.
5 (1: , 5:) 3.69
, 3.24
.

<표 3-12> 베이비 부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β
.	
	-.037
	-.082*
	-.068
	-.065
	.013
	-.041
	-.007
	.164**
	-.481**
	.329***
F	18.78***
2	.268

: (2010).

.

, .

, ,

. ,

, ,

.

,

, ,

.

< 3-13>

(: , %)

											(%)	( )
		17.9	20.0	21.3	9.5	21.0	1.1	5.7	3.0	0.4	100.0	525
		16.5	16.2	20.8	13.8	22.7	0.8	4.2	4.6	0.4	100.0	260
		19.2	23.8	21.9	5.3	19.2	1.5	7.2	1.5	0.4	100.0	265
		17.3	19.3	19.3	8.7	22.4	2.0	6.3	4.3	0.4	100.0	254
		18.5	20.7	23.2	10.3	19.6	0.4	5.2	1.8	0.4	100.0	271
		14.4	23.4	21.0	7.2	21.6	1.2	4.2	6.6	0.6	100.0	167
		18.2	21.1	19.6	10.0	23.0	1.0	4.8	1.9	0.5	100.0	209
		21.5	14.8	24.2	11.4	17.4	1.3	8.7	0.7	0.0	100.0	149
		16.3	21.3	18.1	5.6	26.3	0.0	5.6	6.9	0.0	100.0	160
		18.0	20.3	23.4	10.2	19.5	2.0	3.9	2.0	0.8	100.0	256
		20.2	17.4	21.1	13.8	16.5	0.9	10.1	0.0	0.0	100.0	109

: (2010).
* <.05, ** <.01, *** <.001

(21.3%), (21.0%),
(20.0%), (17.9%) , , ,
, 10% . ,
(22.7%) (20.8%)
, (23.8%), (21.9%), (19.2%),
(19.2%) .

.
, ,
,

26.9% ,
(21.4%), (19.7%) .
14.0% . , (32.3%) ,
20.2%, 18.8% .

< 3-14>

(: , %)

	94	(17.9)	94	(26.9)	205	(32.3)	393	(26.0)
	105	(20.0)	69	(19.7)	119	(18.8)	293	(19.4)
	112	(21.3)	75	(21.4)	93	(14.7)	280	(18.6)
	50	(9.5)	19	(5.4)	40	(6.3)	109	(7.2)
	110	(21.0)	49	(14.0)	26	(4.1)	185	(7.2)
	6	(1.1)	8	(2.3)	4	(0.6)	18	(1.2)
	30	(5.7)	8	(2.3)	18	(2.8)	56	(3.7)
	16	(3.0)	28	(8.0)	128	(20.2)	172	(11.4)
	2	(0.4)	0	(0.0)	1	(0.2)	3	(0.2)
(%)	525	(100.0)	350	(100.0)	634	(100.0)	1,509	(100.0)

: (2010).
* <.05, ** <.01, *** <.001

, . ,
,
.
.
60 4,50

, ,

, , , ,

.

40~50 ... ...

( ) ...

...(A, 65 ,).

, ...

,

...

(C, 63 ,)

~

(C, 63 ,).

, ...

, ...

. . ,

. . .

, (E, 61

,)

... ...

... ... (E, 61

,)

... 100% . , . .

, .

. (A, 65 ,

)

, ...

. ,

,

...

. ... .

... (

A, 65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A, 65 ,

)

, .

,

, , . ,

... …(D, 63 ,

).

, (E, 61 ,)

< 3-15>

(: , %)

		92	(41.6)	119	(53.8)	0	(0.0)	1	(0.5)	5	(2.3)	1	(0.5)	3	(1.4)
		41	(37.3)	65	(59.1)	0	(0.0)	0	(0.0)	2	(1.8)	0	(0.0)	2	(1.8)
		51	(45.9)	54	(48.6)	0	(0.0)	1	(0.9)	3	(2.7)	1	(0.9)	1	(0.9)
		33	(32.0)	62	(60.2)	0	(0.0)	0	(0.0)	4	(3.9)	1	(1.0)	3	(2.9)
		59	(50.0)	57	(48.3)	0	(0.0)	1	(0.8)	1	(0.8)	0	(0.0)	0	(0.0)
		26	(35.1)	44	(59.5)	0	(0.0)	0	(0.0)	2	(2.7)	0	(0.0)	2	(2.7)
		39	(40.2)	53	(54.6)	0	(0.0)	1	(1.0)	3	(3.1)	0	(0.0)	1	(1.0)
		27	(54.0)	22	(44.0)	0	(0.0)	0	(0.0)	0	(0.0)	1	(2.0)	0	(0.0)
		22	(26.5)	57	(68.7)	0	(0.0)	0	(0.0)	3	(3.6)	0	(0.0)	1	(1.2)
		45	(43.7)	55	(53.4)	0	(0.0)	0	(0.0)	2	(1.9)	0		1	(1.0)
		25	(71.4)	7	(20.0)	0	(0.0)	1	(0.5)	0	(0.0)	1	(2.9)	1	(2.9)

: (2010).

* <.05, ** <.01, *** <.001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4(5점 척도;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로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41.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불만족 이유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는 불만족 이유로 시간부족(50.0%)과 경제적 부담(48.3%)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적으로 직장에서 고위 관리직이나 상급의 직위에 있는 전기 베이비 부머에게는 상대적으로 시간부족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직장업무에 더 몰입해야 하는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는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간부족이 더 큰 저해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 보다 여가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득 수준이 상인 경우, 경제적 부담의 비율(20.0%)이 낮아지고, 시간부족(71.4%)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여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불만족에 대한 세대별 비교에서는 경제적 부담은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간 부족의 비율은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가를 위한 비용은 세대와 무관하게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가활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한 동반자가 없다는 불만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고(7.2%), 본 조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불만족 이유가 15.1%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이 건강 악화와 관련된 응답이었다.

< 3-16> ,

(: , %)

								(%)	
		92	(41.6)	45	(36.0)	32	(19.3)	169	(33.0)
		119	(53.8)	67	(53.6)	90	(54.2)	276	(53.9)
		0	(0.0)	3	(.4)	3	(1.8)	6	(1.2)
		1	(0.5)	3	(2.4)	3	(1.8)	7	(1.4)
		5	(2.3)	1	(0.8)	12	(7.2)	18	(3.5)
		1	(0.5)	1	(0.8)	1	(0.6)	3	(0.6)
		3	(1.4)	5	(4.0)	25	(15.1)	33	(6.4)
		221	(100.0)	125	(100.0)	166	(100.0)	512	(100.0)

: (2010).

지금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다 라는 응답이 24.6%인 것에 비해 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세 배 정도 높은 71.6%로 조사되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소득 수준별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이 상 인 경우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가시간을 늘리겠다는 비율(84.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가생활을 즐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퇴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보다는 여가시간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질적 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돈, 건강, 시간 등을 구술하고 있다.

, (E, 61 ,)

. ,

. .

~ . .

. .

(A, 65 ,)

< 3-17>

								χ^2
		129	(24.6)	376	(71.6)	20	(3.8)	
		74	(28.5)	176	(67.7)	10	(3.8)	4.28
		55	(20.8)	200	(75.5)	10	(3.8)	
		67	(26.4)	177	(69.7)	10	(3.9)	0.93
		62	(22.9)	199	(73.4)	10	(3.7)	
		63	(39.4)	89	(55.6)	8	(5.0)	36.36^{***}
		55	(21.5)	195	(76.2)	6	(2.3)	
		11	(10.1)	92	(84.4)	6	(5.5)	
		52	(31.1)	109	(65.3)	6	(3.6)	7.28
		50	(23.9)	151	(72.2)	8	(3.8)	
		27	(18.1)	116	(77.9)	6	(4.0)	

: (2010).
* <.05, ** <.01, *** <.001

< 3-18>

(: , %)

						(%)	( )
(%)	8.8	60.6	22.6	7.3	0.7	100.0	3,028
	8.0	57.9	24.9	8.3	0.9	100.0	1,632
	9.7	63.7	19.9	6.2	0.5	100.0	1,393
	9.7	59.9	21.4	8.3	0.7	100.0	1,433
	7.9	61.1	23.7	6.5	0.8	100.0	1,594
	3.1	48.1	27.8	18.4	2.5	100.0	319
	3.8	56.5	28.3	10.4	1.0	100.0	628
	8.7	62.6	22.8	5.6	0.4	100.0	1,331
	15.5	65.6	15.2	3.2	0.5	100.0	749
300	3.9	51.2	29.7	14.0	1.2	100.0	968
300 500	8.9	61.1	23.0	6.5	0.6	100.0	1,050
500	13.3	69.1	15.4	1.8	0.4		1,007

: (2010)

69.4%

,

, ,

. ,

.

< 3-19>

(: , %)

						(%)	( )
(%)	16.4	67.3	14.1	2.2	0.0	100.0	3,028
	14.7	66.0	17.0	2.3	0.1	100.0	1,632
	18.4	68.8	10.7	2.1	0.0	100.0	1,393
	16.7	66.8	14.0	2.4	0.1	100.0	1,433
	16.2	67.7	14.1	1.9	0.1	100.0	1,594
	10.0	52.2	27.8	10.0		100.0	319
	9.9	68.1	19.0	3.0	0.0	100.0	628
	16.2	70.4	12.5	1.0		100.0	1,331
	25.1	67.6	6.8	0.4	0.1	100.0	749
300	12.5	61.8	20.7	5.1	0.0	100.0	968
300~500	14.2	69.6	15.0	1.1	0.0	100.0	1,050
500	22.6	70.0	6.7	0.5	0.1	100.0	1,007

: (2010).

89

, 83.7% .

,

3

,

.

< 3-20> 1 5

1 1 5

.

< 3-20> (1 5 1)

(: , %)

			1					1	
	426	(16.2)	315	(60.0)	/ / *	37	(1.4)	9	(1.7)
	171	(6.5)	24	(4.6)	(, , , ,)	37	(1.4)	0	(0.0)
	158	(6.0)	16	(3.0)	/	35	(1.3)	11	(2.1)
/	145	(5.5)	6	(1.1)	( )/ *	34	(1.3)	7	(1.3)
	143	(5.4)	14	(2.7)		32	(1.2)	1	(0.2)
/ /	138	(5.3)	4	(0.8)		23	(0.9)	11	(2.1)
/	132	(5.0)	3	(0.6)	/ / / / *	23	(0.9)	3	(0.6)
	109	(4.2)	8	(1.5)	(, , , 3)	23	(0.9)	3	(0.6)
	98	(3.7)	4	(0.8)		16	(0.6)	0	(0.0)
/ / ( )	98	(3.7)	2	(0.4)	/ /	16	(0.6)	0	(0.0)
	71	(2.7)	2	(0.4)		15	(0.6)	0	(0.0)
/	63	(2.4)	22	(4.2)		14	(0.5)	2	(0.4)
(/ / / / / ,)*	61	(2.3)	10	(1.9)		14	(0.5)	0	(0.0)
* (, , ,)	60	(2.3)	2	(0.4)	/ / *	13	(0.5)	3	(0.6)
/ /	59	(2.2)	2	(0.4)	(, , ,)*	13	(0.5)	2	(0.4)
/	48	(1.8)	8	(1.5)	/	13	(0.5)	1	(0.2)
	42	(1.6)	0	(0.0)		12	(0.5)	1	(0.2)
	38	(1.4)	13	(2.5)	(, ,)	12	(0.5)	0	(0.0)
	38	(1.4)	0	(0.0)	/ *	10	(0.4)	3	(0.6)

: (2010).

: *)

1 5 TV (16.2%)
, (6.5%) . 1
, TV (60.0%) ,
(4.6%), / (4.2%), (3.0%), (2.7%),
(2.5%), / (2.1%) .
,
. 1 5
, TV , /
(5.5%), / / (3.7%), / /
(2.2%) .

운동 및 스포츠 활동유형은 구기운동, 육상, 수상운동, 헬스/에어로빅, 베드미턴/줄넘기/맨손체조, 요가/필라테스/태보, 사이클링/산악자전거 등으로 개별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1순위에서 빈도와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지만, 이들을 운동 및 스포츠 활동유형 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키면 총 34명(6.5%)으로 시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보이는 여가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소정 외(2010)의 연구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TV
,
. TV
1 60%, 16.2%
TV
.

< 3-21> (, ,)

(: , %)

A, B (%)		C, D (%)		E (%)	
A1	37(7.0)	C1 *	91	E1	39(7.4)
A2	18(3.4)	C2	(17.3)	E2 /	37(7.0)
A3	33(6.3)	C3	8(1.5)	E3	59(11.2)
A4	22(4.2)		3(0.6)	E4	45(8.6)
A5	59(11.2)	D1 *	102(19.4)	E5	211(40.2
A6	6(1.1)	D2	48	E6 /	)
A7 *	144(27.4)	D3	(9.1)	E7 /	12(2.3)
A8	81	D4	6(1.1)	E8	60(11.4)
B1	(15.4)	D5 *	2(0.4)	E9	12(2.3)
B2	5(1.0)	D6	76(14.5)	E10 /	4(0.8)
B3 /	10(1.9)	D7 /	60(11.4)	E11	2(0.4)
B4	5(1.0)	D8 / / *	31(5.9)	E12	14(2.7)
B5 /	7(1.3)	D9	37(7.0)		30(5.7)
B6	55(10.5)	D10	5(1.0)		
B7	11(2.1)	D11 /	33(6.3)		
B8 /	28(5.3)	D12	21(4.0)		
	4(0.8)		2(0.4)		

: (2010).
: *) 1 5 5% .

2010 「 」 ,

, , , , ,

, 8 ,

‘ ’, ‘ ’, ‘ ’

’, ‘ / / ’

. < 3-21>

1 5

< 3-20> ,

, .

<표 3-21>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유형 내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 중에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영화보기(27.4%), 연예공연관람(15.4%), 연극관람(11.2%), 악기연주/노래(10.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 전시회 관람(7.0%), 음악연주회 관람(6.3%), 사진촬영(5.3%) 등이 비교적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유형 중에는 구기운동(19.4%), 스포츠관람(17.3%), 헬스(14.5%), 요가(11.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운동(9.1%), 육상/조깅/속보(7.0%), 댄스스포츠(6.3%), 배드민턴/맨손체조(5.9%) 등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관광활동유형에서는 해외여행이 40.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천/해수욕장(11.4%)과 삼림욕(11.2%)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캠핑(8.6%), 문화유적방문(7.4%), 자연명승/풍경관람(7.0%)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 3-22> (, ,)

(: , %)

F		G		H	
(%)		(%)		(%)	
F1	4(0.8)	1 *	14(2.7)	1	34(6.5)
F2	7(1.3)	2 / *	21(4.0)	2 *	32(6.1)
F3 /	18(3.4)	3 *	21(4.0)	3 /	0(0.0)
F4	2(0.4)	4 *	5(1.0)	4 *	10(1.9)
F5	11(2.1)	5	1(0.2)	5 / / *	1(0.2)
F6	7(1.3)	6 *	1(0.2)	6 / *	9(1.7)
F7 *	102(19.4)	7	2(0.4)	7 /	4(0.8)
F8 *	62(11.8)	8 *	1(0.2)	8 /	34(6.5)
F9 /	1(.02)			*	1(0.2)
F10 CC	0(0.0)			9	
F11 / *	7(1.3)				
F12	1(0.2)				
F13 /	0(0.0)				
F14 / /	7(1.3)				
F15 /	3(0.6)				
F16 / *	30(5.7)				
F17 *	2(0.4)				
F18 / *	10(1.9)				
F19 *	36(6.9)				
F20 , ,	24(4.6)				

: (2010).

: *; 1 5 5% .

. , ,

, < 3-22>

.

. (19.4%) (11.8%) 10%

. 10% (6.9%) / (5.7%)

, , , (4.6%)

.

5% ,

TV

1.0% , 4.0% .

, ‘ / ’ 1

0.2% ,

2.7% .

/ 6.5% ,

(6.1%) .

< 3-23> 1%

5% .

(

, . ,),

(,),

( ) .

. ,

.

, ,

, , / .

< 3-23>

	a)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 1 5 1%
) 5%

,

.

< 3-24>

.

. ,

,

,

.

, ,

, / /

.

, / ( ),

( ) .

.

97

. 8 ,

, 7

3

5 .

.

,

, , ,

.

. /

, / / , . .

, , / ,

/ .

/ ,

.

< 3-24>

		31(2.4)		76(29.2) 37(14.2) **24(9.2)** **22(8.5)** 20(7.7)	/ 19(7.3) **15(5.8)** 13(5.0)
		49(3.8) 48(3.7) 21(1.6) / / 19(1.5)		73(28.1) 70(26.9) 32(12.3) 20(7.7)	/ / 16(6.2) / **15(5.8)** / / 13(5.0)
		18(1.2)		107(41.2) 33(12.7) 23(8.8) 22(8.5)	/ 21(8.1) **17(6.5)** 16(6.2)
		100(7.7) 81(6.2) 38(2.9) / 36(2.8) / 34(2.6)	**19(1.5)** / / **16(1.2)** / 14(1.1)	**58(22.3)** 57(21.9)	
		212(16.3) 83(6.4) 54(4.2) / 48(3.7)	/ / 45(3.5) 15(1.2)	15(5.8)	
		/ 79(6.1) / / 40(3.1)	35(2.7) 20(1.5) / / 13(1.0)	/ **23(8.8)** 15(5.8)	
		40(3.0)		68(25.7) 44(16.6) 39(14.7)	/ 36(13.6) **21(7.9)**
		/ / 18(1.4) 13(1.0)		/ / **59(22.3)** 44(16.6) 29(10.9) 28(10.6) **28(10.6)**	/ / 24(9.1) 21(7.9) / / 15(5.7)
		14(1.1)		104(39.2) / 39(14.7) 26(9.8) 22(8.3)	21(7.9) 17(6.4)
		/ 96(7.2) 58(4.4) **33(2.5)** / 21(1.6) 17(1.3)	**14(1.1)** / 14(1.1)	45(17.0) **35(13.2)** / **21(7.9)**	, , **19(7.2)** , / **16(6.0)**
		214(16.2) / / 93(7.0) 89(6.7)	88(6.6) 23(1.7) / 15(1.1)	/ / **14(5.3)**	
		74(5.6) / 66(5.0)	/ / 58(4.4) / / 46(3.5) 22(1.7)	**24(9.1)** 19(7.2)	

: 1 5 1% ,
5% .

,

.

, ,

(3-25).

(3-26).

. ,

,

. ,

(,)

. ,

,

, ,

.

< 3-25>

		(56 ~64)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6>

			(56 ~64)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3

. ... 20~30
, 1-2 ... .
. !(C, 63 ,
)

. ,
. .
? ? , ...
, .
. . ...
. ,
. , ... ,
. (A, 65 ,)

...
, ...
. ,

,
102 .
~ ~
~(C, 63 ,
)

, ...
. ,
. . ‘
, .
50 ‘ , ... , ’
. ,
... .
, ...
. ... (H, 62 ,)

~ ,
. , . . ~ .
. , ... , ,

, ? ... , ,
, (G, 63 ,).

,
(B, 63 ,)

. ,
, , ...
, . . ,
, (H, 62
,)

< 3-27>

(: , %)

									χ^2
		299	**(57.0)**	**179**	**(51.1)**	**343**	**(54.1)**	**821**	**(54.4)**	
		181	(34.5)	**148**	**(42.3)**	220	(34.7)	549	(36.4)	
	( )	30	(5.7)	16	(4.6)	61	(9.6)	107	(7.1)	28.10**
		9	(1.7)	2	(0.6)	0	(0.0)	11	(0.7)	
		5	(1.0)	4	(1.1)	8	(1.3)	17	(1.1)	
		1	(0.2)	1	(0.3)	2	(0.3)	4	(0.3)	
		525	(100.0)	350	(100.0)	634	(100.0)	1,509	(100.0)	

: (2010).

19.4
(, 2011). ,

.

,

57.0% .

34.5% .

42.3%

34.7% .

, .

. , .

. ,

‘ , .

, .

,

104 . ,

, (B, 63 , /)

. .

, .

.

. , , 12

1 . . ...

... ~ .

. 12 .

.

.

(B, 63 , /)

... , , .

, , .

, ... ,

, . .

( ) .

. , .

. , , .

(C, 63 ,)

. , . .

, .

. , ,

? .

(F, 60 ,)

... , . . (

) .

, ... ,

(E, 61 ,)

. . 2 3 , 1 2 ,

. , , , . , ,

, .

, ... , , ,

, ...(G, 63 ,)

105

3

.

. , ,

... , ...(

H, 62 ,)

,

. 1 5

.

1 3 ,

A H 8 .

< 3-28>

(: , %)

1~3					2~4				
1)					*				
	DDD		1	(0.2)		FFF		6	(1.1)
	FFF		1	(0.2)				19	(3.6)
			64	(12.2)				1	(0.2)
			66	**(12.6)**				**26**	**(5.0)**
			127	(24.2)				107	(20.4)
			67	(12.8)				89	(17.0)
			63	(12.0)				61	(11.6)
	B		1	(0.2)		A		1	(0.2)
	D		9	(1.7)		D		9	(1.7)
	F		45	(8.6)		E		1	(0.2)
			185	(35.2)		F		88	(16.8)
			17	(3.2)				120	(22.9)
								38	(7.2)
			257	**(49.0)**				**257**	**(49.0)**
	A		4	(0.8)		A		5	(1.0)
	B		1	(0.2)		B		2	(0.4)
	C		3	(0.6)		C		7	(1.3)
	D		24	(4.6)		D		43	(8.2)
	E		2	(0.4)		E		8	(1.5)
	F		27	(5.1)		F		46	(8.8)
			133	(25.3)				89	(17.0)
			8	(1.5)				42	(8.0)
			202	**(38.5)**				**242**	**(46.1)**
			525	**(100.0)**				**525**	**(100.0)**

: (2010).

: 1) A : , B : , C : , D :
E : , F: , : , :

< 3-28> 1 3

, ( )

. , ‘ ’,

‘ ’,

, , .

12.6%, 49.0%, 38.5%

. , (G

) (G

) 97% 64 , 72% 185 (G

), 1 (G) 65.8% 133

. TV ,

1 TV .

1 TV

2 4 ,

.

< 3-29>

(: , %)

	66	(12.6)	66	(18.9)	158	(24.9)
	257	**(49.0)**	**194**	**(55.4)**	**370**	**(58.4)**
	202	(38.5)	90	(25.7)	106	(16.7)
	525	(100.0)	350	(100.0)	634	(100.0)

: (2010).

* <.05, ** <.01, *** <.001

< 3-29> .

.

, ,

.

(GGG) ,

30% . ,

.

.

. .

(47.2%) , (40.2%),

(12.5%) ,

.

, , , ,

, .

7.4%

47.6% . ,

. ,

.

< 3-30>

(: , %)

										X^2
		34	(12.5)	128	(47.2)	**109**	**(40.2)**	271	(100.0)	0.782
		32	(13.8)	129	(50.8)	93	(36.6)	254	(100.0)	
		28	(10.8)	125	(48.1)	**107**	**(41.2)**	260	(100.0)	2.371
		38	**(14.3)**	132	(49.8)	95	(35.9)	265	(100.0)	
		27	(16.2)	91	(54.5)	49	(29.3)	167	(100.0)	13.573**
		28	(13.4)	99	(47.4)	82	(39.2)	209	(100.0)	
		11	**(7.4)**	67	(50.0)	**71**	**(47.6)**	149	(100.0)	
		40	(15.2)	133	(50.6)	90	(34.2)	263	(100.0)	11.105*
		21	(13.7)	72	(47.1)	60	(39.2)	153	(100.0)	
		5	**(4.6)**	52	(47.6)	**52**	**(47.7)**	109	(100.0)	

: (2010).
* <.05, ** <.01, *** <.001

< 3-31> ,

(: , ,)

			(N=66)	(N=257)	(N=202)	F
			3.82	3.61	3.46	0.816
			6.94	6.35	6.71	1.387
			5.08	4.93	4.88	0.291
			8.12	7.96	**8.44**	1.700
1		(1)	131.67	128.48	**135.74**	0.435
			116.67	172.11	**199.65**	4.171*
			247.82	277.45	**296.58**	1.170
1		(1)	0.55	2.05	**4.77**	6.316**

: (2010).
* <.05, ** <.01, *** <.001

, .

.

.

< 3-32> , , ,

(: , %)

									χ^2
	14	**(21.2)**	**42**	**(16.3)**	**38**	**(18.8)**	94	(17.9)	
	20	**(30.3)**	**54**	**(21.0)**	**31**	**(15.3)**	**105**	**(20.0)**	
	8	(12.1)	**57**	**(22.2)**	**47**	**(23.3)**	**112**	**(21.3)**	
	3	(4.5)	21	(8.2)	26	(12.9)	50	(9.5)	
	15	**(22.7)**	**58**	**(22.6)**	**37**	**(18.3)**	**110**	**(21.0)**	24.228
	0	(0.0)	3	(1.2)	3	(1.5)	6	(1.1)	
	2	(3.0)	**12**	**(4.7)**	**16**	**(7.9)**	30	(5.7)	
	4	(6.1)	8	(3.1)	4	(2.0)	16	(3.0)	
	0	(0.0)	2	(0.8)	0	(0.0)	2	(0.4)	

: (2010).
* <.05, ** <.01, *** <.001

, (30.3%) ,
(22.7%) (21.2%) ,
(22.6%), (22.2%), (21.0%)
16.3% .

110

, (23.3%) ,
(18.8%), (18.3%), (15.3%), (12.9%)
. (4.5%), (8.2%)
12.9% , .

< 3-33> ,

	(N=66)	(N=257)	(N=202)	F
1)	3.53	3.44	3.33	1.26
1)	3.98	3.65	3.65	5.59**
2)	3.50	3.25	3.14	2.85
3)	5.85	6.51	6.75	6.10**

: (2010).
: 1) (1) (5) 5 .
2) ? (1)
(5) 5 . .
3) ?
(1) (10) .
* <.05, ** <.01, *** <.001

,

.

,

. ,

, (

3-33).

3

, ,

(3.33) .

,

. , .

< 3-34>

(: , %)

									X^2
	13	(36.1)	56	(51.4)	23	(30.3)	92	(41.6)	
	22	(61.1)	47	(43.1)	50	(65.8)	119	(53.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1	(0.5)	13.872
	1	(2.8)	3	(2.8)	1	(1.3)	5	(2.3)	
	0	(0.0)	1	(0.9)	0	(0.0)	1	(0.5)	
	0	(0.0)	2	(1.8)	1	(1.3)	3	(1.4)	
	36	(100.0)	109	(100.0)	76	(100.0)	221	(100.0)	

: (2010).
* <.05, ** <.01, *** <.001

, (61.1%)
(65.8%) , (51.4%)

.

(3-30),

.

,

.

< 3-35>

(: , %)

										X^2
		5	(0.02)	95	(43.6)	118	(54.1)	218	(100.0)	12.740**
		21	(0.07)	162	(52.8)	124	(40.4)	307	(100.0)	

: (2010).
* <.05, ** <.01, *** <.001

(54.1%) ,

(52.8%) .

525 218

41.5% . , (47.3%) (35.8%)

, (39.4%) (43.5%)

. ,

.

< 3-36>

(: , %)

		218	(41.5)	307	(58.5)
		123	(47.3)	137	(52.7)
		95	(35.8)	170	(64.2)
		100	(39.4)	154	(60.6)
		118	(43.5)	153	(56.5)
		49	(29.3)	118	(70.7)
		87	(41.6)	122	(58.4)
		82	(55.0)	67	(45.0)
		41	(25.6)	119	(74.4)
		119	(46.5)	137	(53.5)
		58	(53.2)	51	(46.8)

: (2010).

< 3-37>

(: , %)

/	49	(22.5)
/	43	(19.7)
	27	(12.4)
	20	(9.2)
	17	(7.8)
	13	(6.0)
1)	49	(22.5)
(%)	218	(100.0)

: (2010).

: 1) 5 (1.0%) 22 .

. < 3-37> ,

(22.5%) ,

(19.7%), (12.4%), (9.2%) . (7.8%)

(6.0%) . (12.4%)

/ (1.7%), (1.1%),

/ (1.0%), (0.4%), / / (0.4%), (0.2%)

17.2% .

< 3-38>

(: , %)

		1		2		3		4		5		6	
(= 218)	2.43	89	(17.0)	59	(11.2)	28	(5.3)	13	(2.5)	18	(3.4)	11	(2.1)

: (2010).

< 3-39>

(: , %)

	(%)	(%)	2~3 (%)	1 (%)	1 (%)
(=218)	4(0.8)	29(5.5)	67(12.8)	89(17.0)	29(5.5)

: (2010).

1 89 (17.0%) ,
2 (59 , 11.2%), 3 28 (5.3%)
. 2.43 .

1 89 (17.0%) ,
2~3 67 (12.8%) .

< 3-40>

(: , %)

			(·)					
		(%)	(%)	(%)	(%)	(%)	(%)	(%)
		28(22.8)	18(14.6)	11(8.9)	57(46.3)	7(5.7)	2(1.6)	123(100.0)
		3(3.2)	5(5.3)	5(5.3)	14(14.7)	14(14.7)	5(5.3)	95(100.0)
		31(14.2)	23(10.6)	16(7.3)	21(9.6)	21(9.6)	7(3.2)	218(100.0)
		4(6.1)	14(21.2)	0(0.0)	39(59.1)	6(9.1)	3(4.5)	66(100.0)
		1(1.7	9(15.3)	1(1.7)	29(49.2)	17(28.8)	2(3.4)	59(100.0)
		5(4.0)	23(18.4)	1(0.8)	68(54.4)	23(18.4)	5(4.0)	125(100.0)
		1(1.3)	8(10.0)	2(2.5)	56(70.0)	7(8.8)	6(7.5)	80(100.0)
		0(0.0)	3(4.1)	0(0.0)	45(61.6)	22(30.1)	3(4.1)	73(100.0)
		1(0.7)	11(7.2)	2(1.3)	101(66.0)	29(19.0)	9(5.9)	153(100.0)

: (2010).

, 55.0% ,
(14.2%), (10.6%), (9.6% .
, 66.3%
(46.3%) , (14.7%)
(5.7%) , (22.8%) (3.2%)
, (14.6%) (5.3%)
. ,
, .
, (14.2%)
,
. (,) (10.6%)
(18.4%) 7.2% .
,
.
.

,

(54.5%) (55.0%) ,

(66.0%)

.

.

9.6% 18.4% .

,

,

.

. ,

/

.

< 3-41>

(: , %)

		(%)	(%)	, (%)	, (%)	(%)
(=525)		269(51.2)	72(13.7)	43(8.2)	115(21.9)	26(5.0)
	(=218)	112(51.4)	40(18.3)	15(6.9)	43(19.7)	8(3.7)
	(=307)	157(51.1)	32(10.4)	28(9.1)	72(23.5)	18(5.9)

: (2010).

51.2%

, 21.9%,

13.7%, 8.2% .

(18.3%)

(10.4%) ,

19.7%,

23.5% .

,

.

, (,)

,

/ ,

.

[3-2] (vs. &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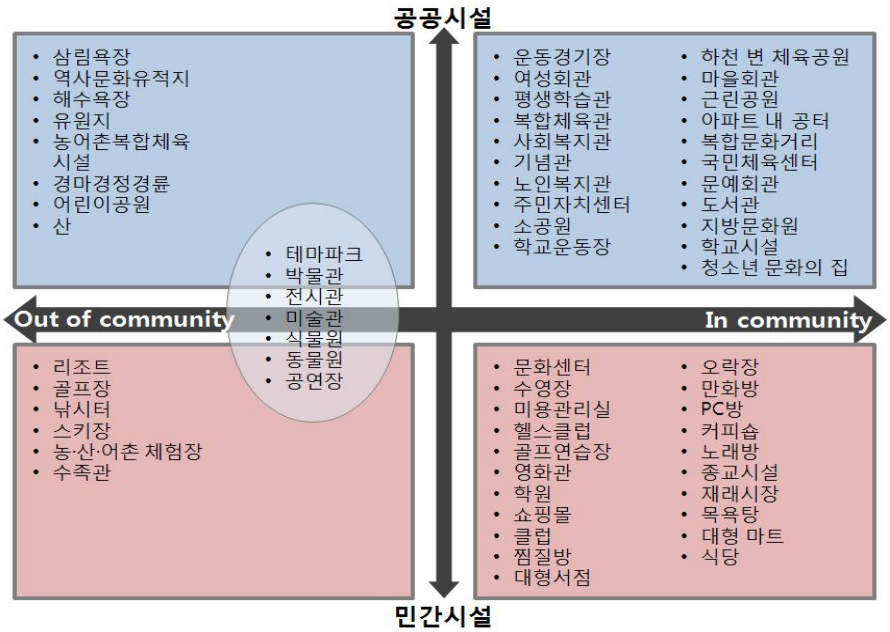
공공시설
• 삼림욕장
• 역사문화유적지
• 해수욕장
• 유원지
• 농어촌복합체육 시설
• 경마경정경륜
• 어린이공원
• 산
• 운동경기장
• 여성회관
• 평생학습관
• 복합체육관
• 사회복지관
• 기념관
• 노인복지관
• 주민자치센터
• 소공원
• 학교운동장
• 하천 변 체육공원
• 마을회관
• 근린공원
• 아파트 내 공터
• 복합문화거리
• 국민체육센터
• 문예회관
• 도서관
• 지방문화원
• 학교시설
• 청소년 문화의 집
• 테마파크
• 박물관
• 전시관
• 미술관
• 식물원
• 동물원
• 공연장
Out of community
In community
• 리조트
• 골프장
• 낚시터
• 스키장
• 농·산·어촌 체험장
• 수족관
• 문화센터
• 수영장
• 미용관리실
• 헬스클럽
• 골프연습장
• 영화관
• 학원
• 쇼핑몰
• 클럽
• 찜질방
• 대형서점
• 오락장
• 만화방
• PC방
• 커피숍
• 노래방
• 종교시설
• 재래시장
• 목욕탕
• 대형 마트
• 식당
민간시설

[3-2] 2010 「 」

, , . , , ,

. (58.7%)

, (52.3%)

. ,

.

X Y

, .

23.86 .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X Y

4 . , [3-3]

(1)

, .

(2) ,

. (3)

, .

(4) ,

.

[3-3]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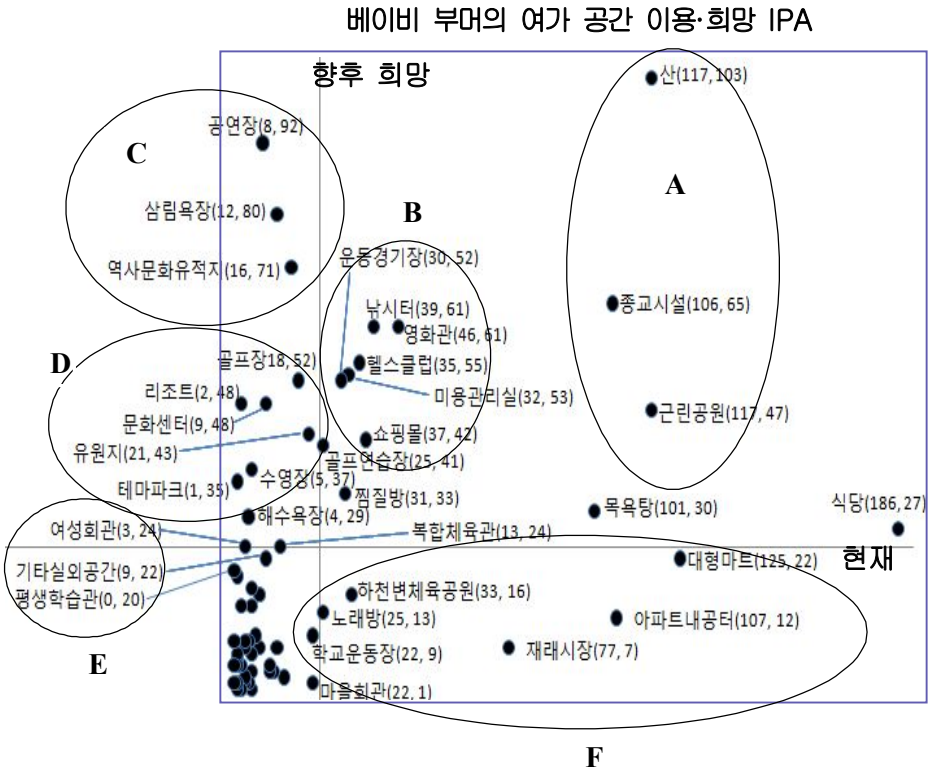
베이비 부머의 여가 공간 이용·희망 IPA
향후 희망
현재
A
B
C
D
E
F
산(117, 103)
종교시설(106, 65)
근린공원(117, 47)
목욕탕(101, 30)
식당(186, 27)
대형마트(125, 22)
아파트내공터(107, 12)
재래시장(77, 7)
공연장(8, 92)
삼림욕장(12, 80)
역사문화유적지(16, 71)
운동경기장(30, 52)
낚시터(39, 61)
영화관(46, 61)
헬스클럽(35, 55)
미용관리실(32, 53)
쇼핑몰(37, 42)
골프연습장(25, 41)
찜질방(31, 33)
복합체육관(13, 24)
하천변체육공원(33, 16)
노래방(25, 13)
학교운동장(22, 9)
마을회관(22, 1)
골프장18, 52)
리조트(2, 48)
문화센터(9, 48)
유원지(21, 43)
테마파크(1, 35)
수영장(5, 37)
해수욕장(4, 29)
여성회관(3, 24)
기타실외공간(9, 22)
평생학습관(0, 20)

[3-4]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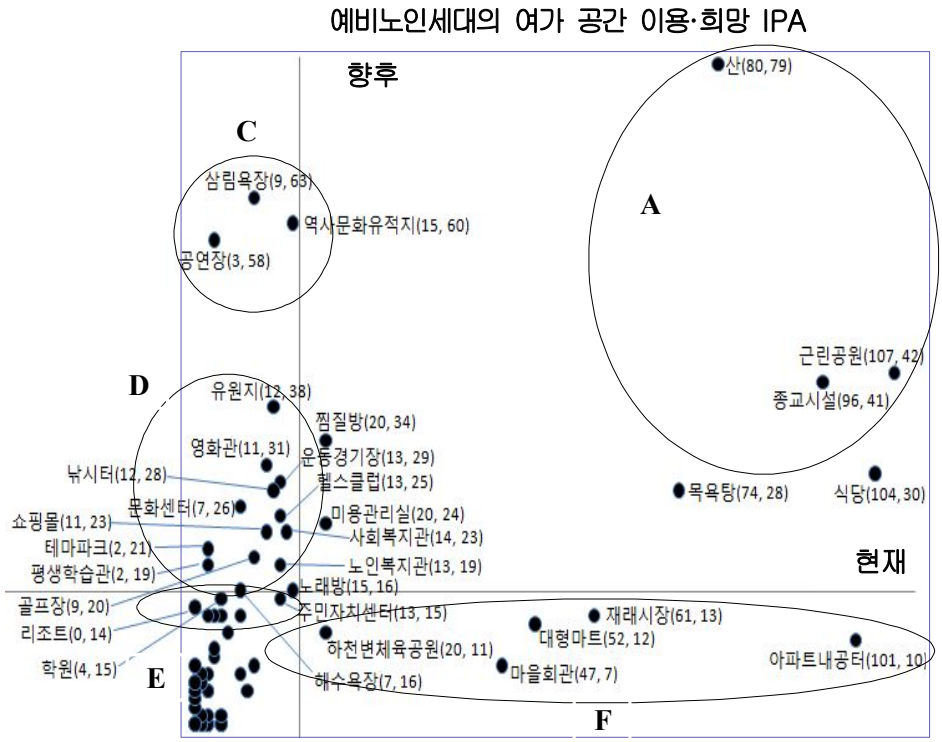

121

3

[3-3] ,

A F . **A**

. **A**

, , . **B**

,

. , , , , ,

. **C**

, , ,

. **D** ,

, , , ,

, . **E**

,

, , .

, , . **F**

. , ,

.

A, B, C, D

, ,

A B

.

. C

D

. , ,

,

. E ,

.

.

(targeting) . F ,

.

,

.

, IPA [3-4]

. ,

, B .

, . A C

, D ,

. E

D ,

.

(,

,) .

,

.

,

, .

.

, T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PA ,

, ,

.

,

, ,

.

.

SOC Model , ,

( ) (selection) (optimization),

/ (compensation) (resilience)

, , .

(elective selection) (loss-based sele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41.6%)

(53.8%) . ‘ ’ 27

8 , ‘ ’ 11 2 15

. 10

12 .

-

.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소득불평등 장기 전망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기간 동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진행이 매우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저출산의 문제가 중첩되어 미래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정책적 개입의 영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가 급속하게 심화되어 아직까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인들 내에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근로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병인·전승훈(2005)의 연구에 의하면 2002년도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0.417인데 반해 60세 65세 미만 연령집단의 지니계수는 0.523, 그리고 65세 70세 미만 연령 집단의 경우는 0.52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래의 노인세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산업화로 인한 개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 규모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 크며,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시점에 임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증대하게 되면서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 준비 행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 출산붐을 타고 1955년부터 1963년 산아제한 정책 이전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현재 전체 인구의 전체인구의 14.6%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통계청, 2010). 또한 베이비 붐 세대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에서도 현재의 노인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은퇴 후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현재 노인 세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정경희 외, 2010; 한경혜 외, 2010). 이들 연구는 베이비 붐 세대의 현재 고용형태, 자산소득 보유 현황 및 문화적 특성, 그리고 교육적 특성 등 주로 현재의 상황 파악에 머물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는 현재 노인세대에 비해 교육수준과 자산소득이 높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질적 구성으로 인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소득대책 마련의 정도가 매우 다르며, 이로 인해 높은 노후 소득 불평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현재의 노인세대와 비교 분석하여 각 소득요소별 불평등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총소득 및 요소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대와 현재의 노인세대 그리고 그 중간세대들의 소득의 구성 형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노년기 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세대 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노년기 소득불평등 및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불평등을 전망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에 기초하여 연도별, 출생코호트별로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의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고찰하여 연령대별로 불평등 변화의 경향을 파악할 것이다. 셋째, 총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의 불평등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연령대별 그리고 출생코호트별로 나누어 그 변화의 경향을 고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요소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총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어떤 요소소득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출생코호트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볼 것이다.

끝으로, 미래 노년기 소득불평등 전망을 위해 앞에서 산출된 지니계수와 각 요소소득의 기여도 정도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어떤 경향을 가질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각 요소소득의 장기적인 변화는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추정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나. 분석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가계동향조사(과거 도시가계조사임)」을 이용할 것이며, 1991년부터 1996년, 2001년, 2006년, 2010년까지 매 5년 간격으로 총 20년의 소득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5년 간격으로 조사하고자 할 경우 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2011년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매년도 조사가구의 가구주로 하였으며, 20년간 조사대상자를 통일시키기 위해 2인 이상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농어촌 지역의 1인 가구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평등의 정도에 비해 그 정도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목적이 불평등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추정의 문제 보다는 일관된 대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2인 이상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 연구내용별 분석방법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연구내용, 즉, ① 매년도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② 매년도 소득구성 요소별 소득불평등 및 기여정도 산출, ③ 세대별 노후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을 하고자 하며, 각 연구내용별로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년도 연령집단별 소득 불평등 변화 경향

본 연구는 다음의 총 8개의 연령 집단으로 28세-35세 이하,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그리고 66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1991년을 기준으로 이들을 추적할 경우 각 집단은 베이붐 세대, 1951-1955년 출생자, 1946－1950년 출생자, 1941-1945년 출생자, 1936-1940년 출생자, 1931-1935년 출생자, 1926-1930년 출생자, 그리고 1925년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코호트들이다. 베이비붐세대를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1991년도 현재 28세 이상인 가구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년도마다 동일한 연령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후 세대별 불평등 변화경향을 살펴볼 때는 5년 단위로 추적을 하기 때문에 1996년 이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부인 1955년-1960년 출생자만이 5년마다 추적하여 보고하였다.

2) 매년도 소득구성 요소별 소득불평등 및 기여도 산출

매년도 총소득 및 요소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 가상적 완전평등선과 실제의 분배곡선상의 면적에 기초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완전불평등 상태이면 1의 값을 갖게 된다. 즉,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간략하게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GINI = \frac{1}{\mu n^2} \sum_i \sum_j |y_i - y_j|$$

다음으로, 개별 요소소득이 총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 분해 방식을 이용하였다. 지니계수를 소득과 그 소득의 누적확률분포와의 공변량으로 표현하면 아래 <수식1>로 표현될 수 있다. 개별 독립변수가 노후소득불평등에 미치

는 영향 정도는 과 (1985)가 사용한 지니계수 분해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식 1>

$$Gini = 2\frac{Cov\ y, F(y)}{\mu_y}$$

즉, 지니계수는 소득과 소득의 순위와의 공변량을 그 소득의 평균으로 나눈값의 2배로 정의된다. 여기서 소득을 그 구성요소 소득의 합, $y = \sum_{K=1}^{K} Cov(y_k, F)$,으로 정의하고 구성요소소득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충족하면 <수식 1>은 아래 <수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식 2>

$$Gini = 2\frac{\sum_{K=1}^{K} Cov\ y_K, F(y)}{\mu_y}$$, 여기서 $Cov\ y_K, F(y)$,는 개별 요소소득과 총소득의 순위와의 공변량, μ_y 는 총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위의 <수식 2>의 분모와 분자에 $Cov\ y_K, F(y_K)$ 와 μ_K 를 곱하고 또 동일 항목으로 나누면 <수식 3>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식 3>

$$Gini = \sum_{K=1}^{K} \frac{Cov\ y_K, F(y)}{Cov\ y_K, F(y_K)} \bullet \frac{2Cov\ y_K, F(y_K)}{\mu_K} \bullet \frac{\mu_K}{\mu_y}$$

$$Gini = \sum_{K=1}^{K} R_K G_K S_K$$

여기서 R_K 는 지니 상관계수로 개별 요소소득과 총소득 순위와의 공변량과 개별 요소소득과 개별 요소소득 순위와의 공변량의 비로 구해지며, G_K 는 개별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그리고 S_K 는 개별 요소소득 평균이 전체 소득평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3) 노후소득불평등 장기 전망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인 노후소득불평등의 장기전망을 요소소득에 기초하여 추정하였다. 즉, 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요소소득 내 불평등의 변화가 20년 동안 평균적인 변화정도로 변화된다는 가정 하에 2030년까지 총소득의 불평등 변화정도와 각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정도 및 기여도의 변화를 통해 노후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을 하였다.

본 장에서는 노후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결과를 정리하였다.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관한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인에 한정하여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연구(이가옥·이현송·김정석·이미진, 2002; 김경아, 2008; 손병돈, 2009; 강성호·임병인, 2009), 둘째, 50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이미진·김미혜·홍백의, 2007; 김경아·강성호, 2008), 셋째, 미래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전망하는 연구(최현수, 2002; 이소정 외, 2008)이다.

먼저, 현재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가옥 외(2002)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구소득 수준을 조사한 1998년(정경희 외, 1998)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전기노인(65 69세)과 후기노인(70세 이상)의 노인 가구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은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에게서 다소 완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횡단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동년배효과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미진·김미혜·홍백의, 2007).

김경아(2008)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노년층의 소득현황 및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소득원천이 미치는 영향을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노인 가구의 불평등 정도가 악화되었고,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 및 독신가구 등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원천 중 사적이전 소득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 공적연금이 노인가구 전체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에 사용되는 두 개의 자료가 서로 달라 조사 방법과 표본이 서로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즉 분석자료의 상이함으로 인해 두 시점에서의 변화가 자료의 상이함에서 기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손병돈, 2009).

손병돈(2009)은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2003년까지 악화되다가 2005년에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소득원천은 근로소득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노인 소득 불평등에서 과거의 삶의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동산 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적이전소득과 공공부조소득은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호·임병인(2009)은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정도와 양극화 현상을 공적연금 수급집단과 미수급 집단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급집단이 미수급 집단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령노인일 수록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사람들이 주로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현재 노인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원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현재의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생애과정 전체에 걸친 기회구조의 차이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지은정, 2011; 손병돈, 2009). 이로 인해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을 노년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근로연령계층까지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이런 시도 중의 하나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중년기의 경제적 지위가 노년기의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표적 연구가 이미진 외(2007)인데, 이 연구는 노동패널 1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양상을 지니계수를 통해 추정하고,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대수편차평균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단면 분석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웠으나, 횡단면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살펴본 결과, 공적이전소득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며 해가 지날수록 개선효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강성호(2008)의 연구는 2 9차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구유형, 종사상 지위, 거주 지역, 소득·자산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독신가구, 소규모자영 및 미취업가구, 비광역시 거주 가구, 소득·자산 수준이 낮은 경우 불평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최현수(2002)와 이소정 외(2008)가 있다. 최현수(2002)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고,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여 개별 가구주의 연금급여액

을 추정하여 2001년에서 2024년 사이의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각지대의 존재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쇄되며, 심지어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와 지위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노년기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소정 외(2008)는 노년기 불평등을 소득, 소비, 건강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했고,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장기전망을 요소소득에 기초하여 추정하였다. 장기전망을 하기 위해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가계동향조사) 자료를 5년 간격으로 추출하였고, 지니계수분해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의 요소소득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년 동안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형태를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기전망을 한 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불평등이 다소 증가하고, 사업소득은 다소 감소,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불평등 감소, 사적이전의 경우 불평등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이지만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베이비붐 세대가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베이비붐 이전세대 및 현 노인세대와는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장기전망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후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전체의 소득불평등 원인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①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 ② 노동시장 관련 요인, 그리고 ③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다.

---

2) 이 부분은 이소정 외(2008) 연구에서 저자가 집필한 .93~100의 내용을 재인용하였음.

1) 거시적 요인

거시적 요인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거시요인들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명확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안국신·박완규·유항근(1995)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인플레율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국신(1995)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반면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의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실업은 일관되게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거시변수 중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실업률이다(안국신, 1995; 이정우·이성림, 2001; 채구묵, 2007). 이정우·이성림(2001)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해 1993년-1998년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98년 지니계수가 급상승한 원인이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있다고 보고 경기부양을 통해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채구묵(2007)의 연구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1985년~2004년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실업률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2) 노동시장 관련 요인

다음으로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의 수요공급 변화 등 노동시장 요인과 노조 조직률 및 최저임금 등 제도적 요인 또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병구·윤명수, 2003; 박성준, 2000; 유경준, 1998; 채구묵, 2007; , . & F , 1993; F , B., 1993). 먼저, 노동시장 측면에서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변화를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본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학력, 성별, 경력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격 변화)와 집

단의 분포 변화(수량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학력, 경력,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격변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1993)는 1968-1990년의 C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 및 고용 변화가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수익률 변화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1963-1994년까지 C 자료를 사용하여 인종과 성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한 (1997)의 연구 또한 학력과 경력에 의한 수익률 증가가 고학력자와 숙련 노동자의 임금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소득불평등에 기여한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수요공급에 대한 국내 연구 또한 인구특성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박성준(2000)은 1991~199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경력과 학력에 의한 수익률의 변화(가격 변화)와 노동자 특성의 분포 변화(수량 변화)로 분해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경력과 학력의 수익률 증가가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병구·윤명수(2003)는 1994년~200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각 요인별로 수량효과와 가격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박성준(2000)의 연구결과를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별로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속년수, 성별, 직종 등이 근로소득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들에서 가격효과가 수량효과를 압도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비율 증가, 대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 등도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채구묵, 2007).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큰 서구에서는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여부와 최저임금 수준 또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F (1993)은 노조조직율의 하락이 생산직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의 상대적인 임금하락을 가져와 불평등 경향을 심화시키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1993)은 최저임금 증가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후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유경준(1998)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조여부가 임금불평등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수준이 노조유무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상 노조여부 등의 제도적 요인이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학력별 임금격차의 축소 등 노동시장 수요공급 요인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요인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형태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및 소득구성 요인의 변화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여성가구주 가구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연령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 소득불평등이 주로 노인인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2; 임병인, 2005; 여유진·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김진욱, 2002; 정의철·김진욱, 2007) 연령 집단 내 소득불평등 완화가 주요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 간 소득불평등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분석 자료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임병인·전승훈, 2005; , 1982).

다음으로 학력의 이질화가 노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학력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 학력의 이질화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 집단의 학력구성이 과거 전통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로 인해 미래의 노인 소득분배 구조는 현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1999~2005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의철·김진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

연령, 취업자 수 등의 다른 변수들보다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소득불평등의 전체 소득불평등에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량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학력 집단 간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구소득을 변화시킴으로써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소득층에서 가구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고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지에 따라, 여성의 소득활동이 남성의 소득활동 행위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연구들도 분석의 단위나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성명재·김종면, 2004; C . , 1993; D , 1980; D , 2004),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들이 있다(B , 1999; C & , 1999; & , 1997; , 1995). D (2004)는 1968-1999년의 C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조 변화,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감소요인임을 밝혔으며, 성명재·김종면(2004) 또한 1982~2003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맞벌이 가구의 비중을 가상적으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온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반면, (1997)의 연구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주로 고소득 계층 여성의 임금상승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1995)는 남성과 여성배우자의 임금의 상관관계 증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동시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또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욱, 2002; 성명재, 2002). 가구주의 성별

을 영향 요인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크며(김진욱, 2002), 여성 가구주의 증가가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성명재, 200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적 가족규범의 해체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여성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노후의 소득불평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소득원의 변화 또한 가구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쳐 왔다(김용성, 2005; 남상섭, 2005;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유경준·김대일, 2002; 정진호, 2001; 함재봉, 2005). 많은 연구결과들이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가장 크며, 근로소득의 불평등 효과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유경준·김대일, 2002; 정진호·최강식, 2001; 함재봉, 2005). 구인회·임세희(2007)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해 1992-2002년 사이 가구소득 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남성 근로소득 분배 악화가 전체 소득불평등도 증가의 5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주 소득원의 근로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다만 소득원별로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근로소득 불평등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유경준·김대일, 2002). 남상섭(2005)은 1990년대 후반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근로소득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재산소득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소득은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함재봉, 2005; , 1991).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의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공사 이전소득과 직접세,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공사 이전소득 모두 비근로자 가구와 1인 가구에서 불평등도 감소효과가 컸다. 이처럼 근로소득 불평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확대 및 성장, 그리고 사적 연금시장의 발달로 인해 연금급여가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연금급여의 분배 형태에 따라 노후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활동 시의 근로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노후 자산소득의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애주기에 걸쳐 노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불평등의 장기적인 경향을 전망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사적보장체계의 발달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의 요소소득들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별, 세대별로 이들 요소소득의 비중과 기여도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해 볼 것이다. 그러므로 거시 경제적 요인이나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나 노조가입율의 변화 등의 요인들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1)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정의

현재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한국 전쟁이 종료되고 출산 붐이 시작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 도입 이전 시기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김용하·임성은, 2011).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를 합계출산율이 3.0이상인 시기로 정의를 하고 1955 1974년생까지 모두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를 정하는 연구도 존재한다(김태헌, 2010; 정의신, 2010; 김용하·임성은, 2011). 이들은 1955 1964년생을 전기 베이비 부머로, 1965 1974년생을 후기 베이비 부머로 세부 정의내리기도 하는데,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인구의 34%인 1,650만 명이며 20년간 장기간 지속된 거대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하·임성은, 2011).

2) 선행 연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국내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베이비붐의 첫 세대라 할 수 있는 1955년 출생자들이 2010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정경희 외, 2010).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래 <표 3-4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정경희 외, 2010).

베이비붐 세대 관련 국내연구는 크게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및 파급효과, 그들의 노후준비와 주거 및 부동산, 정신건강, 가치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수행이 되었다. 이 중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 불평등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국내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방하남 외(2010, 2011)의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어떤 근로생애를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은퇴과정은 어떠한지, 그들이 다른 세대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며, 베이비붐 세대 내에는 어떤 이질성이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방하남 외(2011)는 베이비붐 세대내의 근로생애의 궤적과 소득, 자산, 건강, 노후준비 등을 중심으로 세대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귀속적 차이에 따른 세대내 차이와 불평등을 학력과 커리어의 형성, 노동시장의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귀속적 차이(성, 연령)와 성취적 지위(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업경력을 쌓아온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준비에 있어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형태와 고용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남을 밝혀 이들의 노후빈곤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에서도 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심각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지영(2011)은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 부머 가계의 공적·사적 연금가입을 토대로 은퇴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연금소득액을 추정하여, 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최저생계비 대체율, 은퇴소비대체율, 소득대체율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가계가 25%에 달하며, 이들은 연금보유가계에 비해 소득, 소비지출, 순자산에서 모두 열악한 재정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여성가구주 가계이거나 향후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은퇴가구주 가계, 영세자영업자 가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향후 노후기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은영(2011)은 베이비 부머의 은퇴준비현황과 은퇴준비유형 결정요인을 2009년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약 80%의 베이비 부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은퇴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약 45%이고 개인연금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약 20%정도였는데, 이 중 약 절반이 현재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미래 노후의 생활여건 또한 상당히 열악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국외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상당한 양의 연구가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재정상태, 그들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부모세대 및 이전세대와의 비교 등으로 진행되어 국내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E , & , 1993; & , 1995; D - , 2001; & , 2006; 이지영, 2011 재인용).

한편 (1993)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장기간에 걸쳐있어 이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분석할 경우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베이비붐 세대를 하위집단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이 중 (2006)의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소득에 초점을 두고 집단 내 연금소득의 상이함을 분석하였다. 는 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초기(1946~1950), 중기(1951~1955), 후기(1956~1960)로 구분하여 성별, 인종별, 교육수준별, 소득분위별 연금소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머 사이에서 성별, 인종별, 교육수준별 연금소득의 차이는 비슷하거나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소득분위별 연금소득액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정급여의 경우 초기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하위 20%의 연금소득이 상위 20%의 연금소득의 1/4인데 반해, 후기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1/7 수준밖에 되지 않아 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 (2007)도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은 오히려 이전세대보다 경제적

으로 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내의 소득 및 자산분포가 특정 집단에 치우쳐 있어 집단내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정도도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의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소득을 노후준비여부 및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노후준비로 대부분 공·사 연금제도와 저축 및 자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이 매우 다양하고 그 비중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을 고려하여 노후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소득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요소소득별 소득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요소소득의 장기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미래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43> 베이비붐 세대 관련 국내연구

	· (2010)		1955-1963	
	(2010)	, ,	1955-1963	,
	(2010)	- , ,	1955-1963	, ,
	(2011)	, ,	1955-1963	( ), ,
	· (2011)	, ,	1955-1974	
(, ,)	· (2003)	( )	1955-1964	2000
	(2007)		1955-1963	
	· (2010)		1955-1963	2009
	(2010)	( )	1955-1975	, ( )
	(2011)		1955-1963	(2009)
	(2011)		1955-1963	
	· (2009)		1955-1963	/ 374
	(2010)		1955-1963	309
	(2003)	( )	1955-196	
	· (2007)	( )	1955-1964	365
	· (2008)		1954-1968	292
	(2010)		1955-1963	『 』
	(2011)	( )	1955-1963	1
	· (2011)	, ,	1955-1963	

: (2011:16) .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3-4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과거 20년 동안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1991년 여성가구주가 약 7.59%에서 2010년에는 15.9%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시기별로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비중은 2.03%에 불과하였으나 해마다 점차로 증가하여 2010년 11.01%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1991에 13.99%였으나 2010년에는 7.52%로 감소한 반면, 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는 1991년에 22.25%에서 20년이 지난 2010년에는 무려 43.3%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주가 종사한 산업구성을 보면 1차 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의 비중은 다소 줄어든 반면에,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구성을 보면, 관리직과 서비스직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생산직은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가구규모를 보면 5인 이상 대가족의 비중은 급속하게 줄어든 반면 2인가구와 같이 소규모 핵가족의 형태는 급속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1991년에는 9.3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되어 2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5인 이상 대규모 가구의 경우는 1991년에는 25.79%이었으나 2010년에는 10.71%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여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 변화가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20년에 걸쳐 여성가구주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교육수준의 향상, 서비스산업의 확대 및 가구규모의 감소로 인한 핵가족화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3-44>

	1991 (n=2,951)		1996 (n=3,260)		2001 (n=3,295)		2006 (n=4,753)		2010 (n=4,416)	
	2,727	(92.41)	2,848	(87.36)	2,800	(84.98)	3,980	(83.74)	3,715	(84.1)
	224	(7.59)	412	(12.64)	495	(15.02)	773	(16.26)	701	(15.9)
30	1,809	(61.3)	1,693	(51.93)	1,521	(46.16)	1,752	(36.86)	1,437	(32.54)
40	767	(25.99)	886	(27.18)	1,022	(31.02)	1,703	(35.83)	1,528	(34.60)
50	315	(10.67)	512	(15.71)	573	(17.39)	941	(19.8)	965	(21.85)
60	60	(2.03)	169	(5.18)	179	(5.43)	357	(7.51)	486	(11.01)
	412	(13.99)	445	(13.65)	348	(10.56)	419	(8.82)	328	(7.52)
	559	(18.99)	502	(15.4)	408	(12.38)	516	(10.86)	404	(9.27)
	1,318	(44.77)	1,337	(41.01)	1,486	(45.10)	1,928	(40.56)	1,740	(39.91)
	655	(22.25)	976	(29.94)	1,053	(31.96)	1,890	(39.76)	1,888	(43.30)
1	5	(0.17)	34	(1.04)	27	(0.83)	35	(0.74)	44	(1.00)
	1,032	(34.97)	949	(29.11)	952	(29.21)	1,296	(27.27)	1,043	(23.62)
	483	(16.37)	592	(18.16)	404	(12.40)	631	(13.28)	593	(13.43)
	1,413	(47.88)	1,678	(51.47)	1,718	(52.72)	2,786	(58.62)	2,731	(61.84)
	18	(0.61)	7	(0.21)	158	(4.85)	5	(0.11)	5	(0.11)
	950	(32.19)	1,284	(39.39)	1,475	(44.76)	1,979	(41.64)	1,890	(42.80)
	397	(13.45)	263	(8.07)	102	(3.10)	529	(11.13)	473	(10.71)
	1,583	(53.64)	1,706	(52.33)	1,650	(50.08)	2,237	(47.07)	2,043	(46.26)
	21	(0.71)	7	(0.21)	68	(2.06)	8	(0.17)	10	(0.23)
2	276	(9.35)	470	(14.42)	629	(19.09)	989	(20.81)	1,013	(22.94)
3	691	(23.42)	877	(26.9)	871	(26.43)	1,388	(29.20)	1,357	(30.73)
4	1,223	(41.44)	1,367	(41.93)	1,352	(41.03)	1,843	(38.78)	1,573	(35.62)
5	761	(25.79)	546	(16.75)	443	(13.44)	533	(11.21)	473	(10.71)

여기서는 지난 20년간 가구소득의 불평등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요소소득의 불평등 경향 및 그 영향 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총 가구소득의 불평등 변화 추이

지난 20년 동안 가구소득의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5 와 <표 3-45>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먼저, 총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01년에 걸쳐 불평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근로소득의 경우는 전체 기간에 걸쳐 전반적인 경향성은 총소득과 유사하여 1991년부터 F 경제 위기 이후인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총소득의 불평등도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총소득의 불평등 정도에 비해 근로소득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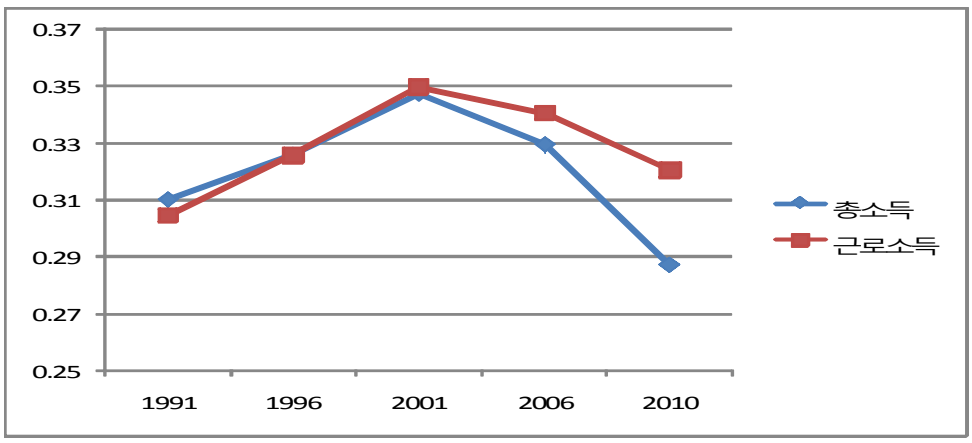

< 3-4> , 1991~2010

	1991	1996	2001	2006	2010
	0.3099	0.3260	0.3472	0.3293	0.28696
	0.3044	0.3257	0.3497	0.3406	0.32047

2) 연령별 총소득의 불평등 변화

그림 3-6 과 <표 3-46>는 조사연도에 연령별 총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노인인구의 소득불평등도가 생산인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56세 이상 중고령자 및 노인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55세 이하의 연령집단의 불평등 정도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도별로 연령집단 간 불평등도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991년에서 2001년까지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노령층의 불평등 정도는 1996과 2001년에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미치는 시기에 불평등 증가가 주로 중고령자 층에게 집중되었다가 이후 공적연금의 성숙 및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 다양한 사회복지 급여로 인해 노년층의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인들의 불평등 변화경향을 보면 61~65세 가구주의 경우는 1991년에서 1996년까지 불평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유지되다 2006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56~60세 가구주의 경우에는 2001년에 불평등도가 급속하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66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996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특정 시기에 연령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시기 효과)와 동년배들 간의 소득분배의 차이(동년배 효과), 그리고 개인의 연령이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변화(연령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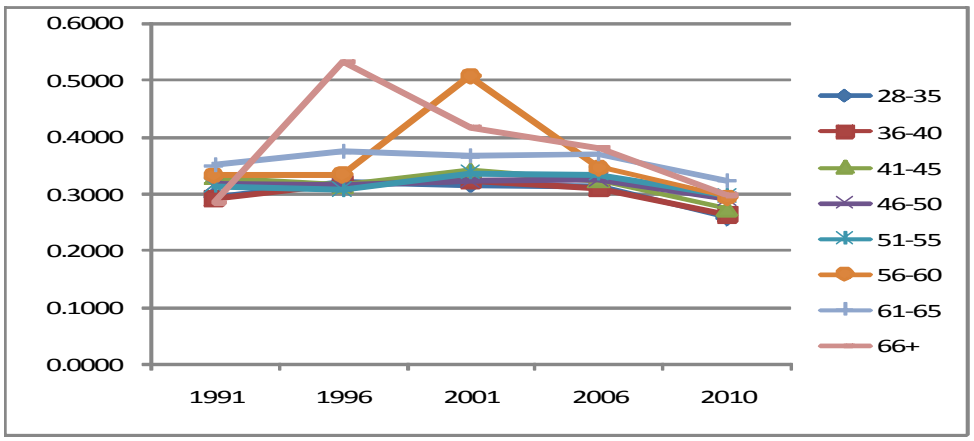

< 3-46> ,

	1991	1996	2001	2006	2010
28-35	0.2942	0.3207	0.3151	0.3117	0.2581
36-40	0.2931	0.3185	0.3237	0.3105	0.2638
41-45	0.3285	0.3134	0.3404	0.3236	0.2733
46-50	0.3165	0.3146	0.3221	0.3253	0.2914
51-55	0.3133	0.3076	0.3369	0.3346	0.2963
56-60	0.3328	0.3334	0.5057	0.3459	0.2941
61-65	0.3509	0.3744	0.3667	0.3699	0.3225
65+	0.2833	0.5315	0.4162	0.3792	0.2957

3) 출생 동류집단별 불평등 변화 추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변화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출생 코호트별, 연령별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 4-3 과 <표 3-4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비록 출생 코호트의 연령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일관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28세에서 45세까지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다가

이후 55세 이르기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다른 출생코호트와 비교하여 보면, 베이비붐 세대 이전인 한국전쟁 중에 태어난 1951-55년에 태어난 세대는 지속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쟁 전 세대인 1946~1950년에 태어난 세대도 전체적으로 전쟁 세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1941~1945년 사이에 출생한 출생코호트의 경우 56~60세, 즉 2001년에 즈음하여 소득불평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이는 1930년대에 태어난 두 세대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F 경제 위기의 영향이 이들 세대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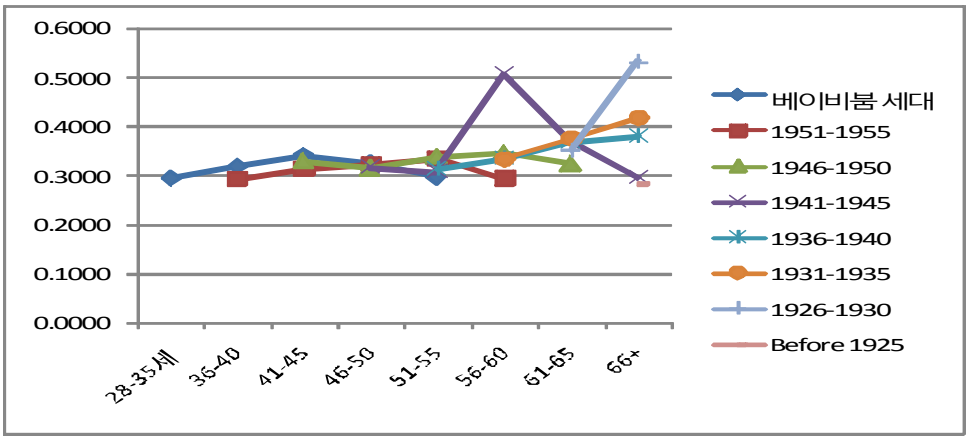

< 3-47>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1925
	28-35	0.2942							
	36-40	0.3185	0.2931						
	41-45	0.3404	0.3134	0.3285					
	46-50	0.3253	0.3221	0.3146	0.3165				
	51-55	0.2963	0.3346	0.3369	0.3076	0.3133			
	56-60		0.2941	0.3459	0.5057	0.3334	0.3328		
	61-65			0.3255	0.3699	0.3667	0.3744	0.3509	
	66+				0.2957	0.3792	0.4162	0.5315	0.2833

이러한 지난 2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변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개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와 개별 요소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요소소득의 기여도 분석

먼저, 개별 요소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를 개별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경향과 개별 요소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3-8 과 그림 3-9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요소소득별로 불평등의 변화경향을 보면, 총가구소득의 변화경향은 2006년까지 거의 근로소득의 변화경향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의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근로소득은 2010년에 이르러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총소득의 불평등 정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소 소득 중에서 사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과거 20년에 걸쳐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불평등 감소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2010년에 그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2006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에 이르러 불평등 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산소득의 경우에도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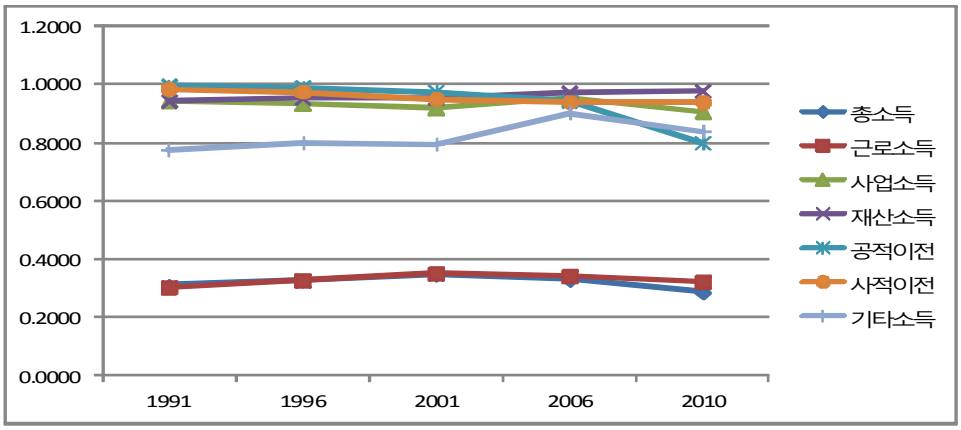

한편, 요소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의 비중은 1991년 이래 2001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2001년 이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소득은 200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비중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이전 소득의 비중은 2001년까지는 그 비중이 매우 작았으나 2010년에 이르러 총소득의 3.3%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정도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사업소득의 경우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반면, 사업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 가구 중에서 사업소득의 비중이 점차로 증대되고 사업소득이 전체 가구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로 증대됨을 알 수 있다.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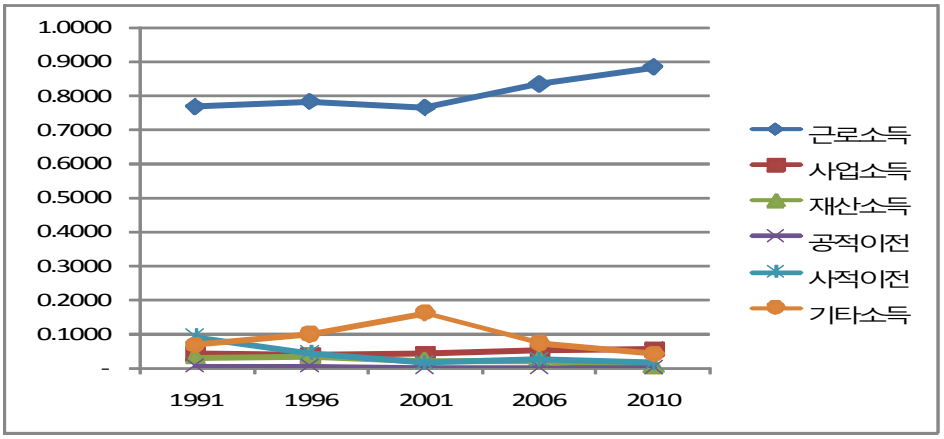

이러한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와 전체 소득에서 비중변화에 기초하여 전체 불평등에서 각 요소소득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3-4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년도 별로 개별 요소소득이 총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요소소득별 지니상관관계( ),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 그리고 요소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를 계산하여 개별 요소소득이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다.

각 요소 소득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는 1991년 이후 2001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6년 이후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총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2006년까지 그 영향 정도가 4%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5.1%로 약 1% 포인트 상승하여 최근에 들어 사업소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재산소득의 경우는 불평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며,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은 1991년 이래 그 영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2001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그 영향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3-48>

		( )	Rk	Gk	Sk	I/
		451,263	0.92	0.3044	0.85	0.7658
		15,088	0.47	0.9443	0.03	0.0404
		11,131	0.49	0.9415	0.02	0.0313
1991		1,348	0.37	0.9952	0.00	0.0030
		20,646	0.74	0.9844	0.04	0.0915
		30,198	0.48	0.7732	0.06	0.0679
	( )	529,674		0.3099		1.0000
		1,104,893	0.92	0.3257	0.85	0.7807
		40,908	0.41	0.9345	0.03	0.0373
		27,085	0.56	0.9516	0.02	0.0338
1996		5,766	0.35	0.9895	0.00	0.0047
		35,562	0.54	0.9742	0.03	0.0443
		86,712	0.61	0.7981	0.07	0.0993
	( )	1,300,926		0.3260		1.0000
		1,324,029	0.92	0.3497	0.82	0.7630
		60,323	0.41	0.9179	0.04	0.0402
		25,101	0.45	0.9526	0.02	0.0192
2001		8,643	0.06	0.9738	0.01	0.0008
		31,004	0.29	0.9491	0.02	0.0153
		165,506	0.69	0.7928	0.10	0.1614
	( )	1,614,607		0.3472		1.0000
		1,706,121	0.92	0.3406	0.87	0.8310
		64,062	0.53	0.9513	0.03	0.0499
		24,703	0.60	0.9727	0.01	0.0222
2006		28,627	0.01	0.9424	0.01	0.0004
		53,170	0.29	0.9397	0.03	0.0223
		85,195	0.62	0.9015	0.04	0.0742
	( )	1,961,878		0.3293		1.0000
		1,873,246	0.92	0.3205	0.860	0.8814
		93,648	0.40	0.9057	0.043	0.0541
		6,245	0.47	0.9775	0.003	0.0045
2010		72,437	0.01	0.7993	0.033	0.0005
		58,608	0.19	0.9384	0.027	0.0169
		73,331	0.43	0.8382	0.034	0.0426
	( )	2,177,515		0.2870		1.0000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라 개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표 3-49>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면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노인의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경제활동 인구의 근로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연도 내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시기별로는 연령집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1년까지 근로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크게 높아졌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6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근로소득불평등이 2010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6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시기별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2010년에 사업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불평등 감소가 주로 50대 중·고령자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 혹은 중·고령자의 불평등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이후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 소득은 전체적으로 노인의 불평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과거 보다는 최근 들어 불평등 정도가 더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10년에 이르러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40대와 5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이 30대 그리고 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 전체적인 불평등 정도는 최근에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근로계층에 비해 노인의 사적이전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 불평등 정도가 점차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근로계층에 비해 노인들의 불평등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9>

		1991	1996	2001	2006	2010
	28-35	0.2734	0.3128	0.3276	0.3136	0.2740
	36-40	0.3019	0.3242	0.3421	0.3247	0.2939
	41-45	0.3025	0.3230	0.3356	0.3370	0.3058
	46-50	0.3287	0.3236	0.3267	0.3295	0.3150
	51-55	0.3216	0.3099	0.3543	0.3383	0.3188
	56-60	0.3822	0.3381	0.4243	0.3493	0.3231
	61-65	0.4249	0.3870	0.3785	0.4181	0.3781
	66+	0.3822	0.4244	0.4465	0.4086	0.4091
	28-35	0.9459	0.9492	0.9390	0.9785	0.9490
	36-40	0.9392	0.9372	0.9168	0.9542	0.9123
	41-45	0.9489	0.9396	0.9229	0.9388	0.9102
	46-50	0.9360	0.8959	0.9095	0.9422	0.9027
	51-55	0.9426	0.9022	0.8821	0.9285	0.8808
	56-60	0.8995	0.9220	0.8841	0.9499	0.8534
	61-65	0.9428	0.9501	0.8916	0.9286	0.8677
	66+	-	0.9337	0.8531	0.9416	0.8517
	28-35	0.9628	0.9665	0.9763	0.9861	0.9709
	36-40	0.9348	0.9610	0.9783	0.9911	0.9822
	41-45	0.9315	0.9412	0.9668	0.9757	0.9782
	46-50	0.8982	0.9296	0.9252	0.9570	0.9665
	51-55	0.8816	0.9072	0.8803	0.9573	0.9754
	56-60	0.9037	0.9339	0.9127	0.9430	0.9722
	61-65	0.8985	0.9391	0.8772	0.9334	0.9660
	66+	0.9086	0.8330	0.8829	0.9215	0.9803
	28-35	0.9979	0.9951	0.9869	0.9281	0.7424
	36-40	0.9949	0.9957	0.9753	0.9244	0.7435
	41-45	0.9955	0.9837	0.9817	0.9591	0.8093
	46-50	0.9889	0.9919	0.9747	0.9661	0.8498
	51-55	0.9868	0.9847	0.9678	0.9668	0.8733
	56-60	-	0.9679	0.9559	0.9095	0.8583
	61-65	-	0.9531	0.8938	0.8277	0.6213
	66+	.	0.9150	0.6347	0.8340	0.5903
	28-35	0.9901	0.9827	0.9400	0.9338	0.9254
	36-40	0.9723	0.9762	0.9397	0.9391	0.9386
	41-45	0.9919	0.9700	0.9564	0.9499	0.9415
	46-50	0.9689	0.9726	0.9742	0.9529	0.9455
	51-55	0.9587	0.9455	0.9555	0.9583	0.9553
	56-60	0.9246	0.9324	0.9137	0.9349	0.9297
	61-65	0.8057	0.9083	0.8650	0.8198	0.9142
	66+	0.8170	0.8024	0.9098	0.8640	0.8277
	28-35	0.7525	0.7486	0.7238	0.8913	0.8259
	36-40	0.7788	0.7746	0.6739	0.8697	0.7984
	41-45	0.7537	0.7995	0.7862	0.9188	0.8030
	46-50	0.8373	0.7959	0.7791	0.9156	0.8270
	51-55	0.8239	0.8361	0.7564	0.9174	0.8843
	56-60	0.7610	0.8309	0.9231	0.8730	0.8555

	61-65	0.7254	0.8559	0.7787	0.9197	0.8351
	66+	0.6610	0.9457	0.7914	0.7731	0.7264

다음으로, 연령별로 요소소득이 전체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3-50>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그 영향이 1991년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노인일수록 근로소득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보면 2001년까지 근로소득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근로소득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시기별로는 2010년에 그 영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층에 있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기별로는 2010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의 경우도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 및 중·고령자 집단의 소득불평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기별로는 노인의 경우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과 기타소득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 3-50>

		1991	1996	2001	2006	2010
	28-35	0.707	0.788	0.846	0.807	0.868
	36-40	0.811	0.803	0.858	0.871	0.912
	41-45	0.724	0.847	0.731	0.855	0.918
	46-50	0.865	0.794	0.792	0.825	0.871
	51-55	0.821	0.745	0.828	0.817	0.857
	56-60	0.830	0.708	0.469	0.814	0.851
	61-65	0.976	0.723	0.493	0.711	0.704
	66+	0.959	0.353	0.496	0.620	0.677
	28-35	0.047	0.020	0.023	0.036	0.031
	36-40	0.042	0.059	0.059	0.038	0.048
	41-45	0.038	0.034	0.047	0.060	0.044
	46-50	0.016	0.051	0.051	0.065	0.067
	51-55	0.064	0.024	0.048	0.062	0.072
	56-60	0.011	0.036	0.010	0.032	0.033
	61-65	0.014	0.063	0.093	0.059	0.101
	66+	0.000	0.057		0.035	0.127
	28-35	0.024	0.009	0.013	0.005	0.002
	36-40	0.016	0.037	0.006	0.031	0.008

	41-45	0.040	0.030	0.022	0.010	0.001
	46-50	0.048	0.038	0.041	0.025	0.005
	51-55	0.029	0.045	0.027	0.023	0.005
	56-60	0.083	0.105	0.015	0.061	0.013
	61-65	0.012	0.083	0.046	0.048	0.006
	66+	0.052	0.038	0.008	0.041	-0.003
	28-35	0.001	0.003	0.001	0.009	-0.002
	36-40	0.000	0.001	0.003	0.009	-0.011
	41-45	0.000	0.012	0.001	0.008	-0.006
	46-50	0.012	0.000	0.002	0.000	0.006
	51-55	-0.001	0.001	0.000	0.000	-0.002
	56-60	0.008	0.010	0.003	0.024	0.035
	61-65	0.000	0.023	0.035	0.077	0.077
	66+	0.000	0.017	0.010	0.123	0.194
	28-35	0.130	0.098	0.011	0.035	0.015
	36-40	0.058	0.030	0.005	0.023	0.012
	41-45	0.154	0.012	0.042	0.013	0.025
	46-50	0.005	0.019	0.011	0.023	0.036
	51-55	0.020	0.014	0.008	0.020	0.016
	56-60	0.038	0.001	0.008	0.018	0.001
	61-65	0.012	0.005	0.055	0.010	0.010
	66+	0.100	-0.003	0.083	0.152	-0.012
	28-35	0.091	0.082	0.107	0.126	0.086
	36-40	0.073	0.071	0.075	0.047	0.032
	41-45	0.044	0.065	0.157	0.070	0.019
	46-50	0.054	0.099	0.107	0.062	0.015
	51-55	0.067	0.171	0.089	0.078	0.052
	56-60	0.030	0.140	0.494	0.051	0.068
	61-65	0.034	0.103	0.279	0.095	0.102
	66+	0.007	0.537	0.320	0.030	0.017

앞의 연령별 지니 분해는 연령의 효과( )와 조사 시기의 효과( )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생 코호트별로 요소소득의 지니 분해를 하여 보았다.

① 근로소득

출생 코호트별[3]로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코호트 내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출생 코호트별로 비교해 보면 대체로 1991년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높았으며, 2010년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세대별로 보면, 2001년에 F 외환 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이었던 1941-45년에 출생한 코호트들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하여 1946년 이후 출생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1945년 이전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와 달리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46세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46년 이전에 출생한 세대의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근로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45세 이전까지 근로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46세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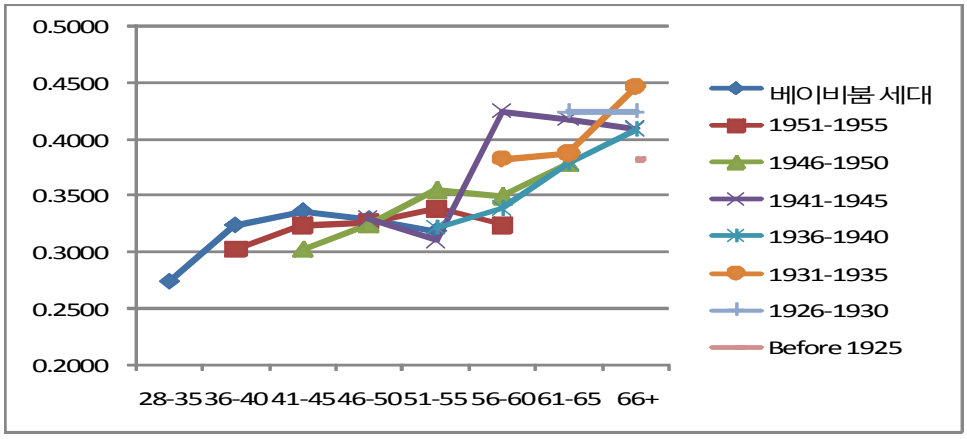

3) 본 연구에서는 1991년에 28세-35세 해당하는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이다. 그러나 1991년을 제외한 다른 년도에서는 5년 주기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일부만이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즉, 1996년의 경우에 36세-40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1955년에서 1959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만을 포함하게 되어 이후 분석에서는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 지칭하였다.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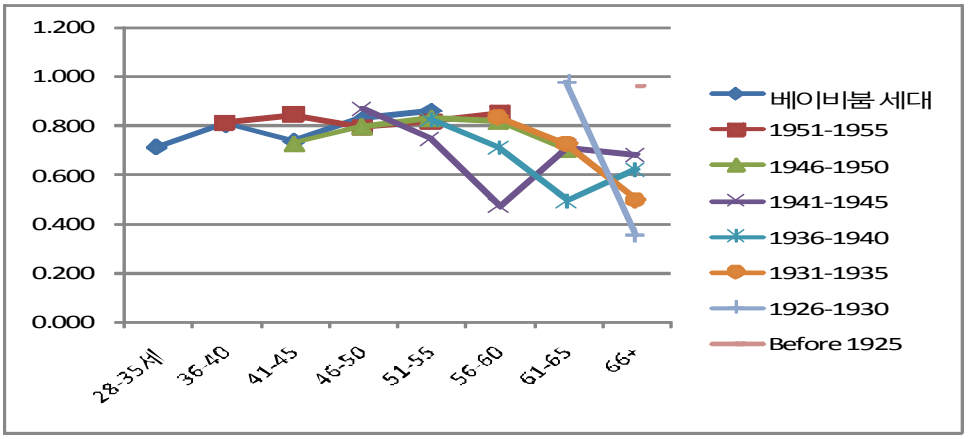

반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코호트에 걸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41~45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61~65세 사이에 근로소득의 비중이 잠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6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세대의 경우 퇴직 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찾아서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 코호트별 분석에서 또 다른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코호트에 비해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기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99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에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중 출생 코호트나 그 이전 코호트에 비해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이 낮으며, 다른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에 오히려 영향이 증대되고 있었다.

② 사업소득

그림 3-12 는 코호트별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코호트는 거의 유사한 변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업소득은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기 보

다는 오히려 시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2001년에 사업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모든 코호트에 걸쳐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2006년에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급속하게 불평등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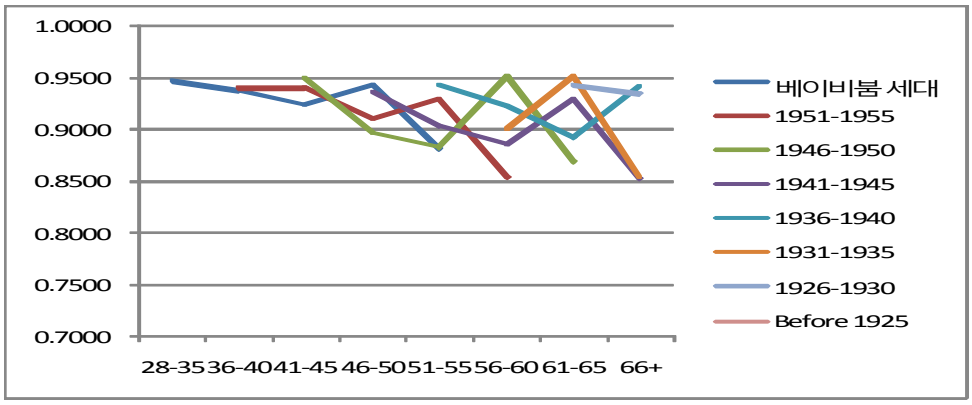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기 보다는 시기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세대에 걸쳐 사업소득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이르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사업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에 사업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출생코호트로는 1936년에서 195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특히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사업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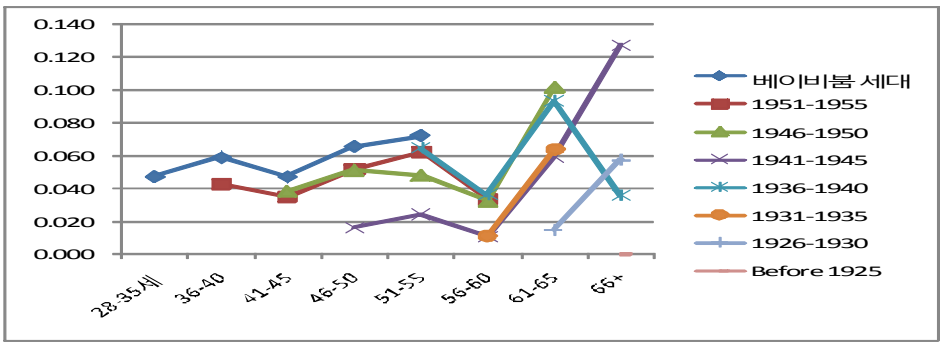

③ 재산소득

재산소득의 경우 코호트별 불평등 경향을 살펴보면 변화의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하여 보면, 일찍이 출생한 코호트에 비해 늦게 출생한 코호트의 재산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시기에 걸쳐 베이비 붐 세대의 재산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1951~60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 그리고 그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 순으로 불평등이 점차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시기의 영향을 받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재산 보유자의 비중이 점차로 증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1931년 이전 세대의 경우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2010년에 감소한 반면에, 그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45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들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이 2006년 잠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다.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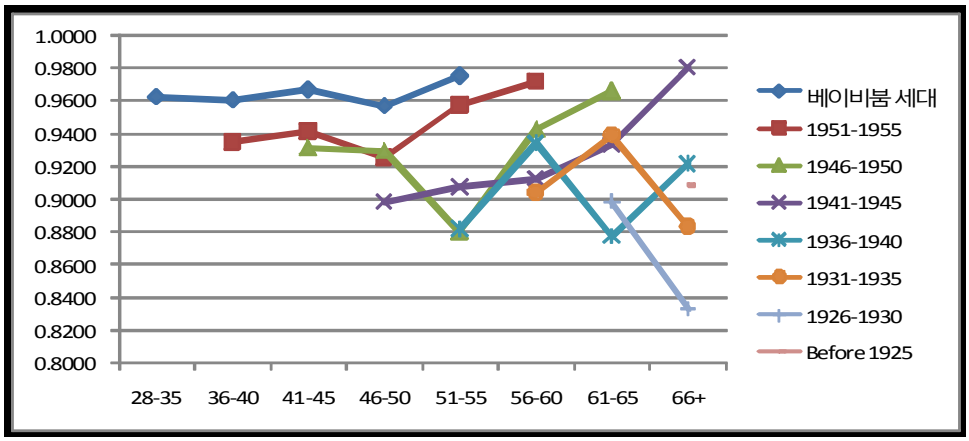

다음으로, 재산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그림 3-15 에 제시된 것처럼 1991년에 비해 1996년에 재산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를 코호트별로 비교해보면, 재산소득이 미치는 효과가 과거 세대에 비해 최근 세대일수록 그 영향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1~56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정도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전쟁 중 출생한 코호트, 1946~1950년에 출생한 코호트, 그리고 그 이전 세대로 점차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56~60세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나, 오직 1941~1945년에 출생한 코호트의 재산소득의 영향만이 급속하게 낮아지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이 세대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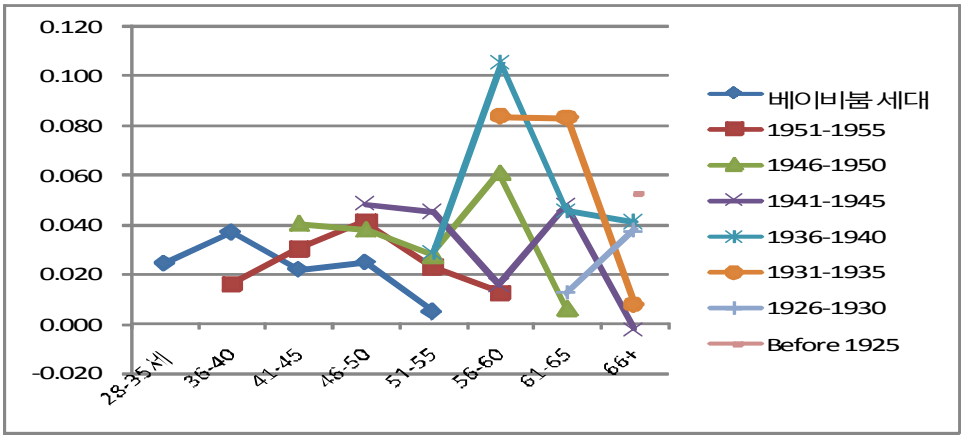

④ 공적이전 소득

그림 3-16 은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출생 코호트별로 살펴본 것을, 모든 코호트에 걸쳐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감소 경향은 2010년에 들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근로활동 기간에는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크게 변화가 없다가 56세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의 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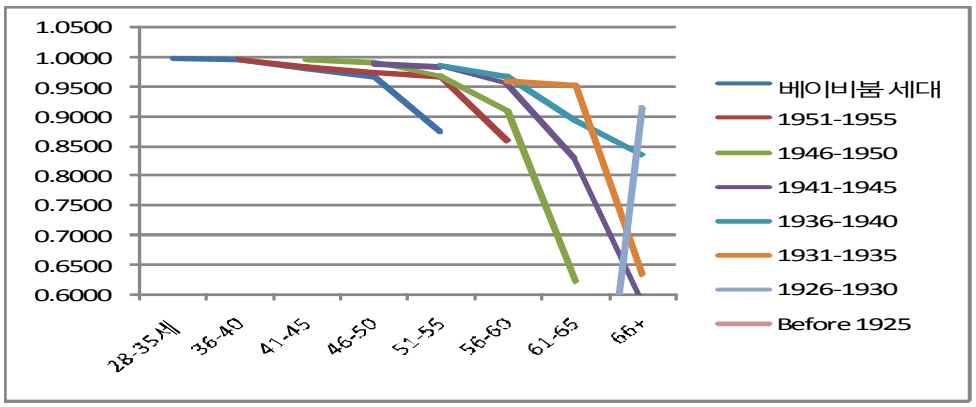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러한 공적 이전의 소득분배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61세 이후에 모든 코호트에 걸쳐 그 비중의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하면 1926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에 비해 1936~1940년에 출생한 코호트가, 그리고 1941~1950년에 출생한 코호트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차로 증대됨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 아직 본격적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점차로 그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36년에서 1945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들의 공적이전 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비롯한 연금급여 수급자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1935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대상이 적은 반면에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특례노령연금의 급여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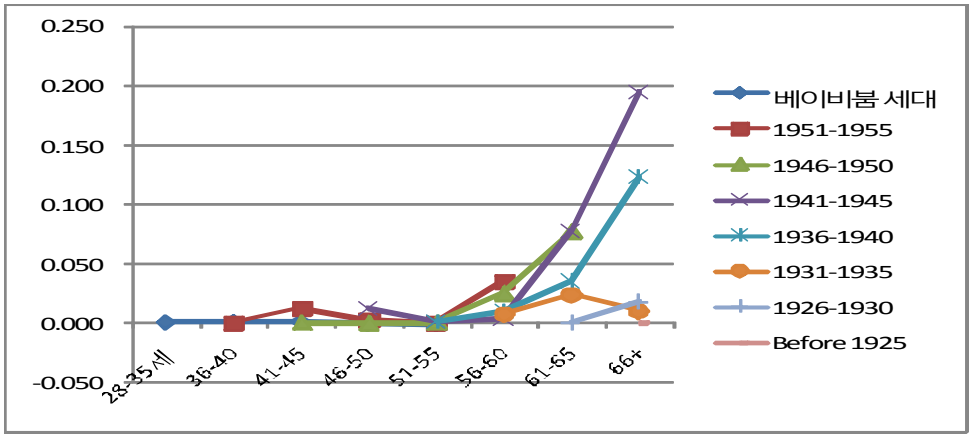

⑤ 사적이전

출생 코호트별로 사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출생 코호트에 걸쳐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

히 이러한 불평등의 변화는 근로시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노령기에 접어들어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이전 소득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출생코호트별로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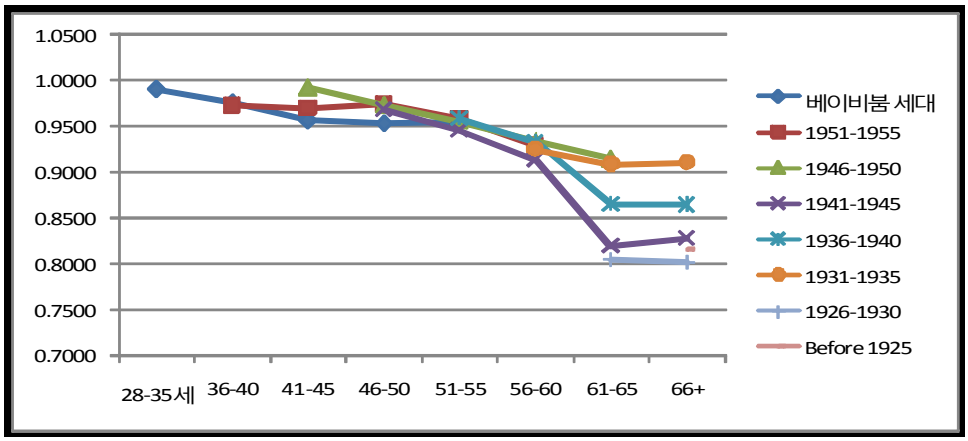

한편, 사적이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면, 그림 3-19 에서 보는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1945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사적이전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으나, 1936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이 미치는 영향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41~1945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사적이전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시기별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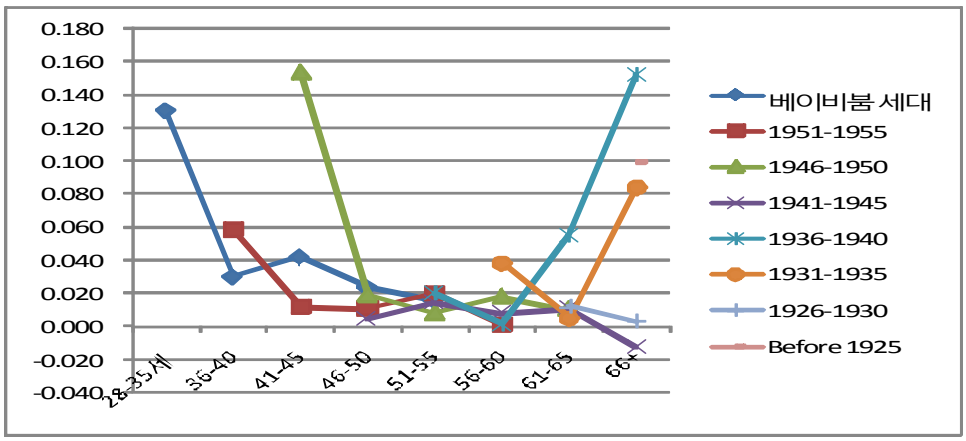

⑥ 기타 소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타 소득의 전체 불평등은 시기별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2006년 시기에 기타소득의 불평등이 전 세대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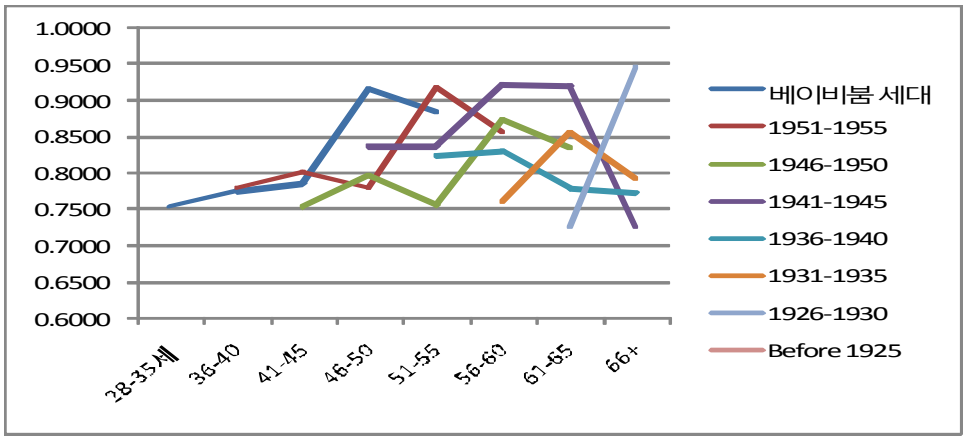

한편, 기타 소득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영향의 정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1940년대에 출생한 두 코호트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들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타 소득의 주요 항목에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1년까지는 퇴직금과 반환일시금의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불평등 정도가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하였으나, 이후 퇴직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의 대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전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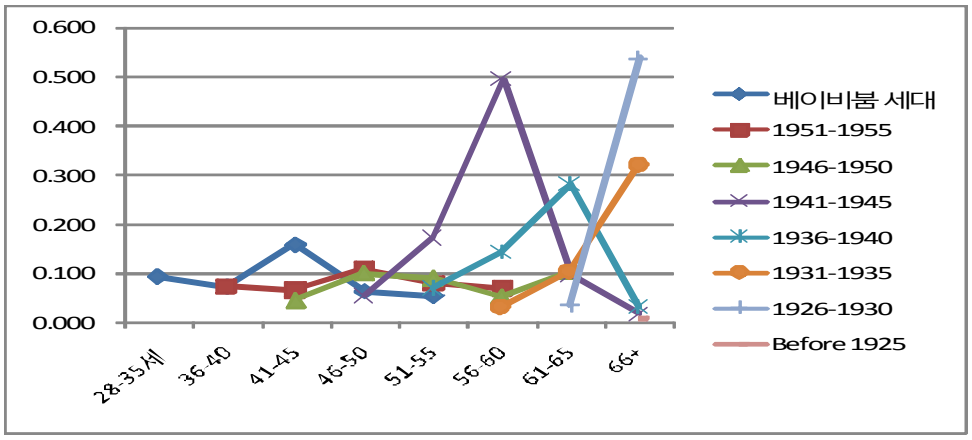

< 3-51>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28-35	0.2734							
	36-40	0.3242	0.3019						
	41-45	0.3356	0.3230	0.3025					
	46-50	0.3295	0.3267	0.3236	0.3287				
	51-55	0.3188	0.3383	0.3543	0.3099	0.3216			
	56-60		0.3231	0.3493	0.4243	0.3381	0.3822		
	61-65			0.3781	0.4181	0.3785	0.3870	0.4249	
	66+				0.4091	0.4086	0.4465	0.4244	0.3822

	28-35	0.9459							
	36-40	0.9372	0.9392						
	41-45	0.9229	0.9396	0.9489					
	46-50	0.9422	0.9095	0.8959	0.9360				
	51-55	0.8808	0.9285	0.8821	0.9022	0.9426			
	56-60		0.8534	0.9499	0.8841	0.9220	0.8995		
	61-65			0.8677	0.9286	0.8916	0.9501	0.9428	
	66+				0.8517	0.9416	0.8531	0.9337	.
	28-35	0.9628							
	36-40	0.9610	0.9348						
	41-45	0.9668	0.9412	0.9315					
	46-50	0.9570	0.9252	0.9296	0.8982				
	51-55	0.9754	0.9573	0.8803	0.9072	0.8816			
	56-60		0.9722	0.9430	0.9127	0.9339	0.9037		
	61-65			0.9660	0.9334	0.8772	0.9391	0.8985	
	66+				0.9803	0.9215	0.8829	0.8330	0.9086
	28-35	0.9979							
	36-40	0.9957	0.9949						
	41-45	0.9817	0.9837	0.9955					
	46-50	0.9661	0.9747	0.9919	0.9889				
	51-55	0.8733	0.9668	0.9678	0.9847	0.9868			
	56-60		0.8583	0.9095	0.9559	0.9679	0.9604		
	61-65			0.6213	0.8277	0.8938	0.9531	.	
	66+				0.5903	0.8340	0.6347	0.9150	.
	28-35	0.9901							
	36-40	0.9762	0.9723						
	41-45	0.9564	0.9700	0.9919					
	46-50	0.9529	0.9742	0.9726	0.9689				
	51-55	0.9553	0.9583	0.9555	0.9455	0.9587			
	56-60		0.9297	0.9349	0.9137	0.9324	0.9246		
	61-65			0.9142	0.8198	0.8650	0.9083	0.8057	
	66+				0.8277	0.8640	0.9098	0.8024	0.8170
	28-35	0.7525							
	36-40	0.7746	0.7788						
	41-45	0.7862	0.7995	0.7537					
	46-50	0.9156	0.7791	0.7959	0.8373				
	51-55	0.8843	0.9174	0.7564	0.8361	0.8239			
	56-60		0.8555	0.8730	0.9231	0.8309	0.7610		
	61-65			0.8351	0.9197	0.7787	0.8559	0.7254	
	66+				0.7264	0.7731	0.7914	0.9457	0.6610

< 3-52>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28-35	0.707							
	36-40	0.803	0.811						
	41-45	0.731	0.847	0.724					
	46-50	0.825	0.792	0.794	0.865				
	51-55	0.857	0.817	0.828	0.745	0.821			
	56-60		0.851	0.814	0.469	0.708	0.830		
	61-65			0.704	0.711	0.493	0.723	0.976	
	66+				0.677	0.620	0.496	0.353	0.959
	28-35	0.047							
	36-40	0.059	0.042						
	41-45	0.047	0.034	0.038					
	46-50	0.065	0.051	0.051	0.016				
	51-55	0.072	0.062	0.048	0.024	0.064			
	56-60		0.033	0.032	0.010	0.036	0.011		
	61-65			0.101	0.059	0.093	0.063	0.014	
	66+				0.127	0.035		0.057	0.000
	28-35	0.024							
	36-40	0.037	0.016						
	41-45	0.022	0.030	0.040					
	46-50	0.025	0.041	0.038	0.048				
	51-55	0.005	0.023	0.027	0.045	0.029			
	56-60		0.013	0.061	0.015	0.105	0.083		
	61-65			0.006	0.048	0.046	0.083	0.012	
	66+				-0.003	0.041	0.008	0.038	0.052
	28-35	0.001							
	36-40	0.001	0.000						
	41-45	0.001	0.012	0.000					
	46-50	0.000	0.002	0.000	0.012				
	51-55	-0.002	0.000	0.000	0.001	0.001			
	56-60		0.035	0.024	0.003	0.010	0.008		
	61-65			0.077	0.077	0.035	0.023	0.000	
	66+				0.194	0.123	0.010	0.017	0.000
	28-35	0.130							
	36-40	0.030	0.058						
	41-45	0.042	0.012	0.154					
	46-50	0.023	0.011	0.019	0.005				
	51-55	0.016	0.020	0.008	0.014	0.020			
	56-60		0.001	0.018	0.008	0.001	0.038		

	61-65			0.010	0.010	0.055	0.005	0.012	
	66+				-0.012	0.152	0.083	0.003	0.100
	28-35	0.091							
	36-40	0.071	0.073						
	41-45	0.157	0.065	0.044					
	46-50	0.062	0.107	0.099	0.054				
	51-55	0.052	0.078	0.089	0.171	0.067			
	56-60		0.068	0.051	0.494	0.140	0.030		
	61-65			0.102	0.095	0.279	0.103	0.034	
	66+				0.017	0.030	0.320	0.537	0.007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소득의 불평등 정도 및 그 기여하는 정도가 지속될 경우에 향후 노후 소득불평등의 경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장기적인 전망을 시도해 보았다. 노후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은 연도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요소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20년 동안 변화된 평균 증감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개별 요소소득의 불평등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평균 증감에 기초하여 추정된 향후 20년간의 각 요소소득 및 총 소득의 불평등 변화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 소득의 장기전망을 살펴보면, 총소득의 불평등도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다소 소득분배구조가 조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을 개별 요소소득의 분배와 영향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면, 요소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공적이전과 사적이전득의 불평등 정도는 점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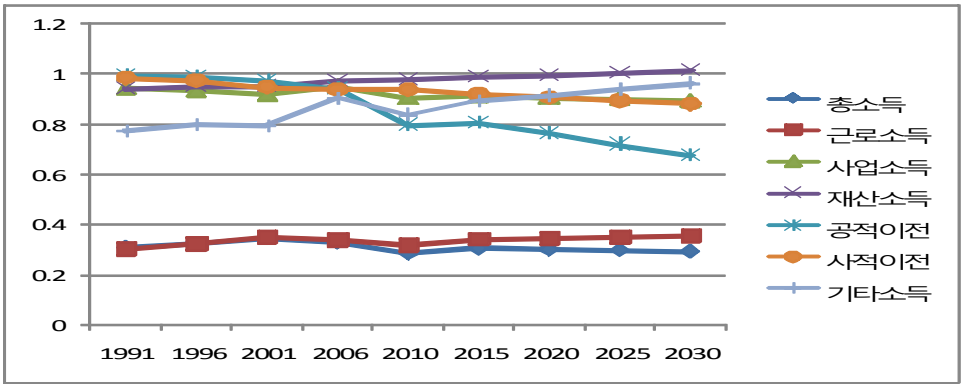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요소소득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영향력 정도는 거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소득의 비중은 점차로 증대되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은 점차로 줄어들 것이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공적이전 소득의 경우에 앞서 본 것처럼 불평등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공적이전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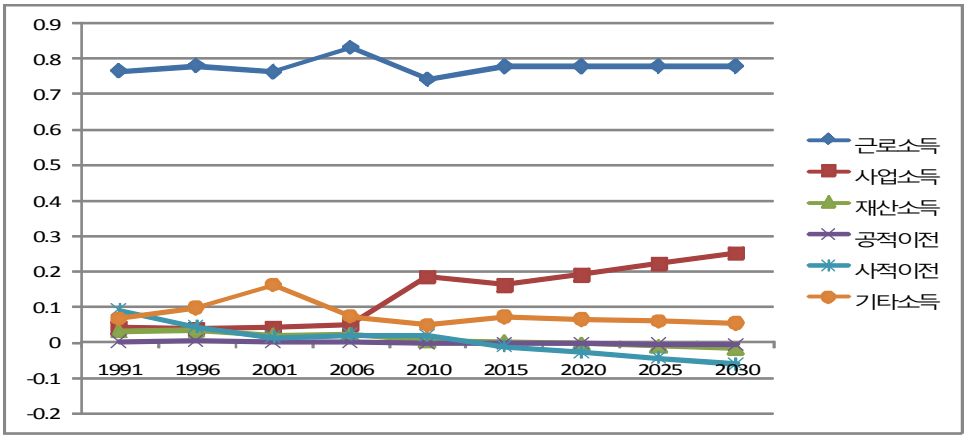

< 3-53>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0.3099	0.3260	0.3472	0.3293	0.2870	0.3071	0.3028	0.2986	0.2943
	0.3044	0.3257	0.3497	0.3406	0.3205	0.3423	0.3470	0.3517	0.3564
	0.9443	0.9345	0.9179	0.9513	0.9051	0.9121	0.9060	0.8998	0.8937
	0.9415	0.9516	0.9526	0.9727	0.9775	0.9871	0.9964	1.0057	1.0150
	0.9952	0.9895	0.9738	0.9424	0.7993	0.8084	0.7645	0.7206	0.6767
	0.9844	0.9742	0.9491	0.9397	0.9384	0.9192	0.9065	0.8939	0.8812
	0.7732	0.7981	0.7928	0.9015	0.8382	0.8907	0.9141	0.9374	0.9608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0.8520	0.8493	0.8200	0.8696	0.7424	0.7776	0.7780	0.7783	0.7787
	0.0285	0.0314	0.0374	0.0327	0.1848	0.1610	0.1911	0.2213	0.2514
	0.0210	0.0208	0.0155	0.0126	0.0036	0.0019	-0.0048	-0.0116	-0.0183
	0.0025	0.0044	0.0054	0.0146	-0.0009	-0.0020	-0.0032	-0.0044	-0.0056
	0.0390	0.0273	0.0192	0.0271	0.0197	-0.0111	-0.0277	-0.0443	-0.0608
	0.0570	0.0667	0.1025	0.0434	0.0501	0.0723	0.0662	0.0602	0.0541

소득 불평등의 장기적인 경향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과 중고령층의 총소득불평등 정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6세 이상 중고령층의 총소득 불평등이 다른 어떤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4 연령별 총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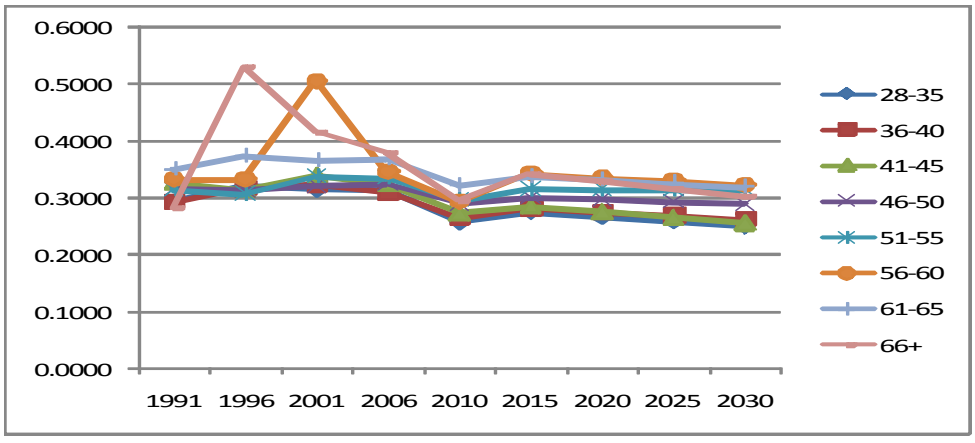

< 3-54>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28-35	0.2942	0.3207	0.3151	0.3117	0.2581	0.2756	0.2675	0.2593	0.2512
36-40	0.2931	0.3185	0.3237	0.3105	0.2638	0.2820	0.2753	0.2686	0.2620
41-45	0.3285	0.3134	0.3404	0.3236	0.2733	0.2858	0.2758	0.2657	0.2557
46-50	0.3165	0.3146	0.3221	0.3253	0.2914	0.3021	0.2982	0.2942	0.2903
51-55	0.3133	0.3076	0.3369	0.3346	0.2963	0.3156	0.3149	0.3142	0.3135
56-60	0.3328	0.3334	0.5057	0.3459	0.2941	0.3429	0.3364	0.3300	0.3235
61-65	0.3509	0.3744	0.3667	0.3699	0.3225	0.3384	0.3323	0.3262	0.3200
66+	0.2833	0.5315	0.4162	0.3792	0.2957	0.3430	0.3302	0.3175	0.3048

이러한 전체적인 불평등 변화경향에 개별 요소소득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자.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거의 현행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령층에서는 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근로연령층에 비해 66세 이상 노인들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근로 연령층인 40대, 50대 연령집단의 경우는 비록 노인에 비해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낮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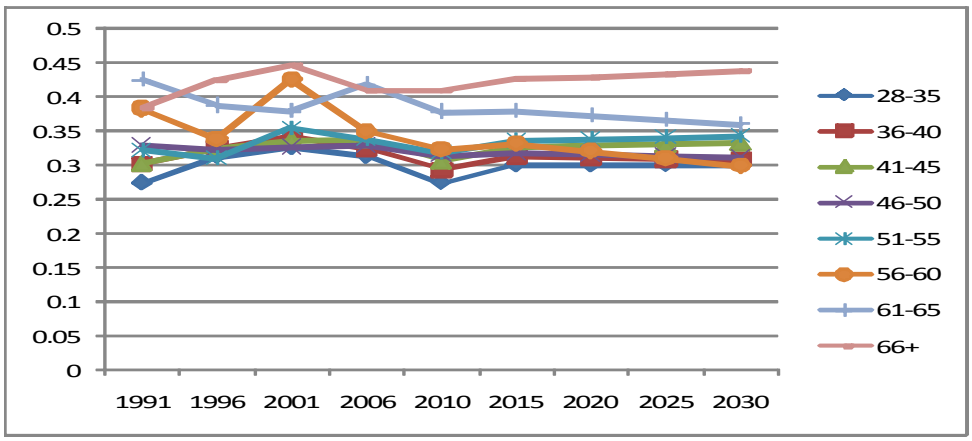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의 사업소득 불평등이 노인층의 불평등 정도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 및 중·고령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동일한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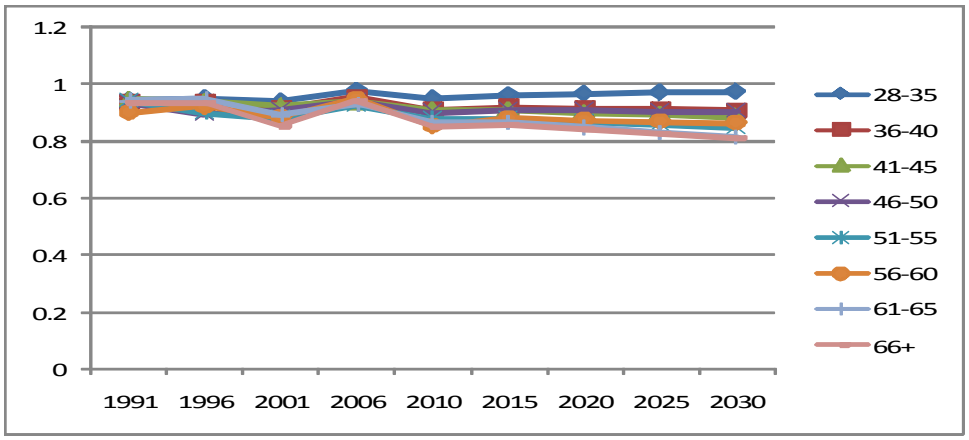

③ 재산소득

재산소득의 불평등 경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노인층에 비해 근로연령층의 재산소득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연령대별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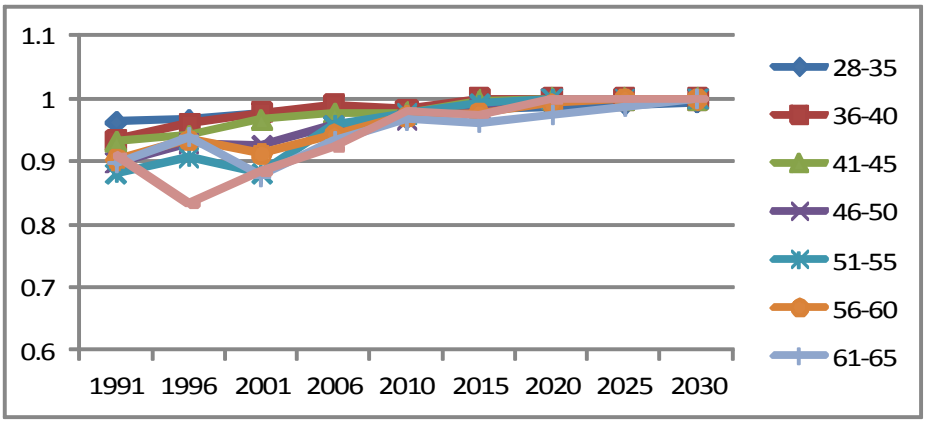

④ 공적이전

공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공적이전 제도의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연령집단별로 보면, 특히 노인 및 중·고령자들의 경우에 가장 크게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노인 및 중·고령자에 비해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적이전의 불평등 경향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영향력이 매우 급속하게 빨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적이전의 영향력 증대는 노인 및 중고령층에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조금씩 그 영향력이 증가하기는 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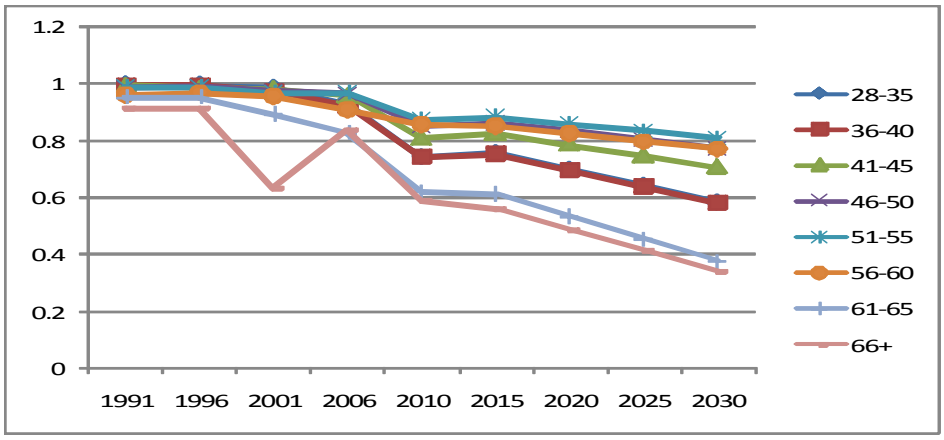

⑤ 사적이전

사적이전의 불평등 변화 경향은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에 비해 근로연령층에서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으로 거의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젊은 근로연령층에게 사적이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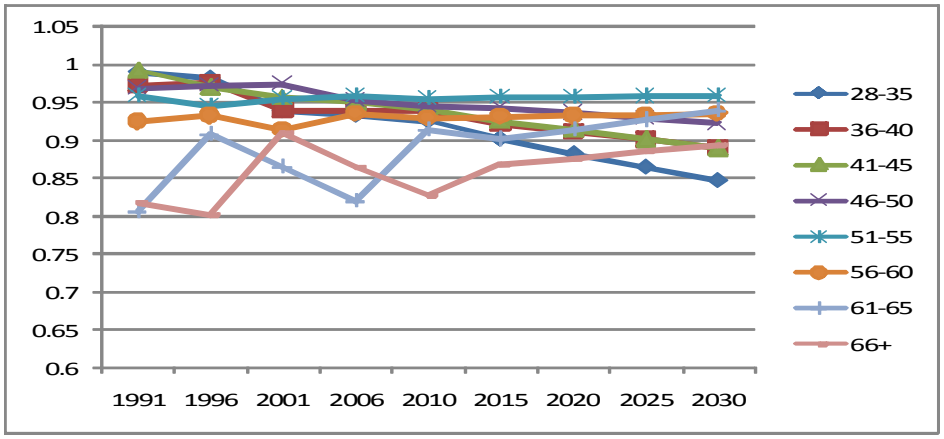

⑥ 기타 소득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의 장기적인 불평등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세대 간에 어떤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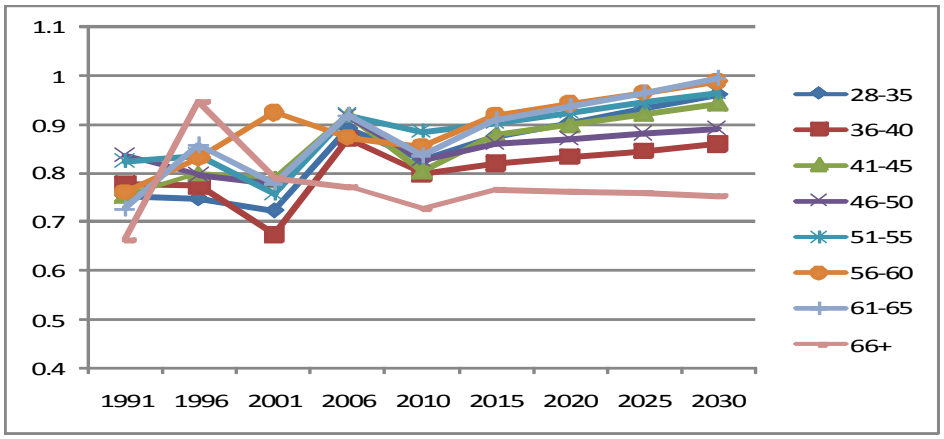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가구소득의 불평등 경향은 1991년 이래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2010년까지 거의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 경향성은 유사하나 총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 간에는 점차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즉, 총소득은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총소득의 불평등 감소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평등 변화의 경향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인집단의 불평등이 근로연령층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런 특정 시기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출생코호트별로 소득불평등 추이를 나누어 살펴보아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일 출생코호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불평등의 변화에 개별 요소소득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의 불평등 경향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형태를 지배함을 알 수 있다. 즉, 총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2001년 이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총소득의 불평등 완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다른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공적이전 소득과 사업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감소하였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 소득의 경우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나, 이후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집단별로 개별요소소득의 영향을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경우는 시기에 관계없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66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불평등의 정도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시기별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 혹은 중·고령자의 불평등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이후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의 경우 불평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과거 보다는 최근 들어 불평등 정도가 더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과 중·고령자 집단에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40세-55세 사이 근로연령층의 사적이전 소득 불평등 정도가 40세 이하보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았다.

출생 코호트별로 개별 요소소득의 영향을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령증가로 인한 불평등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의 비중 변화도 코호트 간의 차이보다는 시기별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불평등의 변화와 비중의 변화가 코호트 간에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사업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2006년까지 거의 도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에 들어 급속하게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2001년까지 거의 유사한 수준에 머물다가 2010년에 이르러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재산소득의 경우 불평등 변화와 비중의 변화가 코호트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1931년 이전 세대의 경우 2010년에 감소한 반면에, 그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2010년에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45년 이후 출생 코호트의 경우는 재산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경향을 보면 출생코호트 간의 차이보다는 시기와 연령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2010년에 이르러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 급여의 확대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불평등의 감소폭은 고령자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중의 변화를 보면 1941-1945년 출생자의 공적이전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936-1940년 출생자의 공적이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세대들이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193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 보다 공적연금의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 코호트간 불평등 변화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비중의 변화는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1945년 이후 출생 코호트의 경우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으나, 1936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는 사적이전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불평등의 정도는 코호트 간의 차이보다 시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의 변화는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퇴직금 제도의 영향을 받았던 1940년대 출생자에게서 2001년에 그 영향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영향의 정도가 급속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소득불평등의 장기 전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총소득의 불평등은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연령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불평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노인과 중·고령자의 소득불평등이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요소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노인 및 중·고령자 집단의 경우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노인층의 불평등 정도는 감소할 것이나 근로연령층의 경우는 불평등 정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근로연령층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적이전 소득의 경우는 불평등 정도가 급속히 감소할 것이며, 그 영향력의 정도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 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이전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기타 소

득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출생 코호트간의 뚜렷한 차별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근로소득의 불평등 증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2001년 이후 총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 불평등의 완화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령기 근로소득의 불평등 완화 정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근로소득보전세재(EITC) 제도의 급여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의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보전세재는 근로소득에 연계하여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연령층의 급여수준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 중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보전세재의 적용 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의 확대는 근로연령층뿐만 아니라 노령계층의 근로소득 불평등 완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령 인구의 근로활동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령층의 근로활동을 현재의 사적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공적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을 갖는 노인의 비중을 확대시킴으로써 노령층 내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령기에 들어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 퇴직 제도의 도입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공적이전 소득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도 주로 노령층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과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제도적 성숙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적이전 소득이 주로 노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연령층의

공적이전 소득 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실업급여나 장해 수당 등의 제도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령층 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을 위한 공적이전 소득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패널 자료가 아니라 다년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별 소득변화를 주어진 시점에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소득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출생코호트별 요소소득의 추정을 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즉, 미래의 소득불평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출생코호트별로 각 요소소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층이 될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추정을 하여야만 미래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요소소득의 변화를 출생코호트별로 추적하여 추정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도시지역 거주자가 아닌 1인 가구가 체계적으로 제외된 점이다. 20년간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총소득 및 각 요소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한계를 갖고 있다. 끝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나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 추정을 함에 있어 요소소득의 불평등도와 기여도에 기초한 단순한 평균변화 정도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다 정밀한 장기전망을 위해서는 각 요소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출생 코호트별로 개별 요소소득을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런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04

KIHASA

4

11회에 걸친『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개최를 통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모색함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본 장에서는 각 포럼에서 발표된 원고를 기반으로 하여 각 정책 영역별로 베이비 부머의 생활현황, 정책현황, 관련 외국 사례, 향후 정책과제의 구성으로 발표문을 제구성하여 정리하고 있다. 즉 본장의 목적은『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의 발표문과 토론문을 근간으로 하되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이나 토론문에 위의 양식에 적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관련된 기존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포럼발표문의 경우는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제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기반이 된 기존연구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표문과 토론문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 논지가 분명히 들어나도록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각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문은 본 보고서의 별책으로 발간되어 있다.

제1절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4) 본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 보고된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ECD 국가들의 동일 연령군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다(장지연 신현구, 2008). 55~64세 연령군의 경우 2007년 기준 ECD 평균 고용율이 53.4%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동 비율이 60.6%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창출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4-1] OECD : 1986, 199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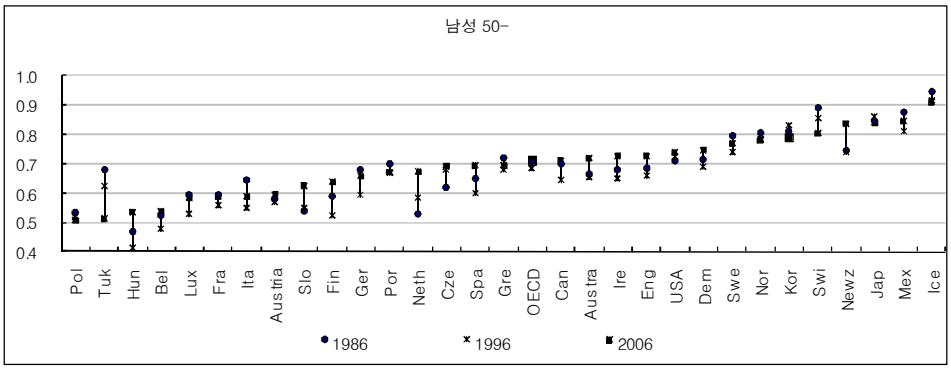

: · (2008). . .

[4-2] OECD : 1986, 199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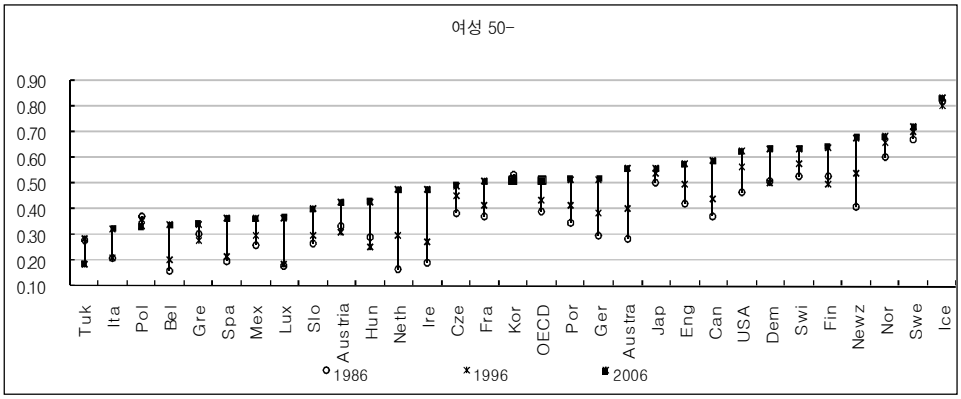

: · (2008). . .

둘째, 현세대 노인에 비교해볼 때 베이비 부머는 경제활동은 전 세대보다 일찍 시작하였지만 생애 주된 직장을 45세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낮아져 전세대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다.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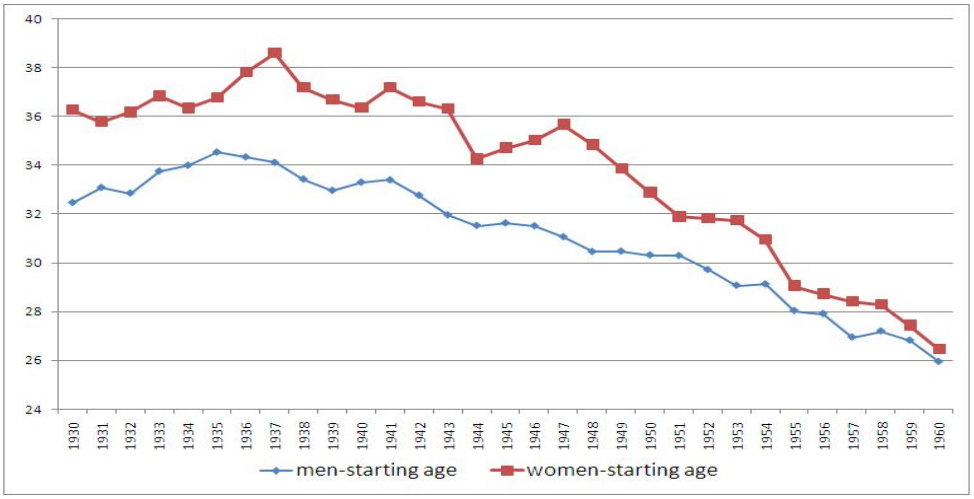

: 3 , .
: 1 .
: (2010). (-) . .

[4-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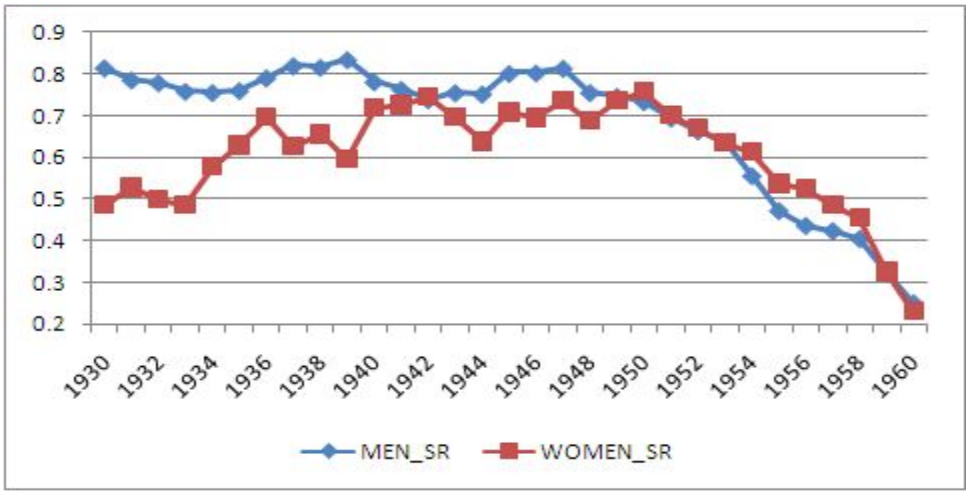

: 3 , .
: 1 .
: (2010). (-) . .

셋째 이들의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에 변화가 있어(2001~2010년) 10년전에 비하여 2010년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전문기술 행정관리자의 비중은 약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종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는 그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중이 줄어왔다는 것은 베이비 부머가 노동시장참여에 있어 갖고 있는 자기결정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는 자영업이나 농업 부문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임금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점차 중고령자의 고용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4-1>

(: %)

		2000			2010		
		36~45 (1955~1964)	46~55 (1945~1954)	56 (~1944)	36~45 (1965~1974)	46~55 (1955~1964)	56 (~1954)
		11.4	12.3	8.9	26.0	20.0	12.2
		14.9	10.8	4.5	17.8	11.5	4.1
		24.4	22.0	13.5	15.6	14.4	12.6
		4.7	10.2	37.9	2.0	5.0	22.8
	/ /	37.7	33.7	15.4	31.9	39.4	25.7
		6.8	11.0	19.8	6.7	9.6	22.6
		4.2	3.1	0.9	22.9	9.9	3.5
		5.4	2.4	0.5	18.2	7.0	2.2
		50.8	45.2	26.9	36.8	43.7	25.9
		6.3	14.6	43.4	1.3	5.3	24.8
	/ /	15.1	14.1	5.8	7.8	10.9	5.2
		18.2	20.7	22.5	12.9	23.2	38.4

: 2010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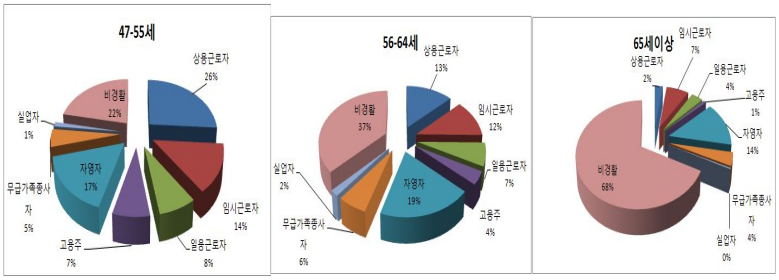

: , (2010.5), (2011)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적지 않은 수가 정년퇴직 또는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 과정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영업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권혜자, 2011). 은퇴 전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점포 자영업자나 농축림어업 종사자 등 자영업자 일수록 현재까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과거 불안정 고용 종사자(일용 및 무점포 자영업자)일수록 현재 무직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보험 사업장 창업현황을 보면, 이들이 창업하는 업종은 유통서비스업 29.5%, 개인서비스업 28.1%, 제조업 24.6%의 순서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 첫째, 그들이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참여욕구를 갖고 있다(정경희 외, 2010). 베이비 부머의 절대 다수인 77.8%가 현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며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63.9%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베이비 부머 가운데 70.9%는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베이비 부머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는 하지만 비경제적인 이유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58.5%는 소득을 위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건강을 위해 가 16.2%, 자기발전을 위해 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

에 일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단연코 높지만, 그 외에도 건강,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공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도 41.5%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이들을 위한 노년기 일자리 정책의 개발에 있어 단지 소득 보전이 목적이 아닌 보다 확장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베이비 부머의 다수는 평생해온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원하고 있지만 새로운 일을 원하는 경우도 일정 부분 있다. 70%는 노후 일자리로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또는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 습득한 직업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에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을 원하는 비율도 30%이므로, 이러한 상이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의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 4-2>

	10.6	67.2	8.9	11.5	1.9	100.0
	2.6	25.7	13.6	50.7	7.5	100.0

: (2010). .

< 4-3> ·

				.			
	6.0	2.3	2.0	5.7	83.4	0.5	100.0

: (2010). .

넷째,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높은 욕구에 비하여 향후 진로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현업중단 이후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83.4%로 매우 낮다.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조사(김기홍, 2008; 2010)의 경우도 중고령

재직자의 38.1%만이 진로전환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대부분 정보 수집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인력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으나, 최근 이루어진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202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총량적 인력부족은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자, 2010; 정호성 외, 2010). 권혜자(2010)는 연령계층별 인구의 변화추세를 보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총량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즉 향후 10년간 청장년인구의 감소추세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10년 뒤에도 45 54세 연령대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인구 중에서 정년퇴직이 가능한 인구규모가 주로 정규직에 한정될 것임을 고려하여 근속 2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시)로 정의하고 계산한 결과, 그 규모는 약 1,068천 명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인구의 약 14.7%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등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고려하면, 약 1370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4-4> (2010)

(: , %)

		( )		(2)
( )	7,261	1,887	1,757	1,068
(%)	100.0	26.0	24.1	14.7

: 2010 712 , 726 .
: , , 2010, , DB, 2010.12, (2011)

또한 정호성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4~15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정년퇴직을 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취업자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

문에 2009년 기준 취업하고 있는 베이비 부버 549.2만명 중 상용근로자는 189.1만명에 불과하다. 이중 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2~3년 이상 근로자는 140~150만 수준으로 상용근로자의 75~8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파급효과는 적지만 특정 분야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었다. 제조업이 바로 그 분야이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이나,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는 달리 베이비 붐 세대 상용직 근로자의 약 1/4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정년퇴직에 따른 파급효과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을 중심으로 한 숙련 노동자의 감소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볼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청년인구는 감소하지만, 중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총량적 인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은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을 고려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인력부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은 청년층이 구직을 기피하는 제조업의 기능원 및 조작원 직종에 집중된다. 제조업의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의 인력구조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기존의 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권혜자,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 부머에게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고령자 고용 연장,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직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조기정착,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0). 다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 현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베이비 부버의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피크제는 2006년에 도입된 이후 도입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지만(09년 100인 이상 사업장 중 9.2%), 보전수당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곤란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다수 있어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 근로시간단축형 , 재고용형 으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이 중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연간 6백만원 한도). 또한 임금감소분의 지원 시점도 현행 54세에서 50세로 변경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지원 기한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5) 본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서 보고된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6) 중고령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연령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에서는 50세 55세 미만 연령자를 준고령자로, 55세 이상 연령자를 고령자로서 규정하고 이들을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노동시장 연구에 있어 중고령자 또는 고령자 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함. 어떤 연구자는 45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을 사용하기도 함. 연구대상으로 40, 50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라는 용어보다는 중고령자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고령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칭할 기준은 없음. ECD에서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간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관련 보고서(A E) 시리즈에서도 50세 이상을 고령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고령자라는 용어는 정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45세 이상 연령층을 지칭하는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베이비 붐 세대와 유사한 연련층이므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내용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이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많은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서 고령자를 배제하거나 고령자가 배제당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고령자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은 중고령자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사업으로서, 고령자에 특화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정기간 취업능력향상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단순 일자리 및 현장 연수 중심의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전문직종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훈련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훈련 수요를 파악한 후 중고령자 전담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직무훈련과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의 현장연수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 4-5>

(: , %)

			( )
2007	900	328	45(17.1)
2008	855	802	222(31.9)
2009	700	649	308(53.4)

: (2010). .

한편,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퇴직인력의 사회적 재활용 시스템이 미비하여 전문인력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퇴직은 40대부터 시작되지만 퇴직 이후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반면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고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공적 개입을 통해 적극적인 전문인력의 채용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활용업체가 미활용업체에 비해 고용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적절성과 효과성 및 효용성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4-6>

(: , ,)

	2007	2008	2009
	4,279	4,221	5,226
	6,704	6,384	8,085
	54,922	41,938	57,890

이 외에도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되고 있는데 대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권혜자 2010: 손유미·김찬훈,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A C 전개,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사전적 예방·홍보 실시, 주기적 연령차별 모

니터링 등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은 사업주가 장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연령의 하한을 정하여 장년을 모집·채용한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추가하였고, 장년 고용촉진의 노력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시책을 강구하는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은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각 주체가 장년 고용촉진에 적극 대처하고 노력하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베이비 부머가 직접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 실시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경우 베이비 부머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연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으며 지역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에 한정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의 시행으로 2007.7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약 300여개이며 돌봄·환경·문화 분야가 주된 영역을 이루고 있고 약 12,000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0).

< 4-7>

	65 (60-64)	18	
		150% , 1.35	

이러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한 장년층이

자신의 지식·경험·재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사회공헌형 일자리 개발·보급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회공헌현 일자리 운영기관이나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사업을 실시중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1994년에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였고 2004년에 다시 법을 개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65세까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 후 재고용 또는 ③ 정년폐지의 3가지 조치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업의 70% 이상이 도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재고용제도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허동찬, 2006).

또한 독일 정부는 50 라는 고령인력 고용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0%까지 높이고, 2012까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자들이 되도록 기업에 오래 남아 지금까지 축적된 기업특수적(-) 기술과 직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직업훈련의 기회에 있어서도 배제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낮아져 젊은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7) 본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 보고된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따라서 고령자의 근로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특징은 고령자의 고용( ) 증진보다는 고령자의 근로능력( )를 높여 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프로젝트(F A) 의 사업들에는 기초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고령자를 위한 직업 기술과 맞춤식 훈련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연령관리훈련(-) 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작업 역량(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 예를 들어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개선, 새로운 재활방법 도입 등도 포함되었고, 기업들이 좋은 작업장 관행과 모델을 만들어 내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훈련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맞춤식 개발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황준욱 신현구, 2005).

프랑스는 이미 2003년 근로자 평생 훈련 기회 에 관한 국가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바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급여의 1.6%, 그 이하 기업은 0.55%를 기부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근로자나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45세 이상 근로자는 숙련 감사 를 받고 직업 경험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윤자영, 2010). 독일도 평생교육을 통하여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장을 훈련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조성혜, 2009).

외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미국은 1967년에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 D E A) 을 도입하여 40세 이상 근로자를 연령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국제노동기구( )도 1980년 고령근로자에 대한 권고(제162호) 를 제정하였다. E 국가들도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한 대우에 관한 E 지침(2000년 78호 지침) 에 따라 2006년까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조용만, 2004).

유럽연합(E)의 경우 2001년 스톡홀름 목표( )와 2002년 바르셀로나 목표(B)를 통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8] 이러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성장 유지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고령화가 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절, ②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적절히 대응, ③ 적절하고 지속적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연금체계를 확보, ④ 재정적 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높은 품질의 보건시스템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연령차별을 철폐하고 있으며, 안티에이징(A -) 캠페인을 통하여 고용주 및 사업장의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행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나온 경험은 국가의 자산이다(E), 전성시대( ) 등을 대표적 슬로건으로 하여 캠페인을 시행하였다(황준욱·신현구, 2005). 전통적으로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국가로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대해 꺼리는 경향이 있었던 영국 또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고용주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의 효과성을 인지하고 고용주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득과 권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을 주로 실시하였다(황준욱·김태황·신현구, 2006).

물론 이러한 홍보 켐페인 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 관행의 철폐가 의도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후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한 대우에 관한 E 지침(2000년 78호 지침) 에 조응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 을 제정한 바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고령자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9].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고령자의 사회참

8) 스톡홀름 목표는 2010년까지 55 64세 고령자 고용률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고, 바르셀로나 목표는 2010년까지 은퇴 연령을 5년 연장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음(황준욱·신현구, 2005).

9)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소정 외.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자원 수요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고 할 것.

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C 와 같이 인적자원의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사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등 전략적인 기획을 고민하는 단위를 갖고 있으며, 다수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경쟁보다 공익성을 띄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섹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 4-8>

	C	E F		- - E F
				- ,
				- -
	E C .		50	- - - ,
	AA F C E	E	55 ,	- - - ,
	C		( )	- - -
			50 60	- - - : . - 1:1
			3	- ,

			( )	-
			40 60	- - , , . -
				- , -
			60	- - · 4
	E			- - , , ,
	65+		65	- - : , , , , - , , , , , , , , , , , , ,

: . (2011). . · , < 5-3> .

베이비 부머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처해있는 현황과 욕구,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현황, 외국사례에 기초하여 볼 때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에 앞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기본방향을 먼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고용상태 및 직업을 고려한 정책방안이 맞춤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책과제는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연장에 초점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베이비 부머의 일부만이 상용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의 유지, 창업지원, 자영업의 지속성 지원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싶어 하거나 새로운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고령친화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증진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의 근로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베이비 부머의 고용증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로 대표되는 중고령자의 근로능력 제고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우리사회체계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고령층의 비율이 높아 이들의 퇴직 이후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업종중 인력부족 문제를 체험하게 될 제조업의 기능직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소기업에서의 작업장 환경 개선과 시간제 일자리 등 중고령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으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인력구조 왜곡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권혜자, 2010).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인한 기능직 기피현상과 기업규모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의 숙련기능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특히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체에서는 청년층 신규고용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하도급 구조의 하위에 속하는 기업에서는 인력부족에도 불구하

고 청년층의 기피현상 심화되고 있다. 제조관련 대기업에서는 노조 또는 노동관계 법률의 규제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기능직을 비정규직화하거나 외주·하청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요구된다.

베이비 붐 세대중 자영업이 일정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퇴직 이후 고용형태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창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근로소득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권혜자, 2010; 손유미·김찬훈, 2010; 장지연, 2008). 따라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창업 및 경영관련 인큐베이터의 운영, 리스크 관리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무점포 자영업자 등 저소득 불안정 자영업자의 경우는 취업알선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고용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의 활성화, 올인 하는 창업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산하는 창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직접적인 정책지원보다는 시장생태계 조성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손유미·김찬훈, 2010).

공공부문 등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임금피크제 및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등 점진적 퇴직제도 적용(현행 정원관리 방식의 유연화 필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은 민간부문을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점진적 퇴직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전직지원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또는 고용조정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를 위한 국가 진로전환 지원 체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제반의 진로전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진로전환 지원 체제의 중심에는 전담 업무를 하는 가칭 중앙진로전환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하여 중고령자의 진로전환 지원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중간 허브( ) 역할을 해야 한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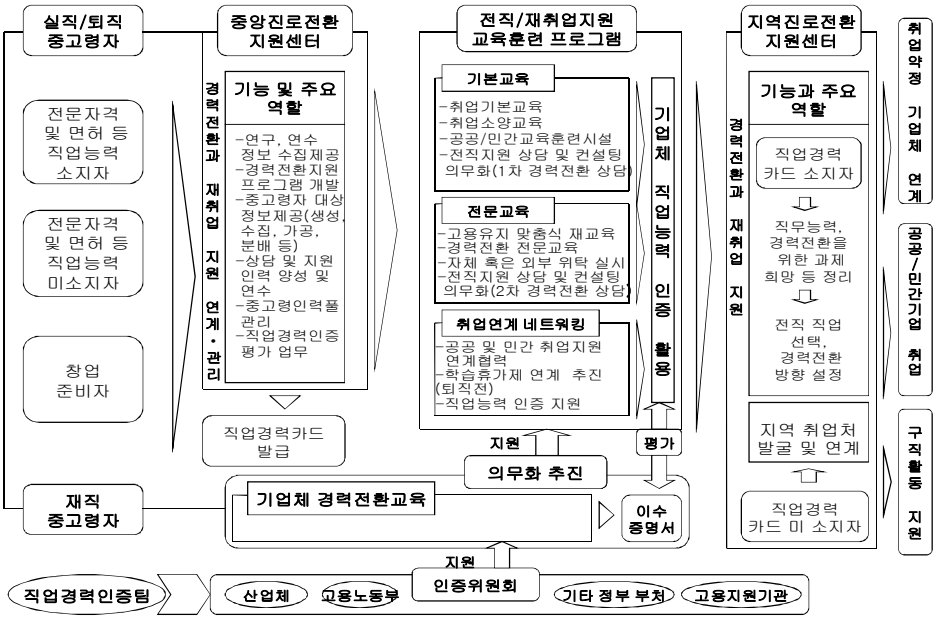

중고령자의 재취업 및 이전직 등 고용촉진과 원활한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연계한 직업경력카드제를 도입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결과를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주고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그 범위 내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익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 제도이다.

직업경력카드제는 재직근로자의 직업경력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인증제도의 하나로, 본질적으로 직업경력카드제는 재직 중에 직업능력이나 재취업을 위한 경력을 객관화하여 인증하기 위한 하나의 경력전환 포트폴리오( )로 중고령자 자신의 향후 계획과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기술에 관한 직무능력 사항들을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력전환이나 재취업을 용이하게 지원

하는 정보자료이며, 기존의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에서 활용하는 구직카드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학습휴가제 는 중고령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자신이 소속한 직장의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휴가기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제도 가 되어야 한다.

·

중고령자에 대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일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계형 취업이나 봉사형 취업, 전문직종과 단순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진단 및 진로 설정, 의욕과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프로그램의 형태로 되어야 하며, 중고령자의 취업의욕과 동기 제고,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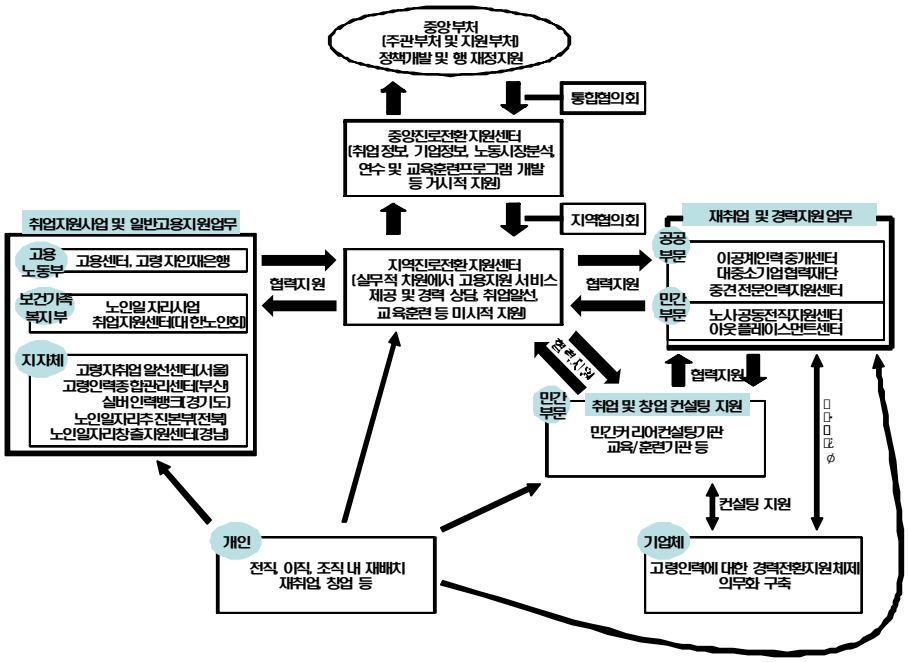

현재 베이비 부머의 고용상태 분포를 고려해볼 때 중고령자 고용정책은 소수 정규직 중심의 대책에서 다수의 불안정 고용층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불안정 고용 중고령층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연계 고용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연계 고용서비스는 기존 사업주 신청 단위에서 개인 신청 단위의 전직훈련시스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에서 고용조정 사유와 무관하게 정년퇴직(예정자) 및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자(예정자)로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간소화·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하청계열 기업 간 공동 전직프로그램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컨소시엄을 유도해가도록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기업 내 진로전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전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정년퇴직이나 구조조정에 의해 조기 퇴직이나 이·전직을 앞둔 중고령 근로자의 효율적인 진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직지원제도 도입과 더불어 진로전환 지원 전담센터 를 운영하는 것이 구조조정 과정의 갈등 요소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핵심인력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

기업은 무엇보다도 생애단계별로 체계적인 진로전환 관리 프로세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전환 지원 경로(계속고용 연장을 위한 지원 경로, 전직을 위한 재취업 경로, 정년퇴직 후 노후설계 경로 등)를 제공하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생애단계별 진로전환 지원 시스템 실시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 특성에 맞는 진로전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 진로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검사도구의 개발과 컨설팅 과정에서의 상담기법을 비롯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우리 정서는 물론 기업의 퇴직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기업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특화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에게 생산성 제고로 나타나야 하며, 중고령 근로자에게는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계기로 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보장하거나 고용을 연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년보장 연령이 60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정년 연장은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만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피크제 근로계약 체결(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 요건을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점을 50세(현재의 준고령자)까지 낮추고,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의 확대를 추진해야가야

할 것이다.

비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퇴직 후 일반 사회참여형(사회공헌형 또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로 연계하거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3섹터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제3섹터 일자리)의 연결통로로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퇴직자들의 제3섹터 기관 사회공헌형 일자리 연계 사례가 일반화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3섹터에서의 (전문적)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유급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소정 외, 2011). 뿐만 아니라 은퇴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퇴 전의 자원봉사활동이 은퇴 후의 자원봉사 활동 또는 사회공헌형 유급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연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중고령자의 특성을 살린 제3섹터 아이템을 발굴해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강도의 육체노동 또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정신노동에 취약하다는 고령자의 특성을 살려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멘토 등에 관한 일자리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의 경우 풍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종 후원 및 결연사업, 대외협력, 마케팅 등의 업무 아이템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적 협력을 요하는 일 보다는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고령자의 특성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종 모니터링 사업, 특히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사후관리(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문에서 사후관리와 관련된 아이템의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 밀착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고령자가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

템의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경제활동 기회가 증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인식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평생직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중고령자 개인의 진로전환에 대한 준비는 퇴직 전이 아닌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고령자가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에 의해 진로전환을 한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나이가 많아서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은 이러한 전환의 과정을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이·전직 및 창업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중고령자 자신의 진로전환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남은 자신의 생애진로에 대한 설계를 거시적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가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 자신의 고용 가치를 높이는 노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 습득, 향후 자신을 고용하게 될 기업에 대한 수요자 입장의 고려, 타인과 차별화된 전문지식의 습득 등 제반의 능력을 갖추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령자 자신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격을 지표화하고, 평소에 자신의 경력 카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기홍, 2008, 2010).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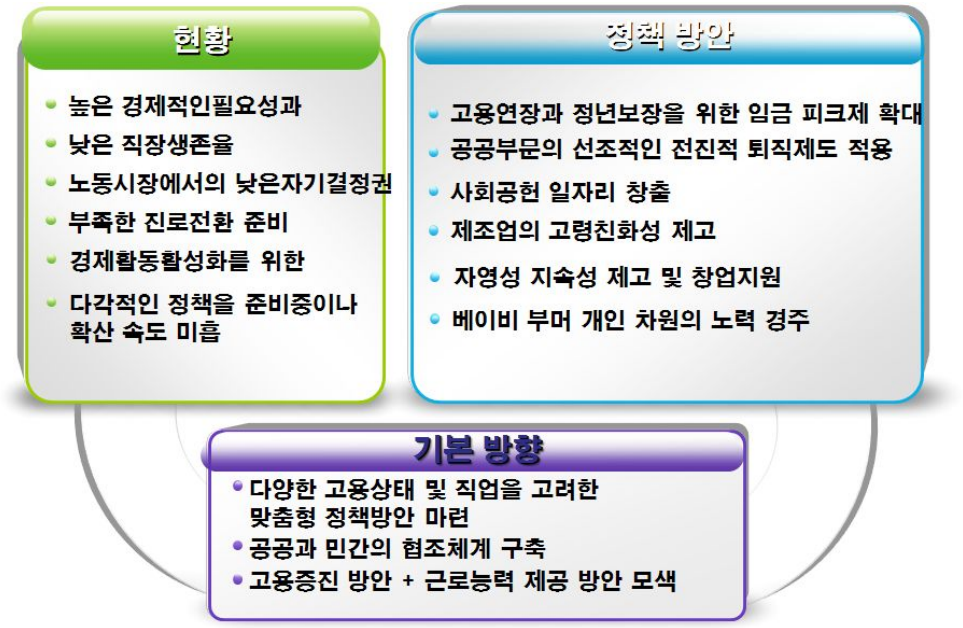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베이비부 부머는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욕구가 많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위 욕구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실현이나 자존의 욕구 등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가 노후의 삶을 보다 가치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여가문화활동과 자원봉사로 대표되는 사회참여활동[10]은 일종의 학습된 행동으로서 전생애주기에 걸쳐 일어나

10)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의 생산활동을

는 계속적인 경험과 변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정경희 외, 2011).

자원봉사의 경우 통일되게 발표되고 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원봉사참여율이 7.3%이다. 한편 행정통계의 경우 통계자료 제공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의에 의하면, 40대와 5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9년도 기준으로 18.6%와 15.5%이며, 행정안전부의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연구(2008)에 의하면 25.4%와 26.5%이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통계가 실제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활동을 다른 세대와 비교해보면 이들의 자원봉사 비율이 10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베이비 부머의 세대적 특성인지( )인지 아니면 베이비 부머가 현재 중년이라는 생애단계에 있다고 하는 연령효과( )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는 특성( )이라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으나, 연령효과( )가 강하다면 노년기에 진입하면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

,

11).

제외한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1)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제3장에 보고되어 있음.

첫째,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시간에는 평일과 휴일간의 차이가 크다.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3.68시간이나 휴일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6.56시간이다. 둘째, 이들의 희망에 비하여 실제의 여가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현되지 못한 여가욕구가 많다. 즉, 희망여가시간은 1 30

,

. ,

.

.

. , .

, (22 2) (13

) 9 2 .

- .

,

.

, .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는 세대

적 특성인지( )인지 아니면 베이비 부머가 현재 중년이라는 생애단계에 있다고 하는 연령효과(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먼저 여가활동의 목적이 상이하다.

(21.3%), (21.0%), (20.0%), (17.9%) ,

, , , 10%

.

(26.9%, 32.3%) .

,

. ,

,

.

.

3.24(5 ; 5:
, 1:) ,
(53.8%) , (41.6%) .

.

.

여섯번째로 현재에 비하여 노후에 여가생활이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하여 준비는 소홀하다. 즉, 베이비 부머가 생각하는 여가생활의 중요도는 현재의 삶 69.4%, 노후 삶 83.7%이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의식은 경제나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준비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이소정 외, 2010).

마지막으로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베이비 부머는 다양한 여가활용 기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금룡(2011)과 문화관광체육부(2010)는 베이비 부머가 노인이 되었을 경우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의 다른 여가문화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등 여가활용 장소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현 노인세대보다는 노인복지관의 여가서비스 이용 시작연령이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 부머는 여가에 대한 예비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여가활동이 노후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정경희 외, 2010)을 근거로 해볼 때, 현세대 노인보다는 여가참여율이 높고 여가활동 유형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여가 예비사회화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여가참여율과 여가활동 유형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전략과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대상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은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노인세대의 경우 노인자원봉사단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단체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노인자원보사활동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요 조직으로는 지역자원봉사센터(: . . .),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시설협회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다변화로 인하여 총괄적인 통계산출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니어 코리아에서는 노인자원봉사 조직화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독자적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인 자원봉사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자원봉사대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교사, 공무원, 변호사 등 다양한 퇴직자 모임을 퇴직노인 자원봉사단으로 지원 육성함과 더불어 전문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전문 자원봉사자 확보, 봉사 수요처 개발, 봉사자 교육 및 양성, 소요자원의 동원, 봉사자 관리방법 등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 기술 발굴하여 매뉴얼로 제작 보급 하고 있다. 한편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하여 연계,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운영,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

12) . . . 에 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있음.

램 안내 및 소개, 전국 노인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소개 및 안내, 노인자원봉사 관련 커뮤니티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초기단계로 양적 성과를 넘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고려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2006년 2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중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봉사의 의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권장·지원 책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의 구체화, 주요 정책심의를 위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학교와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자료,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보호조치, 자원봉사자의 날(12.5)과 자원봉사 주간의 설정,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 248개 시·도(16개), 시·군·구(232개)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7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가가 양적으로 증가해왔지만[13] 연령별로 특화된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다.

즉, 지금까지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은 연령군별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전략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노년층 특화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양극화된 대응으로 인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및 모집전략을 모색하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앙코르 프로젝트 는 전문퇴직인력들을 공익기업이나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회계, 재무, 조직관리, 자금모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제활동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특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어 베이비 부머의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전략의 하나로 보여진다.

---

13) 질적인 측면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부처별 자원봉사 관련 시책을 분절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천현상에서의 업무혼란과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하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적·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질 전문인력의 양성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박세경, 2010).

문화여가활동은 그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한 부처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보다는 전반적인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정책과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을 대상으로한 정책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가 품격 제고 등 국가의 궁극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을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했고 이에 따른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전에 입각하여 노인을 비롯하여 전 취약계층의 문화권 향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14].

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별 시설과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도서관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단체인 지방문화원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여가시설은 2008년 기준 약 6만 개로 전체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의 시설을 통해 노인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프로그램의 향유 비율은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라기 보다는 종합서비스 기관 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이 더 강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07).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일반적으로 60세)에 도달하는 기간이 4~12년 정도라는 점과 이 기간동안 공공 및 민간부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급격히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해볼 때,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여도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권중돈, 2011).

또한 모든 노인 관련 시설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프로그램, 언어교육 프로그램들에 중점을 두고 부대적 프로그램

14) 구체적인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 제시되어 있음.

이나 가벼운 여가보내기 프로그램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노인들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노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체취약, 근로취약 등의 요소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문화예술 창조자로서의 노인들의 적극적 정체성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기구나 사업도 전무하다(정경희 외, 2011).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A C , C 등의 국가봉사단을 관리 및 운영하는 조직은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법인(C & C : C C)으로 1993년 이전까지 미국의 다양한 국가봉사단 프로그램을 관리해왔던 AC 과 부시대통령 시기에 출범한 국가지역사회봉사위원회가 합병·출범하였다. AC 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C C 는 많은 부분 연방정부의 지원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C C 가 관리하는 봉사단의 종류는 A C (청년봉사단), C (노인봉사단)를 비롯하여 A (초·중·고 봉사단) 등이 있다.

C C 가 설립된 법적 근거에는 1990년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법(C A , C A, 90)과 이를 개정한 1993년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기금법(C A , C A, 93)이 있으며[16] 최근에 미국봉사법(A A)이 제정되어 국가봉사단 운영관련 법조항을 보완한 바 있다. 미국봉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국가및지역사회봉사법,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기금법, 전국자원봉사활동법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

15)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민간 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서 보고된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외국사례에 관한 내용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16) :// . . / / / . 참조

111-13, 2009). 국가봉사단 활동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25만명을 확보한다는 것과, 프로그램 내용 및 모형에 대한 보완, 연방정부 기금의 할당비율, A C 및 C 프로그램의 운영규정의 개정, (일부 국가봉사단)봉사자에 대한 월 지급비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안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간 국가봉사단관련 법에서 제시되었던 수준과 비교하여 봉사단에 대한 국가(연방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A C 는 3,000 여개 이상의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종교기관 및 기타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서 매년 7만명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서비스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아동을 위한 학습과외교사에서부터 멘토, 집 건축, 컴퓨터 교육교사, 자연환경 개선, 방과후프로그램 지도 그리고 재난극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연령특화된 프로그램 중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연간 50만명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서비스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C 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에서부터 봉사자가 보유한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지역 기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박세경 외, 2010).

1971년에 시작되어 현재 미국의 노인봉사조직 중 상당히 대규모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는 노인이 개인적 경험, 직업상의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특별히 인식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타 C 프로그램과는 달리 는 자원봉사자 개인이 자신의 관심과 자신이 가진 기술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방법과 봉사장소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봉사자의 기준은 5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제한이 없으며 주당 최고 40시간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최소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다. 봉사에 대한 금전적 댓가는 제공되지 않으나 봉사자가 활동을 하는 기관별로 소정의 활동비(교통비, 식비)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 45만명의 봉사자가 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봉사시간은 연간 6천만시간 이상이고 75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민간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이 뿌리 깊은 곳이다[17]. 대표적인 자원봉사활동 단체인 (')는, 조직의 목적을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성 및 존엄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8년 현재 78,000여명의 노인에게 약 56,000명의 노인 자원봉사자와 2,500명의 직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주요 내용은 좋은 이웃 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교통도우미 서비스, 도서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와, 사회센터, 런치클럽 등의 운영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이다.

에서는 최근 들어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내 카페테리아 운영, 모금활동, 지방정부로부터의 서비스 위탁, 다양한 재단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수주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C (C)라는 봉사조직이 있는데, 이의 하위조직인 ( )에서는 고령자의 자원봉사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50세 이상의 1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주요 내용은 초근학교 방과 후 활동지도,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말벗 서비스, 거동불편 노인대사 차량지원서비스, 환경개선사업 등이다(권중돈 외, 2010).

한편 일본의 경우 A C (A C)이 자원봉사활동관련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50세 이상의 26,5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은 노인클럽[18]과 유사하여, 고령자의 경험, 특기, 능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차별성은 기업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정립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17)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자원봉사활동이 침체되면서 시민자원봉사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새천년 봉사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6~24세의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였음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박세경 외,2010).

18) 노인클럽은 1950년에 시작되었으며 2006년 현재 전국에 126,504개 클럽에 8,047,33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음. 초기에는 여가활동 중심이었으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동의 중심으로 하고 있음. 정원사, 이용사, 목공 등 전문적 기술을 살린 봉사활동, 지역문화와 예능 전승활동, 지역환경미화, 거동불편노인 지원 등이 대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임(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2008).

자원봉사 시간예탁제도(D)의 활용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실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장난감 닥터 활동」은 만들기 좋아하고 손재주가 있는 은퇴남성들이 망가진 장난감을 수리해 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와 활동비를 지급받는 시민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로, 자원봉사활동이 소득창출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이나 사회적 기업 운영방식과 유사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본 방식은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일자리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시니어주점」이 있는데, 은퇴 후 편하게 모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시니어들이 직접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형의 시니어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점장, 조리담당, 홀서빙도 회원이며 심지어는 손님도 회원으로 이른바 '(생비자)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손님은 회원 중심에서 점차 일반 손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사례이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는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여유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 있는 일과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학습과 사회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베이비 부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장인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 」이다. 이는 대학을 기반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조기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델의 미션은 고령자들이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보존하고, 이를 현재의 지역사회 욕구에 적용하게 하며, 자신의 재능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세대교류의 외교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 2006; , , , , 2006)

높은 경제수준과 그에 따른 여가문화활동이 체화된 선진국의 경우 여가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노화과정에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다. 2001년에는 건강한 노화와 창의적 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워싱턴 DC에서 국립 창의적 노화센터(CCA: C C A) 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예술과 노화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모델의 경우 미국 전역의 제휴기관을 통해 보급을 지원하며, 미국 내 컨퍼런스,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와 자료 교환의 중심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노화와 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163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CCA의 홈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 명, 주(洲)별 운영 지역, 운영 장소,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 세대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노화에 따라 사회참여와 관련된 욕구와 행동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견되는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을 감안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베이비 부머의 성, 교육수준 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과 그들의 은퇴시기와 노년기 진입이전 시기까지의 변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여가활동(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 사회참여 모델을 지향하도록 한다. 여가활동(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일자리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얻을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에 의하여 다양한 활동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B - 접근이 필요하다. 일과 여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총체적 연계과정에서 활동들 간의 위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 방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여가활동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일자리로까지 이어지는 위계성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구축해가도록 한다. 베이비 부머는 퇴직을 시발점으로 하여 생활기반이 직장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접근성에 기초한 생활밀착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구조지체현상( )을 극복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나 지역사회 실천현장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을 지역사회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자원봉사활성화 및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은 라이프 스타일로 일생동안 생활화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이

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변화 및 인구학적 변화에 상응하는 삶의 질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의 사회·인구학적 제제특성과 봉사경험 및 인식, 경제활동, 생활기반의 변화, 빈둥기 시기의 연장 등과 같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틀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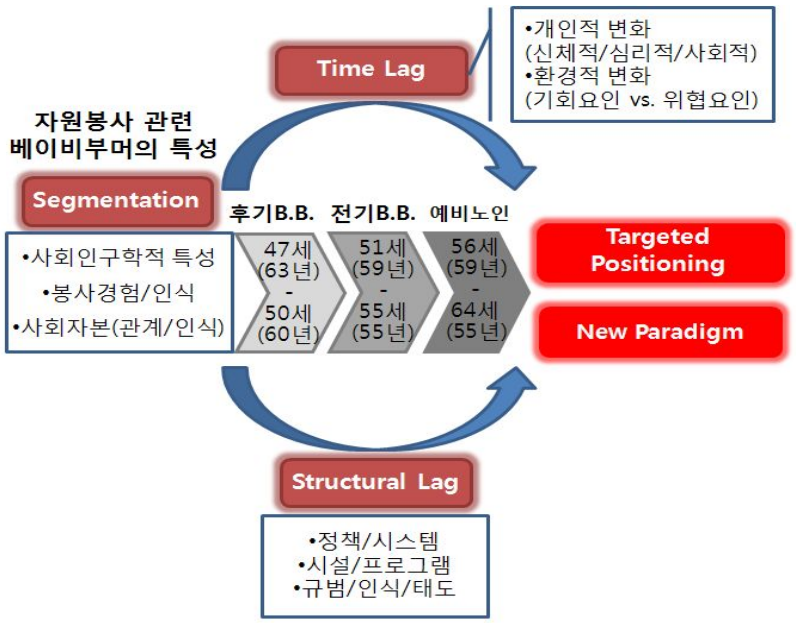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봉사자의 홍보 및 모집전략, 프로그램 개발, 만족도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왔다. 최근 들어, 봉사활동의 보상과 인정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를 봉사자의 동기와 결부시키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동기분석은 홍보나 모집과정에서 설득력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자원봉사 동기와 자원봉사활동 영역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동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봉사활동 영역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심도있는 봉사동기 연구를 통해서 이들을 자원봉사활동의 장으로 유도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오랜 기간을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능력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별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기업차원에서는 주로 퇴직 후의 재취업이나 창업에 초점을 맞추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과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은퇴자들의 B모임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해가도록 한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은 이미 여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중심의 연계활동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봉사활동으로 그치거나,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 기존의 봉사자들과의 관계도 함께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직장 프로그램 이외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은퇴 이후에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자의 지역사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혹은 복지관과 연계하는 이른바 봉사자 연계시스템 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에 맞게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봉사단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중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이 내신 성적과 연계됨으로써 최근 들어 자원봉사자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봉사단은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증진은 물론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봉사 유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부부중심의 프로그램개발 또한 중요하다. 베이비 부머들은 빈둥지 시기가

연장됨으로써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연장되어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줄어듬에 따라 부부단위의 여가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중심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자원봉사 영역의 강화 또한 요구된다. 은 전문적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업적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직업을 근거로 한 지식, 기술, 기능을 의미하며, 비록 직업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그 분야에 숙달되거나 능통한 수준에 있는 경우를 전문적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비영리기관 차원에서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이 주체가 되는 전문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4-10 은 지자체에서 시니어전문자원봉사센터(가칭)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시 혹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니어전문자원봉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은퇴자들, 전문직종단체(의료, 법률, 교육, 경찰 등)의 중앙 혹은 지부, 평생교육기관의 참여자, 오랜 기간 봉사해 온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의 소규모 모임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봉사 및 교육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전문자원봉사자 집단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봉사활동의 수요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은퇴자 집단을 지원하지만,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 자생력을 갖게 되면,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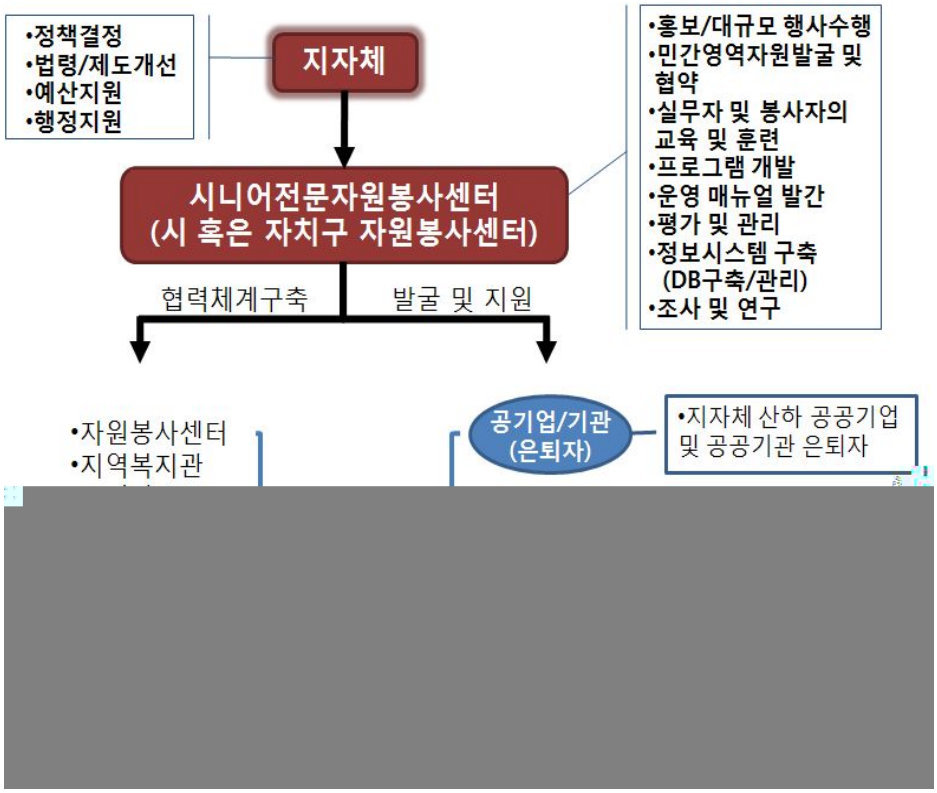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터넷 동호회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국인 한국에서 베이비 부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5년도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베이비 부머들이 인터넷을 통한 여가활동과 교육학습의 비율도 각 각 20.4%와 16.6%이다.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동호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실천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나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중장년층 특히 베이비 부머

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들의 특성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동기,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물론 40대에 높은 자원봉사자 비율을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에 개인적 측면은 물론 사회, 문화, 제도적 측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외국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들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영역의 자원봉사활동들은 통계자료로 확보할 수 있지만, 종교기관이나 기타 비영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탈락률은 얼마나 되며,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베이비 부머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성별과 같은 고려해야 할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여야 할 것이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및 휴일)과 여가비용에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적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 여가시간은 많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비용에서도 남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여가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의 목적에 있어서는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여가 자체에서 의

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여가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 여가의 주요목적인 반면에 스트레스 해소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전통예술관람 등 관람에 관심이 높으며, 사진촬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음악연주회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남자는 사이클링/산악자전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여성들은 요가/필라테스/태보, 댄스스포츠를 하고 싶어했다. 취미 오락활동에서는 남성은 낚시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은 미용, 어학/기술 자격증 등 학습활동, 그리고 요리하기/다도 등 다양한 영역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는 남성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종교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혼합형 여가패턴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혼합형 여가패턴의 비율이 높아 보다 다양한 유형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대상별로 여가시간활용, 여가비용, 여가목적, 여가활동 유형, 여가패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전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게 될 경우, 직장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생활기반을 전환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응여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소속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역사회, 학교(동문, 동창), 직장, 종교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예비노인 세대와 노인세대를 비교해 볼 때, 직장소속의 동호회와 학교 소속 동호회는 감소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와 종교단체의 동호회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역사회 소

속의 동호회 비율은 세대와는 무관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이후 지역사회 적응은 노년기 여가활동은 물론 삶의 질에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빈도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 내 여가시설로 종교시설과 근린공원이 가장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 희망 이용빈도에서 주목할 만한 시설로는 여성회관과 평생학습관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노인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 이외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C 모델에 의하며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주로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선택( )과 최적화( ), 그리고 보완/보상( )의 과정을 거쳐서 중장년기 때의 상태로 복원( )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성공적 노화 라고 말한다. 이때 선택에는 선별적 선택( )과 상실에 의한 선택(-)이 있는데, 은퇴(직업의 상실)나 건강악화(건강의 상실) 등 상실에 의한 선택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선별적 선택은 상대적으로 인식의 정도 약하다. 즉, 노후설계에서도 재무관리나 건강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이후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일 중심의 생활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일을 위한 휴식이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이른바 여가투성이 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곧 여가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와 예비노인 세대, 그리고 노인세대의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여가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꿈꾸고 있는 희망 여가생활을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꿈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들에게 은퇴 이후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실천의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가생활을 홍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가시간 자체보다는 여가시간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었던 반면에, 여가비용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여가비용과 더불어 사용한 여가비용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여가비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가 불만족 이유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은 시간부족(41.6%)보다도 경제적 부담(53.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의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이 약 27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 의 11만2천원보다 약 15만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소비하고 있었다. 희망여가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비용보다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고 싶어한다.

베이비 부버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가의 비용측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노인세대에게 있어서도 서비스 접근도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공적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민간부문의 여가 및 평생교육 기관들이 확대 설치되고 서비스의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을 사용할 경우 노인복지관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조정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응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하여 서비스의 특성화와 고급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위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연령서열형 사회의 특성,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양극화 현상,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분담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노년기 여가활동시설 중 중심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특성변화에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와 노인세대의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특히 예방적 기능)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현재 중심적 기능인 취미여가지원이나 사회참여지원 기능을 유지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생교육지원 기능을 축소해가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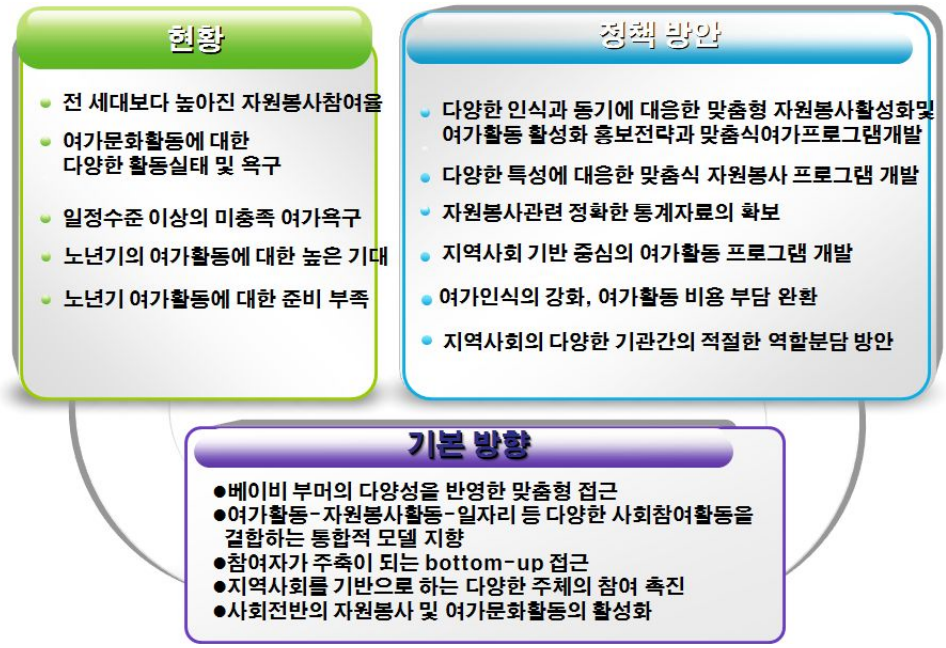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베이비 부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48만원이며,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산 규모는 평균 364백만원이며, 1억 미만이 29.2%, 1 3억 미만이 31.7%, 3 5억 미만이 15.9%, 5억 이상이 23.2%이다. 이들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66.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없는 비율은 42.8%, 30% 미만이 36.1%, 30 60% 미만이 12.2%이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비율 또한 6.5%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1).

19) 본 내용은 정경희 외(2011 , 2011)에 보고된 경제상태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 4-9>

		200	200~400	400~600	600	( )
	448.07	15.9	34.1	28.3	21.7	100.0(3,027)
		1	1~3	3~5	5	( )
	364.48	29.2	31.7	15.9	23.2	100.0(3,022)[1)]
			30%	30~60%	60~100%	100%
	66.74	42.8	36.1	12.2	2.4	6.5

: (2011). 「 .

< 4-10> 10

	3.0	38.0	40.3	16.6	2.2	100.0

: (2011). 「 .

이러한 베이비 부머내의 소득불평등은 28세에서 45세까지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다가 이후 55세 이르기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강화되는 경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베이비 부머의 연금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연금가입율은 높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아 충분한 연금급여가 확보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율도 임시직 및 일용직은 20% 미만이며, 자영업자의 경우도 29.1%에 불과하다.

< 4-11>

(: %)

							( )
	91.1	96.9	3.0	0.1	42.4	21.5	100.0(1,310)
	93.1	49.4	46.4	4.2	16.6	2.4	100.0(332)
	89.8	18.2	81.0	0.9	14.2	0.0	100.0(374)
	97.9	93.6	4.3	2.1	49.5	0.0	100.0(96)
	94.8	61.5	29.9	8.7	29.1	0.0	100.0(596)

: (2011), 「 .

베이비 부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향후 연금 수급 가능성을 보면 전체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50% 미만일 것으로 전망됨(정경희 외 , 2011). 베이비 부머 남자의 약 90%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며, 평균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재정추계결과를 보면 베이비 부머 남성 연령코호트에 따라 약 50 70% 정도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베이비 부머 여성은 약 50%만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며, 평균가입기간은 5년 정도로, 베이비 부머 여성의 30% 미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 중 직역연금 가입자는 약 34만명으로 전체 베이비 부머 714만명의 4.8% 정도로, 이들을 퇴직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베이비 부머 중 향후 노령(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 약 55% 정도 될 것이다.

이들의 급여수준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평균 급여액이 높을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연금액이 국민연금 A값의 20 30% 정도일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상황을 조사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로 파악했을 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단위로는 공적연금만 가입된 비율이 26.9%이며, 퇴직연금만 가입된 비율은 0.6%, 개인연금만 준비된 사람은 7.3% 등으로 다층적 노후소득을 중비하고 있는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인단위의 노후준비 양상에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하여 여자의 경우 무연금인 비율이 32.5%에 달하고 있다.

부부단위로 살펴보면 공적, 퇴직, 개인연금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16.7%임. 공적연금만 가입된 비율이 29.0%이며, 퇴직연금만 준비된 비율이 0.7%, 개인연

금만 준비된 사람은 3.5%이다.

< 4-12>

				+	+	+ +	1)	
	26.9	0.6	7.3	26.4	7.1	9.6	22.1	100.0(2,232)
	32.7	0.4	3.3	29.5	10.0	12.3	11.7	100.0(1,126)
	21.1	0.7	11.3	23.3	4.2	6.9	32.5	100.0(1,106)
	29.0	0.7	3.5	31.3	10.0	16.7	8.8	100.0(2,232)

: (2011). 「 .

< 4-13>

(: %)

				+	( )
					100.0(2,250)
	13.7	26.9	16.6	42.8	
	72.1	10.5	10.2	7.2	
	48.1	15.2	8.3	28.4	
					100.0(1,134)
	13.2	43.2	2.9	40.7	
	74.3	17.3	2.2	6.2	
	50.4	18.5	4.1	27.0	
					100.9(1,116)
	14.2	10.4	30.4	45.1	
	69.8	3.6	18.4	8.3	
	45.8	11.7	12.6	29.8	

. (2011), 「 .

2차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국제기구의 권

20) 이윤경 외 (2011)의 노후소득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고사항임과 동시에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8개의 세부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 설정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민연금, 특히 특수직역연금 제도에서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정 요소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고 있는 공적인 노후준비의 부족 및 이들이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하여 좀 더 긴 노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은 갖추고 있으나 각 요소들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다. 공적보장으로서는 1층인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 0층을 이루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에 도입되었다. 사적연금의 경우 2층을 구성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되었고 3층인 개인연금은 1994년에 도입되었다.

[4-12]

<table>
<tr><td>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 등</td><td>4층</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추가보장
(사적연금)</td><td>3층</td><td colspan="3">개인연금
('09. 162만4천명)</td></tr>
<tr><td>2층</td><td>퇴직연금
('11.5,
271만명)</td><td rowspan="2">특수직역
연금
('10.12. 약
1,392천명)</td></tr>
<tr><td>1차 안전망
(공적연금 등)</td><td>1층</td><td colspan="2">국민연금
('11.12. 1,926만명)</td></tr>
<tr><td>최종안전망</td><td rowspan="2">0층</td><td colspan="3">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의 하위 70%)</td></tr>
<tr><td>(빈곤선)</td><td colspan="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td></tr>
</table>

대상자	피용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사학, 군인

: (2011)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인 사적연금이 발전하지 않은 유형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고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으며 노후보장제도의

지출규모와 공적연금의 기여율이 모두 낮은 상황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2.1%이며 공적 연금의 기여율이 9.0%인 등 타 유형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다. 또한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30%에 훨씬 못 미치는 12.5%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미흡한 상황이다(ECD, 2010).

한편, 모든 공적 연금은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공적 연금은 모두 재정상태가 심각하여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재정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더욱 심각하여 공무원 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적자가 시작되었고, 사학연금은 2033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부터 정부예산에서 수지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정부보전금 합계는 총 58,676억원이다. 이러한 단기재정 위기 완화를 목적으로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였으나, 평균수명이 80세에서 100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적자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재정수지 적자는 법 개정으로 2010년 16,872억원으로 소폭 하락하나, 향후 연금수급자 급증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현재 100명의 가입자가 29명의 연금수급자를 부양하고 있으나, 2020년 50명, 2030년 7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보전금은 2020년 70,975억원에서 2030년 162,17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다.

군인연금 역시 가입자는 정체된 상황에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부보전금이 2020년 21,490억원에서 2030년 31,83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2029년에서 2033년으로 지연되나 재정 개선효과는 크지 않다. 2009년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재정수지 적자가 2060년 102,471억원에서 2080년 202,546억원으로 급증하고, 2021년 사학적자가 발생하고,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각종 공적 연금은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연금제도의 변화가 긴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금 예상되는 것

보다 급여액이 소폭이라도 감소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하며,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A값의 5%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증액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베이비 부머가 모두 65세에 진입하는 시점에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명확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도의 발전방향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현재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사적 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은 2011년 7월말 현재 시장규모는 37조 1,058억원으로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5조원, 2020년에는 19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홍민, 2011;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1). 현재 대다수 기업이 사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퇴직연금 도입율이 매우 저조하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제도와 일시금 지급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보험연구원, 2011.7).

또한 개인연금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2010년말 현재 158조원 규모이지만, 개인연금의 가입율은 20세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가입율이 32.2%에 불과하고 개인 연금과 퇴직연금 등 3층요소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선진국(영국, 9,000만원, 호주 2,750만원, 스위스, 850만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노년기의 자산유동성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주택연금(2007. 7)과 농지연금(2011. 1)이 도입되었지만 주택연금은 그 이용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택연금이 자칫 역진적 소득재분배 제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정경희 외, 2011). 또한 농지연금제도는 베이비 부머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이들의 노후소득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고성장, 완전고용, 높은 출산율을 전제로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재원 마련을 부과방식에서 벗어나 적립방식을 지향하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은 크게 부분적립방식의 도입이나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등 제도 운영방식의 틀을 바꾸는 시도와 급여 축소, 수급조건의 엄격화,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 보수적 개혁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대응방안인 부분적립방식의 도입은 주로 민간연금에 의한 기금축적과 운영이 익숙한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사전적립( ) 을 변화의 방향으로 선택하였다. 1997년에 공적연금의 기여율을 빠르게 증가시켜서 추가재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였고, 투자수익은 추가적인 기여 인상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을 충원하는데 사용되도록 했다.

스웨덴은 부분민영화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내에 수익연금기금(:)을 도입하였다. 전체 보험료 18.5% 중 2.5%를 민간보험회사, 투자회사 등이 운영하도록 하여 개인 급여에 투자수익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영국은 공적소득비례연금(E)을 제2국가연금(2)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액연금화 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수준은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공적연금을 적절한 수준의 급여보장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으로 성격을 변화시킨 것이다. 또한 적용예외(-)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보관연금( )과 같은 집합적 개인연금도 2층 강제연금체제로 편입시키는 등 민간 적립방식 연금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영국의 부분 민영화는 공적연금을 대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공적연금 내에 적립방식을 포함시킨 캐나다나 스웨덴과 차별화된다.

---

21) 정경희 외(2011)에서 보고된 외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최근 동향에 관한 내용을 주요 변화내용별로 재정리함 것임.

두 번째 변화의 방향은 명목확정기여(DC)[22]의 도입으로 스웨덴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현행기여율 수준으로도 재정안정화가 가능하여 보험료 인상 등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급여가 보험 수리적 계산에 의해 정해짐에 따라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근로유인을 제공하며,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다.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대신 최저보증제도로 이를 대체하면서 기초연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조세방식을 통한 기여인정제도( ) 등 기여기간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보장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연금개혁을 통해 최소연금( )을 철폐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사실상 공공부조의 역할로 이전하였다.

세 번째 방안은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에 의한 급여삭감, 대상의 선별화( ) 등을 통해 과거의 기여와 미래의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정치적 선택 혹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급여는 재분배적 요소가 많았던 제도에서는 급여 합리화를 통하여 재분배적 요소가 적었던 제도에서는 보편적인 급여삭감을 하게 된다.

급여합리화의 방식으로는 급여산식에서 고려하는 소득기간의 연장, 기여기간의 조정, 수급연령 조정 등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불이익과 연금수급 연기 시 유인책의 제공 폭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물론 미국, 독일 등은 연금 조기 수급 시 급여삭감 폭 및 수급 연기 시 급여증액 폭을 증가시켰다.

급여수준 삭감의 경우 1980년대 영국은 비교적 급격한 삭감을 실시하였고, 반면 독일은 점진적인 급여를 삭감한 바 있다. 한편 캐나다는 1989년부터 고소득자의 기초연금 급여를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조세로 거둬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수급연령과 관련하여 일본, 미국, 스위스 등은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호주,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은 남성에 비해 낮았던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10~

22) 명목확정기여는 급여를 기여에 비례시키고 기대여명을 반영하는 등 민간의 확정기여연금의 운영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부과방식으로 운영됨.

20여년에 걸쳐 남성과 동일하게 65세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연금급여에 인구요인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혁도 이루어졌는데, 스웨덴,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은 생애소득이나 퇴직연령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당시의 경제상황, 인구학적 변수 등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고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연령 상향하는 등의 방안은 안정적인 연금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일부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제도개혁을 시행한 국가들은 급여지출 억제의 보완조치로서 연금권 확보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저소득층 등에 대해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999년 개혁에서 블레어 정부는 일정 소득구간에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비례연금을 2 로 전환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기존 E 급여수준을 두 배로 인상시켰으며, 2007년부터는 사실상 정액연금으로 전환하였다. 스웨덴의 1998년 개혁 또한 보편주의적으로 수급권을 제공했던 기초연금을 해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기초연금액에 비해 두 배 가까운 큰 폭의 급여인상을 하였다. 즉, 수급자 범위를 축소시킨 대신 보장수준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는 최저소득계층의 연금액 증가와 함께 중 저소득층 이상의 연금급여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독일 또한 2001년 개혁에서 65세 이상 노인, 18세 이상 영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보다 수급조건을 완화하여 좀 더 수급이 용이하도록 만든 기초소득보장제를 도입하였다. 캐나다도 연금지출 억제 방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A 급여는 제한한 반면, 저소득층의 연금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는 수급자 수나, 지출규모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금급여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스위스의 보충급여 제도도 유지되었다.

또한 연금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급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 면제 및

보험료 보조 등이 대표적이다. 스위스의 경우 자영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며, 소득이 아주 낮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비경제활동자에 준하여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질병수당이나 실업수당 수급자에 대해 사회보장기구에서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함으로써 수급권 확보를 돕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강화의 방식으로서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권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는 노동에 대한 충실한 보상을 통해 연금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노동연계복지( ) 이념에 부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오래 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성역할모델 변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중복수급을 피하는 한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위해 제도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남성부양모형(-)에서 양성평등모형으로의 변화에 따른 주요한 대응은 여성의 개별수급권의 강화이다. 이를 위한 기여인정제( )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과 함께 개별수급권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사안들에 대한 기여인정제( )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육아 및 가정 내 수발 등에 대한 관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통해 1인 1연금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선 독일의 경우 1992년 최초로 육아크레딧을 도입한 이후 인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왔으며, 인정소득은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에 달한다. 1998년 법개정을 통해 육아기간 중 별도 소득활동 시 연금가입 인정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 소득상한선 내에서 연금가입소득으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스웨덴의 아동크레딧 또한 관대한 편으로서 자녀마다 4년의 기여 인정권이 제공되며, 인정소득은 각 소득계층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출산 직전 년도의 당사자의 소득, 개인의 소득과 해당연도의 평균소득의 75% 사이의 격차,

임금에 연동되는 고정액의 세 가지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육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소득에 가산점을 주어 연금급여를 상향시키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1년에는 양육기간 10년 동안 소득활동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시 연금가입소득을 실제소득의 50%를 상향조정하는 등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수준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에게는 더욱 관대하게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부모 중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스위스도 1997년 연금법 개정시 육아와 수발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가산점 크기는 인정소득은 향후 연금수급 시 최저연금의 3배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욕구에 대한 대응은 강화된 반면 학업크레딧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철폐되고 있다. 독일 또한 학업 혹은 직업교육기간에 대해 1992년 이전에는 최고 13년까지 자격을 주었으나 1990년대에 7년, 다시 3년으로 축소되었고 전문대나 직업교육이 아닌 일반교육기관의 교육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완전히 철폐하려고 하고 있다.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 과정에서 화이트칼라노동자들을 의식하여 도입된 학업 크레딧의 인정소득은 평균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군복무에 대해 스웨덴과 독일은 크레딧을 각각 평균임금의 50%, 100%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금 분할제를 1997년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1년 개혁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 하는 가운데에서도 부부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금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별적 수급권의 확대라는 면에서 매우 진전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는 연금 자동분할제도가 도입되었다.

스위스는 배우자연금을 2003년부터 폐지하면서 부부연금 원칙에서 1인 1연금 원칙으로 전환하였으며, 보험료 납부 면제 등 전업주부의 연금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18세 미만 아동 양육 시 노령연금의 40%에 준하는 아동연금을 받으며 해당 아동이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받을시 25세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1인 1연금 원칙 확대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조치이다.

여성들의 개별적 수급권 강화 조치는 배우자 급여나 유족연금과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유족연금을 철폐한 사례로서 스웨덴, 스위스 등과 유족연금을 삭감한 예로서 독일,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스위스의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은 없어진 대신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연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도 여성유족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과도기적 조치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양성유족연금(' ')을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모두 없애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유족연금(')은 더욱 관대해졌다. 18세 이하 아동은 양친 중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경우에 아동연금을 받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면 수급연령은 20세까지로 연장된다. 급여는 기초연금에서는 양친 중 한 명 사망시 기초액(BA)의 25%, 모두 사망시 50%가 지급되며, A 에서는 사망한 부모의 A 의 30%가 지급되도록 되었다. 독일의 경우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기존 60%에서 55%로 조정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여유분은 직접적인 아동연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수급권 발생 시 아동양육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수준은 첫째 아동 양육경력에 대해서는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에 준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평균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1986년에 유족 배우자가 배우자 수급권 전체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승계액을 50% 수준으로 크게 삭감하였다. 한편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아동에 대한 연금보장이 강화되었다.

1986년 영국에서 E 에 대하여 적용예외(-)가 허용된 것을 선두로 많은 나라들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 기능의 일부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연금 축소에 따라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급여 감소를 어느 정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적연금 가입자가 주로 상층소득계층이었으나, 많은 국가에서 사적연금의 가입자를 중간층에게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

다. 이를 위한 통상적인 방안은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및 직접적인 지원이다. 더욱 강력한 것은 사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정보에 따른 사적연금의 선택(-)[23]과 사적연금의 높은 관리운영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공적연금이 수행해 온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대한 세심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적연금 제도들, 특히 가입 시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이 주어지는 적격연금 제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과거보다 강화되었다. 사적연금 강화와 함께 지원대상인 적격연금 상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홍역을 겪었던 영국은 보관연금( )을 도입하여 커다란 부작용 없이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4]. 확정급여방식의 기업연금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관연금은 집단가입형 사적연금으로서 중간층에 대한 시장 확대 전략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추가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혹은 특별 세금공제를 통해 개인들이 적립식 사적연금에 더욱 많이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율이 높고, 가입자 본인에 대한 기초보조금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아동 1명당 각각 일정액의 보조금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사적연금 가입 지원에 가족정책 기능이 가미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스웨덴은 수익연금기금( )을 도입하여 보험료 2.5%를 개인계정에 투입하는 것

23) 영국에서 - 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2층 연금인 국가소득비례연금(E)또는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 국가소득비례연금이나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에 비하여 확정기여형 개인연금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제도 전환을 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개인연금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가입자가 부담하면서 연금자산 축소와 급여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24) 과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연금만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1986년에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범위를 개인연금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등 지원범위를 넓히면서 E 가입자가 개인연금으로 옮기는 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음.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보험판매인의 의도적인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오히려 연금액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 되었음.

을 의무화함으로써 900만 인구 중 무려 500만명,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연금펀드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는 대규모 연금시장 구축을 통해 국가역할을 일부 축소함과 동시에 연기금 적립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보관연금은 집단가입 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비를 연금지출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용주의 정보제공 의무도 과거의 무조건적인 사적연금 확대 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적격연금상품의 조건은 영국보다 좀 더 까다롭다. 적격상품은 연금보험, 펀드상품, 저축상품, 기업연금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으나 종신지급, 급여수준의 중도 하락 방지, 적립자산이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갖추기 어려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스웨덴의 수익연금펀드( )의 경우 각 투자기관들이 가입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수익연금청(: , A)이 개인과 연금펀드들을 매개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각 펀드들은 가입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지나친 홍보비 지출 혹은 가입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금펀드 규모에 따른 수수료 제한을 둠으로써 연금펀드들이 지나친 수수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특정 연금펀드가 설정한 수수료가 펀드모집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를 에 돌려주고, 은 이를 가입자들의 계좌에 균등하게 넣는다.

베이비 부머에게 안정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형태의 변화 및 은퇴유형의 변화에 대응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공적 연금체계는 남자가 주부

양자이고 여자가 보호제공자인 전통적인 성역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무 후 일괄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역할에 있어 변화, 근로형태의 유연화 및 그에 따른 은퇴과정의 다양화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육아 부담으로 인하여 자형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100세 시대에 적합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정경희 외, 2011).

둘째,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현재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F 경제 위기 이후 과거 보편화되어 있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져 상당수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인 퇴직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적 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의 활성화 방안, 감소하는 사적이전소득의 공적 요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더불어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제기되는 보험료부과의 비형평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중하 소득계층 사업장 가입자 소득에의 과도한 의존 현상과 연결된다. 현 제도의 급여 산식상 개인의 급여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어 소득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자영자의 하향신고가 사업장 가입자에게 큰 비형평성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고용체계상 자영자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형평성이 비단 연금보험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조세제도에서 일반조세가 누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일반조세는 부과기반의 협소함에 의해 중간 소득계층의 피용자가 높은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조세구조 및 부과대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들 또한 사회변화에 대한 제도의 적응이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취약집단에 대한 보장 강화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적절한 수준의 최저연금보장제도, 급여산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다양한 방안 중 한국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의 각 요소들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숙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어렵다는 점에서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노령연금의 향후 운영방향이나 국민연금과의 관계의 모호한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2008년 국회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설치가 늦어져 기초노령연금의 향후 운영방향이나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명료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능한 한 빨리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 중 한가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기초노령연금은 빈곤노인층을 선별·집중 지원하여 노후빈곤을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주 소득보장제도로 운영하는 선별적 공공부조안으로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베이비 부머의 빈곤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25) 동일한 내용의 정책과제가 이윤경 외(2011)의 보고서에서도 발전된 형태로 제안되고 있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전체 노인에게 1인 1연금을 국가가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베이비 부머에게 실질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가 구현될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의 빈곤문제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발생할 것이므로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 진입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명확히 하고 보완적 조치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 중 고용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수가 퇴직금을 당장의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과 결혼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노후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퇴직금중 일부를 연금화하여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높다. 퇴직금중 연금화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및 퇴직금 연금화 안을 도입하는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퇴직 이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더 높은 비율로 연금소득화한다면 은퇴시점과 공적 연금 수급간의 연령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의 단축은 연금수급권 확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최소가입기간 단축을 통해 베이비 부머의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단기간내에 베이비 부머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다. 현 시점에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킬 경우 2030년까지 1950 1966년생 출생 코호트 중 대략 2백28만 명이 추가로 노령연금을 신규 수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시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의 보편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가입기간(5년) 충족을 통한 연금 수급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입자들이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무연금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26]의 대상을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게 될 노후빈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자영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급한 상황이다.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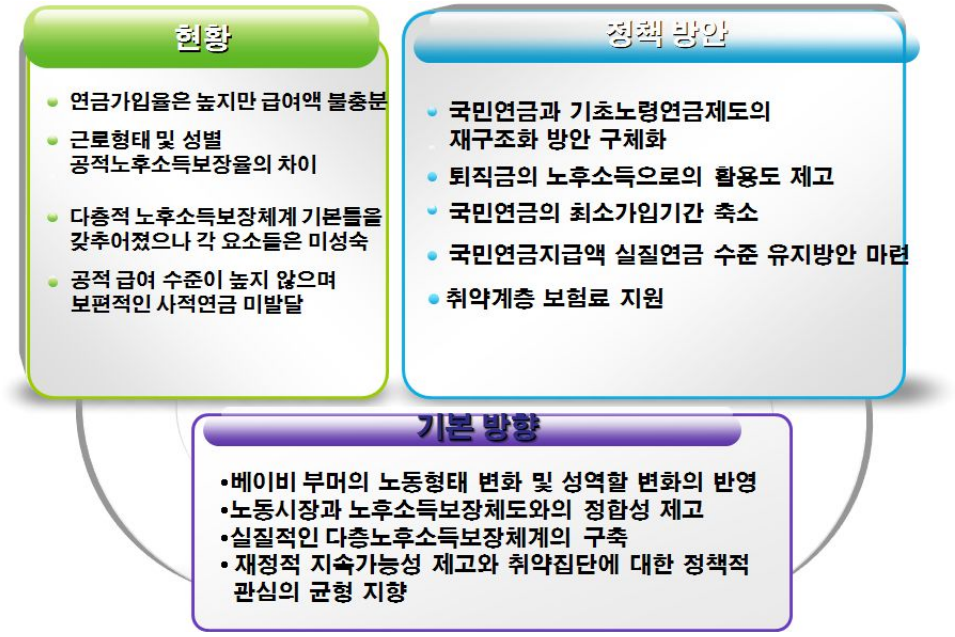

26) 201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의 1/3 지원을 시행할 예정임.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베이비 부머는 현재 40대 후반과 50대 중반에 있는 중년층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지는 않으나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노년기의 건강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건강실천행위,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서비스 욕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베이비 부머의 건강실천행위 중에서 흡연습관을 보면, 현재 흡연율인 23.8%인데 이에는 성별 차이가 커, 남자의 경우 46.4%인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 3.5%이다. 이는 과거의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 나타난 40대 후반 연령대에서의 흡연율과 비교해 보면,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여전히 절반정도가 흡연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거나 취업중인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현재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14]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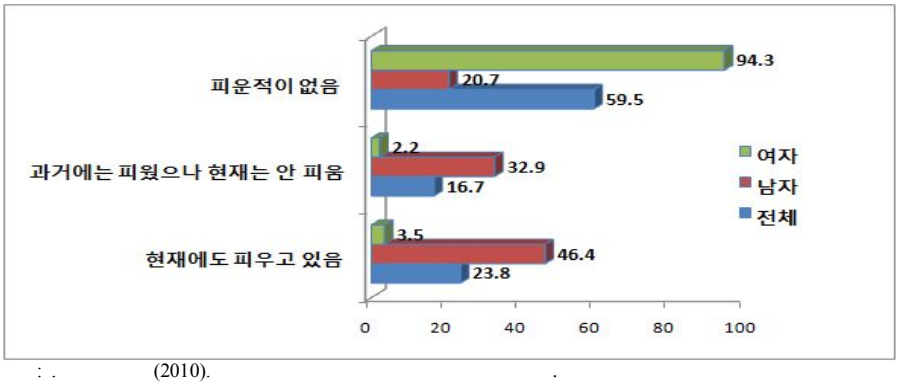

: . (2010). .

27) 본 내용은 제4차 포럼에서 발표된 베이비 붐 세대의 건강부문 실태와 정책과제 와 본 내용은 정경희 외 (2011)에 보고된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베이비 부머의 음주습관을 보면, 술을 마신 적이 없는 경우가 27.8%이며,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에는 마시지 않는 경우가 9.4%, 그리고 현재에도 술을 마시고 있는 경우는 6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약 3/4정도가 현재에도 음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50.2%가 현재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및 취업상태별 현재 음주율을 비교하면 남녀 모두에서 취업자의 음주율이 미취업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음주실태는 과거의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수치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수준인데, 남성의 경우 3/4이상이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거나 취업중인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흡연율도 높지만, 현재의 음주율도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베이비 부머의 68.5%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운동실천율이 남성은 67.9%, 여성은 69.0%로 남녀 간의 차이는 적은 수준이다. 성 및 취업상태별 현재 운동실천율을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취업자의 운동실천율이 미취업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여자의 경우 취업자의 운동실천율이 미취업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과거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의 추이로부터 보면, 40대 후반의 동일 연령대에서 상당히 높아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80.8%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부계층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장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질병치료 시에 부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 건강검진수진율이 남성은 79.4%, 여성은 82.1%로 여성의 수진률이 약간 더 높았다.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검진율을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취업자의 건강검진율이 미취업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여자의 경우 취업자의 건강검진율이 미취업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베이비 부머의 경우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수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유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취업자의 흡연 및 음주율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여자의 경우 취업자의 운동실천율이나 건강검진수진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의 강화 또는 근무환경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 4-14>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27)	(2,299)	(728)	(1,433)	(1,342)	(91)	(1,594)	(957)	(637)
	59.5	50.9	86.7	20.7	21.1	15.4	94.3	92.7	96.7
	16.7	20.1	5.9	32.9	32.6	37.4	2.2	2.6	1.6
	23.8	29.0	7.4	46.4	46.3	47.3	3.5	4.7	1.7
	27.8	23.7	40.7	11.2	11.3	9.9	42.7	41.1	45.1
	9.4	9.0	11.0	12.0	11.5	19.8	7.2	5.4	9.7
	62.8	67.3	48.4	76.8	77.2	70.3	50.2	53.5	45.2
	68.5	65.6	77.6	67.9	68.6	57.1	69.0	61.2	80.5
	31.5	34.4	22.4	32.1	31.4	42.9	31.0	38.8	19.5
	80.8	80.5	81.8	79.4	80.5	64.8	82.1	80.6	84.3
	19.2	19.5	18.2	20.6	19.5	35.2	17.9	19.4	15.7

: 2010 「 . (2011)

.

한편, 베이비붐세대의 식품섭취행태를 보면, 다양한 식품섭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유무에서 전체적으로 3/4이 음식을 통한 건강유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행태는 남녀간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득수준, 교육수준 및 배우자가 있을수록 식품섭취를 통한 건강유지노력이 크다.

[4-15]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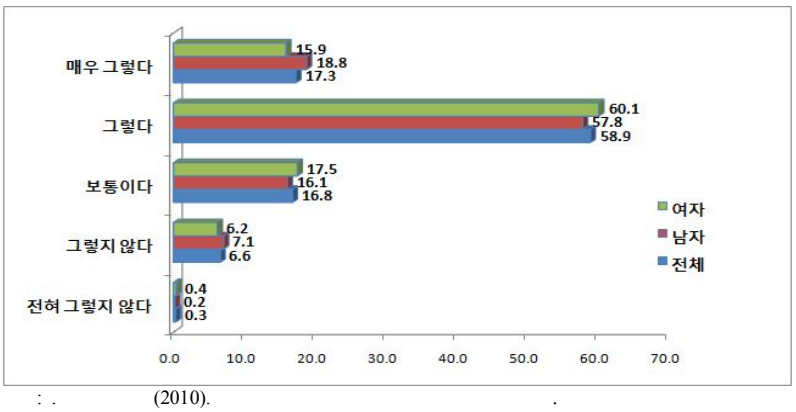

: . (2010). .

한편, 스스로 비만이라고 느끼는 45 49세의 주관적 비만인지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 38.80%, 2005년 39.44%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성별로 보면, 남성 경우 동 기간에 31.00%에서 36.52%로 늘어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46.47%에서 42.76%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성의 비만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비만상태를 느끼는 인지정도가 여성에게서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체중을 유지하거나 줄이려는 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1998년 25.87%, 2001년 41.33%, 2005년 46.01%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체중조정실천률도 여성의 경우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남성보다도 여성이 과체중이나 실제의 비만율이 더 높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체중조절(다이어트)의 의향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간에 주관적 비만인지도나 체중조절노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비만유발형의 식생활 등 생활패턴이 바뀌어 왔고, 그로 인한 생활습관병(만성질환)의 발병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실천행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15> : 45~49

(: %,)

2005	(=2,808)	(=1,370)	(=1,438)
	60.56 (1.7440) 39.44 (1.7440)	63.48 (2.6810) 36.52 (2.6810)	57.24 (2.5990) 42.76 (2.5990)
	53.99 (1.8190) 46.01 (1.8190)	57.28 (2.6930) 42.72 (2.6930)	50.25 (2.1910) 49.75 (2.1910)
2001	(=2,146)	(=1,107)	(=1,039)
	61.20 (2.3890) 38.80 (2.3890)	69.00 (3.2860) 31.00 (3.2860)	53.53 (3.2190) 46.47 (3.2190)
	58.67 (2.3750) 41.33 (2.3750)	59.85 (2.9270) 40.15 (2.9270)	57.51 (2.3750) 42.49 (2.3750)
1998	(=2,321)	(=1,178)	(=1,143)
	74.13 (1.4870) 25.87 (1.4870)	82.06 (2.0530) 17.94 (2.0530)	65.83 (2.3170) 34.17 (2.3170)

: 1998 .

: , . .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동년배와 비교하여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3.9%, 좋은 편이다가 50.4%, 보통이다가 34.7%, 나쁜 편이다가 9.9%, 매우 나쁘다가 1.1%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남자 또는 여자의 경우 모두 미취업자인 경우 자신의 건강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년기부터의 습관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바꾸기가 힘든 상태로 빠져들게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보건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4-16>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27)	(2,299)	(728)	(1,433)	(1,342)	(91)	(1,594)	(957)	(637)
	3.9	4.5	2.1	5.5	5.9	-	2.5	2.7	2.4
	50.4	54.9	36.2	55.3	57.2	27.8	46.1	51.8	37.4
	34.7	33.4	38.4	31.0	30.8	34.4	38.0	37.3	39.1
	9.9	6.5	20.4	7.4	5.7	32.2	12.1	7.6	18.8
	1.1	0.6	2.9	0.8	0.5	5.6	1.3	0.6	2.4

: 2010 .

베이비 부머의 만성질환율을 살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인 27.1%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30.6%) 높고, 여자(28.4%)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 및 연령별 만성질환율을 보면, 여자의 경우 연령계층 간 만성질환율의 차이(8.4%)가 남자(6.7%)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10.2%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만성질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나 특성별로 보면 비슷한 양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12.3%) 높고, 여자(13.2%)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 및 연령별 우울증상에서도 여자의 경우 연령계층 간 만성질환율의 차이(6.1%)가 남자(3.1%)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또는 방문순회형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비만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02년 같은 연령대보다 남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치매와 알츠하이머도 2002년 연령대 대비 결과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에게서 증가율이 높다. 반면 알콜성 행동자에는 베이비 부머 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5배 정도 높아 남녀차이가 큰 질병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정신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수도 2002년 대비 증가하였고, 청력상실 또한 증대하였다. 이외에도 남녀간의 차이가 있어, 비교적 경한 질환은 여자가 많고,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주증도가 높은 질환은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기준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이며 2위는 급성 기관지역이다.

한편 베이비 부머에게서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고혈압이며, 다음이 심장질환, 뇌혈과 질환의 순서이다. 반면 1인당 총 진료비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높다. 또한 2002년, 2005년의 동일연령군 조사와 비교해볼 때 베이비 붐 세대는 고혈압이 3위에서 1위로 나타나, 퇴행성 만성질환 발병연령이 이전 세대보다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오희철 외, 2010).

베이비 부머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기적 건강검진이 38.4%, 식이 또는 운동처방이 17.4%, 건강 및 질병상담이 13.3%, 건강교육이 8.8%, 스트레스와 우울증관리가 5.9%, -헬스가 4.8%, 질병관리서비스가 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기적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편이나 건강증진행위(식이 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경우도 45.4%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질병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겠다.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를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취업자는

정기적 건강검진이나 -헬스(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가 미취업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미취업자는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 질병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실정이다. 여성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하여 정기적 건강검진이나 건강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 4-17>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27)	(2,299)	(728)	(1,433)	(1,342)	(91)	(1,594)	(957)	(637)
	5.2	5.3	5.2	6.6	6.3	10.9	4.0	3.8	4.4
	13.3	12.6	15.5	13.0	12.9	14.1	13.6	12.2	15.7
	8.8	9.5	6.6	9.1	9.1	8.7	8.6	10.1	6.4
	17.4	17.1	18.2	16.1	16.1	16.3	18.6	18.6	18.5
	5.9	5.1	8.5	2.9	2.3	10.9	8.7	9.0	8.2
	0.5	0.4	0.5	0.5	0.4	1.1	0.4	0.4	0.5	
	38.4	40.0	33.3	41.7	42.8	23.9	35.4	35.9	34.6
	4.0	3.7	5.2	3.3	2.9	9.8	4.6	4.7	4.5
u- ( )	4.8	4.9	4.5	5.9	6.0	3.3	4.0	3.4	4.7
	1.6	1.3	2.3	1.0	1.0	1.1	2.0	1.7	2.5
	-	-	-	0.1	-	-	0.1	0.1	-

: 2010 「 」 .

우리나라의 건강관련정책기조는 베이비 부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건강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

28) 본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 보고된 건강한 생활 관련 정책현황에 관한 내용과 김남순(2011)의 주요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 등이 제시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는 1)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1차 예방서비스가 포함되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 해당된다. 2)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서비스는 2차 예방서비스이며, 국가건강검진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3) 전반적으로 1, 2차 예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차의료 중심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 및 자기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은 3차 예방서비스적 성격도 일부 갖고 있다.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는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있다[29].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치료 중심적이었고, 건강증진 사업체계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개선 방안으로 1)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보험자 역할 강화, 2)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강화, 3)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제공, 4) 평생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건강정보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공단지사 등이 다른 기관과 협력에 기반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함께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책지원기능 수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국가건강검진을 통합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검진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치의 사업과 연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예방의료서비스에 속하는 예방접종이나 건강상담과 같은 중재에 대한 급여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필수 예방의료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보험급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포괄적 의료제공모형(예: 주치의 제도)내에서 보험급여화를 추진한

29) 국민건강보험공단 : , 2010.

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보험자가 개인건강기록부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방의료서비스 적용과 실행의 핵심주체로서 주치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자료를 임상적으로 보완해서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되어 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제시된 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으로,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의 구축을 향해서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2020에서 국민의 건강 향상을 직접 추진하는 과제들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등 크게 4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4-16] Health Pla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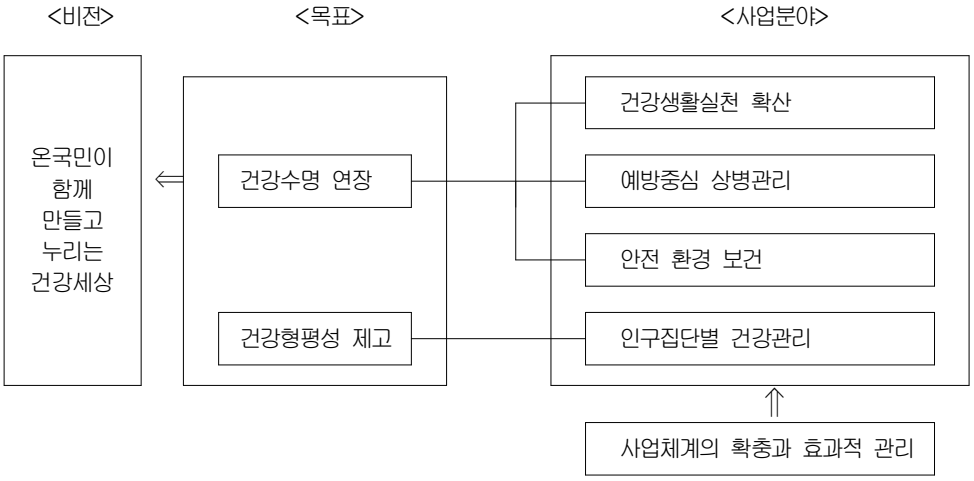

: (2010). 2020 .

2020에 포함된 중점과제에서 베이비 부머의 건강 지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우선 건강생활실천 확산분야에서는 건강생활습관 중에서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 등에 관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분야에서는 현재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이면서 예방관리를 통하여 유병률을 낮추고 조기사망을 낮출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관리분야로서 암 관리, 관절염, 심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이 중점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도 중점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의 근로자건강증진과제는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까지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 후 노년기 건강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008년도에「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 법에서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건강검진 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사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암 관리법」에 따른 암조기검진이 실시된다. 40세 이상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고, 암 검진은 5대 암 검진 주기에 맞춰 실시된다(표 5-5 참조).

일반건강진단은 매 2년마다 1회(단, 비사무직 1년 1회) 실시되고,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은 없고, 암 검진은 일부 본인부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기준 및 검진 주기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은 1999년에 시작되어 2001~2002년에는 5대 암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04년에는 5대 호발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2005년부터는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 대하여도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국민들이 금연 절주 식이관리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 교육 실천 프로그램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논의 중이다.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모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공하면, 만성질환군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만성질환위험군은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 공공병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터,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등이 된다.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설치된 건강증진센터는 취약계층(10%)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며, 부족한 부분은 민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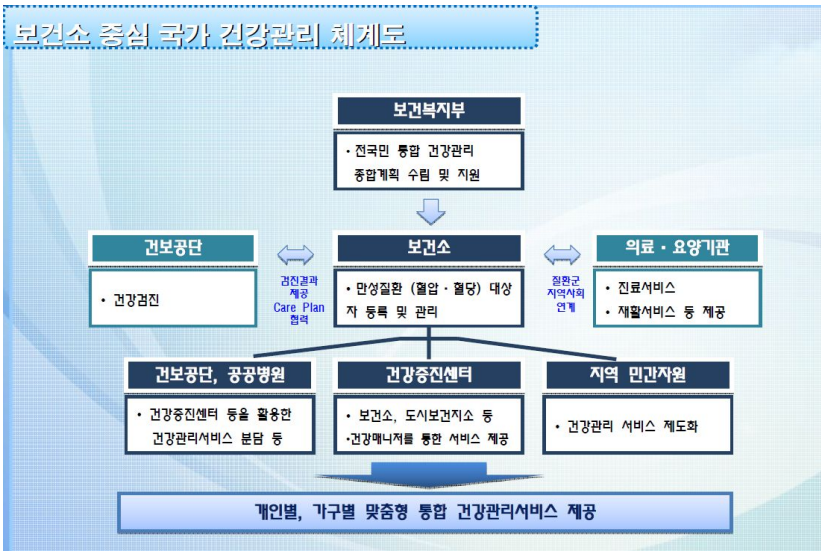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망 및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여 심뇌혈관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급증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은 더욱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 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그리고 기타 만성질환(관절염,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등이다.

2000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6년에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국민인식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1차 예방), 고위험군( )대상 질병위험요인 예방관리(2차 예방),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점관리 질병관리(3차 예방), 만

성질환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심뇌혈관 예방관리 체계구축을 그 전략 방향으로 하고 있다.

시 군 구 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등)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유병률 등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 홍보사업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 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조기발견사업을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혈중지질 수치를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며, 환자등록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자가관리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아직도 치료위주의 사후적 체계이며 전문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만성적이며 생활수급으로 이루어진 질환 특성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건강증신사업을 실시해본 반면 우리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건강관리의 초점이 되는 건강증신사업의 주요 전달체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건강검진의 경우도 건강검진율 자체는 증가하였지만 검진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2차 검진 수검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강검진과 치료, 질병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 단계에서 취합된 자료가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장기적 국민건강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일본, 미국, 캐나다의 건강증진사업의 내용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중심

30) 본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 보고된 건강한 생활 관련 정책현황에 관한 내용과 김남순(2011)의 주요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시작된 2010'은 그 동안 미국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연장 및 건강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였고, 국가 건강정책은 건강 위험인자 관리 및 개인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건강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에서는 민간회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윤태 외, 2009). 미국의 건강서비스는 크게 예방서비스, 진단서비스, 질병관리서비스 등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예방서비스로 미국 사 등은 위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 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판매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업으로 D는 매일 약 950만 명이 방문하고, 개인 무료건강관리서비스인 D를 통해 질병정보 뿐 아니라 육아, 대체요법, 헬스 등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을 세우고 이에 따서 50-64세 성인에게 예방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미국체계의 특징이다.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4-18). 지역사회 안에 위치한 점선으로 된 타원이 보건의료체계이며, 4가지 추진전략은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체계에 걸쳐있다. 자기관리/기술개발은 질병에 대한 것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기술을 말하는데, 전통적 보건교육을 포함하지만 교육의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건강결정인자를 고려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서비스 전달 기획 및 새로운 방향의 보건서비스는 의료체계에 있는 공급자들이 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좀 더 통합적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 지원은 질병과 치료뿐 아니라 건강 유지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정보체계도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CDC 등, 2009).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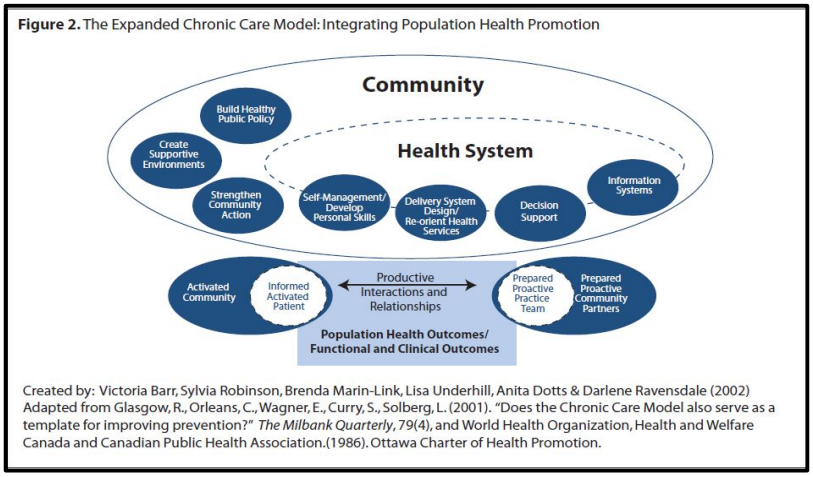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A A), 의사협회(A A)와 협력하여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특별위원회가 「지역사회 예방서비스지침(C)」을 보급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차의료서비스를 주치의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이 일차의료의사(,)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고 있는 , , A A (A) 프로그램이 있다. 2006년 초기에 호주 정부 위원회가 B A A "에서 A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치의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2008).

호주 국민들은 1년에 평균 5회 정도 를 방문하여, 환자들은 그들의 에게 예방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예방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이지 못했었다.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로는 의사나 환자 모두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예방적 중재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부족한 것이 거론되었다. 즉, 시간적 요소가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서 가 최선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매일 7.4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를 지원할 수 있는 간호사 등의 보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진료규모도 예방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준다.

건강위험 평가를 위해서 7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45~4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급여(B ; B)가 되고 있다. 또한 40~4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2형 당뇨병 위험도 평가(B 항목 73)도 급여되고 있다. 에게 호주 A C (A) A 에 의하면 가 수행해야 하는 건강위험인자 평가에 대한 권고안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A A 에 의하면 가 수행해야 하는 건강위험인자 평가에 대한 권고안 제공하고 있으며, 방 서비스 수행 전략으로 5A (A , A , A , A , A)접근이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인구보건( )의 목적은 전 인구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인구 그룹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해소시키는 것이며, 이 인구보건 방법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인구보건이란 건강상태지표로 측정되며,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 개인의 건강실천, 개별능력 및 기술, 유전적 요인, 유아기의 습관, 보건서비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건강을 의미한다(이상영 외, 2009).

한편 캐나다는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전략( )으로 건강증진전략, 건강보호전략, 예방서비스전략 등의 세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건강증진전략( )은 주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보건교육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건강보호전략( )은 규제나 금

지와 같은 법적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예방서비스전략은 주로 임상적 접근( )을 사용하고 있다(이규식, 2007).

예를 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공중보건( ) 접근법을 통하여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공중보건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공중보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의 주요 기능에 관한 기본구상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제시된 C 은 다음과 같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질병 손상 장해 예방 프로그램, 환경보건 프로그램, 건강 응급관리 프로그램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3차 건강 만들기 대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건강일본 21」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21세기에 있어서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한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즉,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의 실현,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치매와 같은 병상상태의 생활에서 벗어나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목적으로 하였다(이상영 외, 2009).

일본은 21세기의 국민건강상의 과제로 고령화의 진행, 생활습관병의 증가, 치매나 병상 노인의 증가 등 세 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 생활습관의 개선, 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 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9가지 우선분야는 생활습관개선분야로 영양 및 식생활, 신체활동 및 운동, 휴양 및 정신건강, 흡연, 음주, 구강보건 등이며, 질병의 예방분야로 당뇨병, 순환기계질환, 암 등이다.

[4-19]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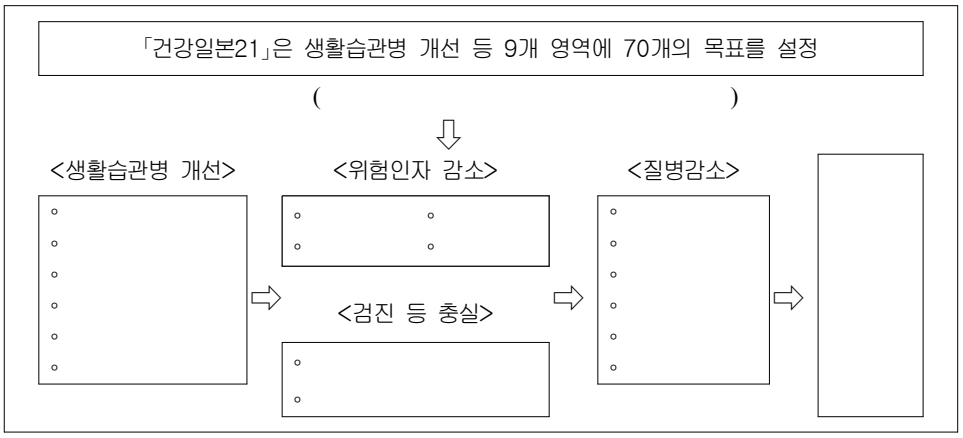

: (2009). 2020 . , .

일본은 2006년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보장법을 제정하고,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하여 대사증후군의 개념을 도입한 특정검진과 특정보건지도가 40세 이상~74세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새로 시작된 생활습관병 대책은 1차 예방으로서의 인구집단 접근과 2차 예방으로서의 고위험군 접근을 동시에 전개한 점이 이전의 정책과는 다른 점이다(이정수 외, 2008). 특히 대사증후군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지도의 목표가 명확해졌으며, 그 목표가 된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의 유병자 및 예비군을 적절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검진을 수행하다. 또한 검진에 의해 보건지도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지도 대상자를 계층화하는데, 대상자의 계층화는 적극적인 지원수준, 동기를 갖도록 하는 지원수준, 그리고 정보제공 수준 등 3단계로 판정한다

모든 검진대상자들은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이는 리플렛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담서비스는 적극적 지원( )과 동기부여 ( )로 구분해서 제공된다. 상담제공자는 대상자와 만나 생활습관을 검토하고 개선 목표를 설정하며 3 6개월에 후에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게 되어 있다. 적극적 지원프로그램은 개별 상담이외에도 그룹상담, 전화 지지, 전자우편 지지 등이 있다. 건강보험자는 건강검진과 상담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위탁해서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병원과 의원에서 대부분의 건강검진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이정수, 2010)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예방중심 체계로 전환하도록 해가야 할 것이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애주가별로 적절한 예방적 노력을 할 때만이 중년기 이후의 삶이 건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사후적 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중심의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보건사업의 보편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현재 공공보건사업의 사업대상 우선 순위는 주로 건강취약계층으로 우선 경제적으로 의료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는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 허약노인 등 사회적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건강검진의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실화를 추구한다. 진정한 건강검진과 치료, 질병관리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건강실천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운동실천율(68.5%)이나 건강검진 수진율(80.8%)이 높은 편이고, 음주율(62.8%)과 흡연율(23.8%)은 우리나라 성인 음주인구비율(2008년 68.6%)과 성인 흡연율(2008년 성인 27.3%)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 보다 흡연율 및 음주율이 더

31) 제시된 정책과제는 정경희 외(2011)의 내용에 기초하여 최근 논의를 보완한 것임.

높고,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율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40세 이상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2년에 1회(비사무직은 1년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여성취업자의 약 20%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근무환경이 취약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전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홍보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전체의 75% 이상이 취업 중인 상태이며, 남녀 모두에서 취업자의 음주율이 미취업자에 비하여 더 높고, 운동실천율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발병은 생활습관과 매우 관련이 높고,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는 물론이고 운동부족 등에 따른 과체중 등이 건강상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 흡연 및 음주량의 감소, 운동실천률의 증가, 피로 관리,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실시 등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90%가 좋다(보통 포함)고 응답하였으나 27.1%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0.2%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은 남녀 간의 차이보다는 연령계층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연령계층 간 차이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연령이 증가하면 신체기능의 쇠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질병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일반건강검진)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건강 위험요인의 발견 및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이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의 경우 해당년도 검진 적용대상(만 40세와 만 66세)이 한정되어 있어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건강검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의 검진율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검진 실시 이후 체계적이면서 포괄적 지속적 통합적 검진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의 만성질환 이전 단계인 고위험군

(건강주의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검진사후관리 조치를 유도하여 만성질환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보건환경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으나 서비스 제공수준이 미흡한 상태이다. 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영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위험 행태를 지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의 건강특성에 알맞은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및 건강위험의 평가,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서비스로 제공하고, 대국민 건강인식 개선 등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진정한 건강증진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행태의 개선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정기적 건강검진(38.4%) 뿐 아니라 식이 또는 운동처방(17.4%), 건강 및 질병상담(13.3%), 건강교육(8.8%), -헬스(4.8%) 등의 질병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 노화를 위해서 좀 더 개별화되고 고급스러운 건강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면서 비용을 부담할 의사도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만으로 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방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고찰하였던 바, 정부 차원에서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실행 계획은 아직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국, 호주나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 수준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목적과 내용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방서비스에 백신접종과 건강검진서비스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일본과 호주의 경우는 건강생활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검진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호주의 A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필수 예방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방서비스에 대한 표준가이드, 건강위험평가도구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성과 측정에 필요한 지표도 개발되어야 한다.

보건학적 측면에서 질병위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군과 정상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은 임의적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특정 요인과 관련된 초과위험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다른 특징들과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방서비스를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치료영역과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예방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특성으로 미국 CDC에서는 건강증진이 통합된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을 제시하였고,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일차의료 혹은 병의원에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의원제 모형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주의군에 대한 평가와 상담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현재보다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이 될 수 있다.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와 함께 만성질환자 관리율과 함께 건강위험인자 관리를 더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공공병원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30세 65세 성인 대상으로 개인별 교육상담 프로그램(건강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예방서비스(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 상담)와 만성질환 관리서비스의 통합 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공공병원 등은 특화된 예방서비스(예: 영양 혹은 운동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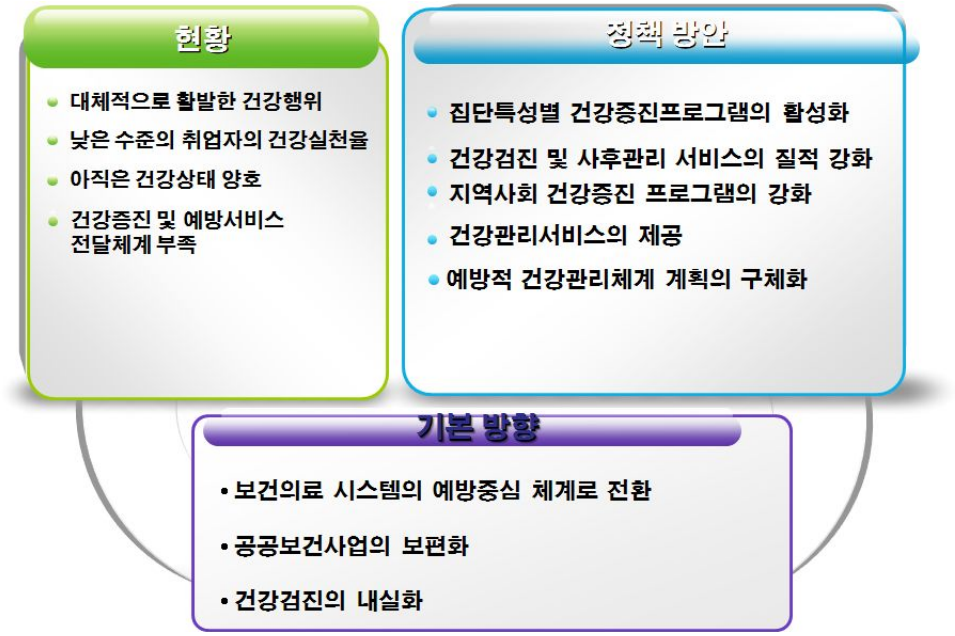

제5절 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베이비 부머 2,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실시된 전화조사결과(정경희 외, 2011)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의 82.1%가 주택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고, 교육수준과 월가구 소득수준과도 정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약간 높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수준에는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평균적으로는 1억 미만이 23.7%, 1억~5억 미만이 61.6%, 5억 이상이 14.8%

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고가 주택 보유율이 높아 5억 이상의 비율이 20.6%인 반면 중소도시는 동 비율이 12.1%, 농어촌은 0.9%에 불과하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를 보면, 중장년층의 경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49.3%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비율은 37.3%로 전체가구 42.9%보다도 낮다(손경환,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가가구의 은 5.6배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5.8배 보다는 약간 낮으며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4.9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차가가구의 경우 은 베이비붐 세대가 21.4%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22.3%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22.8%에 비하여 낮다. 베이비 부머의 주거비 부담을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자가 이 고소득층 5.7로 중산층 5.3배, 저소득층 7.8배이며, 차가 도 20.4%, 20.9%, 25.8%로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손경환, 2011).

< 4-18> PIR, RIR

(: , , %,)

			9,865.0	10,626.9	12,014.7	10,610.6
			126.7	113.5	108.4	89.5
			6.5	7.8	9.2	9.9
			16,707.9	16,759.2	17,338.6	17,477.3
			271.6	264.3	259.2	261.0
			5.1	5.3	5.6	5.6
			28,116.8	35,410.5	33,900.7	32,388.9
			502.7	517.7	550.2	518.9
			4.7	5.7	5.1	5.2
			20,313.2	22,738.4	19,516.6	18,392.5
			344.0	336.2	278.4	258.0
			4.9	5.6	5.8	5.9
			31.7	27.6	28.1	29.0
			120.7	106.7	94.7	91.8
			26.3	25.8	29.7	31.6
			56.3	53.6	48.8	54.1
			255.6	256.6	250.6	252.0
			22.0	20.9	19.5	21.4
			113.4	108.3	98.4	102.8
			494.5	531.8	497.1	504.0
			22.9	20.4	19.8	20.4
			61.9	54.7	42.7	49.9
			271.1	255.9	191.2	215.4
			22.8	21.4	22.3	23.2

: (2011)

베이비 부머의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베이비붐세대는 가계총자산 3.4억원 중 부동산 형태로 2.6억원, 약 7천만원 정도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950만원 정도의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는 부동산이 76.3%, 총저축이 20.8%, 기타자산이 2.8%수준이다. 부동산의 규모는 순자산 대비로는 90%를 넘는 규모이다.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편중 현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하다. 총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는 84.4%이며, 베이비 붐 이후 세대는 60.4%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정경희 외, 2011).

< 4-19>

(: ,)

	10,000.0	3,504.0	2,212.0	4,284.0
( )	100.0	35.1	21.8	43.1
	27,268	30,697	33,775	21,191
-	20,661	25,912	25,785	13,798
·	11,564	13,803	13,738	8,644
·	8,917	12,033	11,725	4,962
-	779	523	948	902
·	587	354	740	699
-	5,828	4,262	7,042	6,491
·	4,089	3,614	5,387	3,821
·	1546	559.4	1480.8	2381.7
·	193	88.4	174.0	287.9
	23,005	27,191	28,015	17,067
	4,263	3,506	5,761	4,124
-	2,884	1,932	4,084	3,052
·	2,880	1,930	4,079	3,047
·	1,380	1,573	1,677	1,072
	3,771	2,533	4,760	4,279
	2,912	1,971	3,619	3,321

: (2010).

베이비 부머는 현재의 노인층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자산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바 있다. 주택연금은 향후 노후에 유용한 소득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택연금에 대한 베이비 부머의 85.2%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23.0%가 활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 주택연금 활용의사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가 활용의사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활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0).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거주형태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 및 자녀의 결혼과 취업 등으로 인하여 거

주형태의 변화가 예견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측면은 이들이 현재의 주택규모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어디서 살고 싶어하는가 이다.

먼저 주택규모와 관련해서는 베이비 부머의 약 60%가 노후 주택규모 축소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 중 연령이 높은 54~56세 집단으로 갈수록 주택 규모 축소에 대한 계획이 있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고가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규모 축소에 대한 의향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월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주택규모 축소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1).

또한 주택수요함수[32]에 의한 주거수요 추계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는 전체가구보다 소득탄력성이 높은 반면 가격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가구보다 베이비 부머 가구의 소득탄력성이 더 큰데 이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주거소비가 투자성격보다는 실거주 성격의 소비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가의 소득탄력성은 전체가구보다 베이비 부머 가구가 더 높아 베이비붐 세대 가구가 소득변화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가의 경우 베이비 부머 차가가구의 소득탄력성이 전체가구보다 높다(손경환, 2011).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층에서 전체가구와 베이비 부머 가구의 소득타력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차가의 경우 소득탁력성이 높으며 가격탄력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베이비붐 저소득층은 소득변동에 민감하고 가격(임대료) 변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수요는 전체가구에 비해 소득 및 가격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특히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은퇴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하향조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현 주택을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중산층의 하향조정과 저소득층 차가가구의 비자발적인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32) 주택수요함수 추정 방법론은 통상최소자승법( )을 이용하여 주택수요함수 방정식을 추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첫 번째 단계로 항상소득을 추정하는 단계로 가구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고, 항상소득은 인적자본모델(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두 번째 단계로 추정된 항상소득, 주택가격, 기타 가구특성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최종적인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였음. 본 추정은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자세한 산식과 내용은 손경환(2011)을 참고할 것.

두 번째로 노후에 희망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와 건강상태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노후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은 성별,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는 노후에 농어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49.5%로 상당히 높은 반면, 여자는 32.0%만이 농어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44.8%로 가장 높으며, 중소도시 거주자는 중소도시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50.7%, 농어촌거주자는 농어촌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81.7%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현 베이비 부머는 노후에 거주지역의 변경은 일부 예상되지만 현 거주지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정경희 외 2011).

또한 베이비 부머의 노후 주택선택시 우선시 하는 조건은 주거 및 생활비용이 17.4%, 식사 등 일상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9.5%, 보건의료시설 접근성이 21.4%, 문화여가활동 용이성이 12.8%, 자연환경이 38.8%로 나타났다. 흔히 노후에 공기좋고 물좋은 곳 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사결과에서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노령기에 가까워지는 연령으로 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고, 보건의료시설 접근성과 주거 및 생활비용을 노후 주택선택시 우선 조건으로 제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경희 외, 2010). 다음으로 노후 고령전용 거주지에 대한 베이비 부머의 생각을 살펴보면 36.0%가 고령전용 거주지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1). 이러한 결과들은 베이비 부머의 주거지 선택은 삶의 단계에 따라 특히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선호를 갖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주거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친화적인 주거·교통환경이라는 주제하에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거관련 이슈중 일부만을 담고 있어 그 관심의 폭이 협소하며,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비 부머의 거주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55세 전후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여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점의 갭을 경험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55세를 전후한 가구의 소득과 주거비 변화를 살펴보면 55세 이상 연령계층은 소득이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주거비를 갑자기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천현숙, 2011).

베이비붐세대의 주택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미래 주거소비를 추정해 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은퇴 후 실현가능한 주거수요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특히 저소득 차가베이비붐세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주거비 부담능력이 감소하면서 적정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21]

은퇴 후 주거면적 감소율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저소득층은 중고

소득층에 비해 은퇴 후 누릴 수 있는 주거면적 자체가 훨씬 작게 나타난다. 특히 차가 저소득층은 2008년 42.7㎡에서 2023년에는 32.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정책은 신규 형성가구, 중저소득층, 고령가구 등의 특성가구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현재 주택정책은 소득수준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저소득층에도 속하지 않는 베이비붐 가구는 소득감소로 주거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주택정책은 소득수준이나 가구특성을 감안한 지원 대책 위주로 신규형성가구, 중·저소득, 고령가구 등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고령자 범주나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상당기간 주택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퇴로 소득이 감소한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주거수준 조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4-21>

	·	
		·
		·
	·	
		· ·

		3
		, ,
	1 2	

현재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 주택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형성 및 수요 다양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주택시장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상당수는 충분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 확보를 위한 주택매각(주택규모 축소 또는 임대주택 선택)시에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물려 주택시장에 일시적인 충격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3만 6만호의 주택 재분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61세 시점인 2015년 전후, 64세 시점인 2018년 전후, 71세 시점인 2025년경 3차례에 걸쳐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수욱, 2010).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단카이 세대(1947~49)은 2000년 후반 은퇴가 시작되었으나 주택시장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이미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다. 물론 단카이세대 은퇴는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회복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 버블이 붕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1946~64)는 장기간 동안 점진적 은퇴중에 있다. 그러나 약 80%에 달하는 높은 주택보유율과 퇴직연금등의 사회안전장치로 인해 이들 세대의 은퇴는 주택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고령자층에 친숙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이후부터 수립된 D 을 바탕으로 모든 DB 주택계획에서 고령자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주거유닛 내 시설 및 거주환경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FE(& F E E)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파트 내 리프트가 모든 층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내 A C 등의 시설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주거지내외의 각종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34)]

2006년 발표된 고령화대책위원회(C A)의 고령인구에 대한 보고서(A)'에는 고령화와 주거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고령자 주거기준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지 건설(E -F)과 배리어프리 사회(B -)의 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지 건설을 위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제시, 자원복지단체(,)에게 빈 아파트 임대를 통한 고령층 복지서비스 향상, 민간 개발업자들의 퇴직자 아파트( ) 개발사업 등을 장려[35)]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배리어 프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CA 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도시(A C) 를 목표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전철 및 도로시설의 개선, C 에 의한 모든 DB주거지역의 배리어 프리화, 휠체어로 승차할 수 있는 버스 공급, D 의 보급 및 의무화, 건축물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제안하고

33) 본 내용은 정경희 외(2011)에 보고된 외국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임.

34) FE 의 경우 2014년까지 싱가포르 내 모든 아파트의 리프트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약 55억 싱가포르 달러(약 4조 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35) 민간개발업체들의 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 임대기간을 다양하게 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절감된 비용을 퇴직자 주택개발로 유도하고 있음.

있다.

한편, 홍콩의 경우 홍콩주택협회는 고령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및 이슈중 하나로 커뮤니티 및 주거서비스 간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C A C C C C)로 현재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 서비스간 이동에 있어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고령층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고령층간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족 간의 상호 보호 및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DB(D B)는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독신세대 및 젊은층들이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의 양질의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높은 C F(C) 주택 교부금 및 독신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일부 또는 전체 임대를 통해 주택을 화폐화함으로서( ) 이들이 은퇴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한 고령층은 더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거나 35 45㎡내외의 스튜디오 형태의 소규모 아파트(A , A)로 이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과 주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노인주택 건설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을 위한 스튜디오아파트 건설 시범사업(A)이 있다. 싱가포르 주택청은 1998년 3월부터 노인을 위해 스튜디오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수혜대상은 55세이상의 싱가포르 시민권자로 현재 DB가 건설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별개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녀와 친구들과 인접하여 생활하길 원하는 노인을 위해 마련되는 주택사업이다. 스튜디오아파트는 30년 임대조건으로 판매되는 특수주거로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홍콩 주택국은 홍콩의 공공주택의 개발 및 관련 연구,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5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고령층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실행해오고 있다.

2008년 3월말 기준으로 홍콩 전체 60세 이상 고령자의 39%인 439,500명이 홍콩 주택청과 홍콩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 , 2008, 이현정, 2009에서 재인용).

홍콩 주택국은 고령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를 부여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원한 고령층의 가구상황(독거노인, 2명 이상의 고령층,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세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 주택국에서는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있어 명확한 분양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족세대에 대한 정의 및 자격 요건을 제시하여 모든 고령층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조건에 포함시켜 대상자 선정 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홍콩 주택국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프로그램은 저소득은 고령층 및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가족세대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판단 소득기준을 정하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독거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프로그램(E)'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 조건은 58세 이상으로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시에도 홍콩에 거주할 예정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명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성된 세대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지원할 경우에는 고령자 분양우선권 프로그램(E) 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서로 분양될 공공임대아파트 같이 사는 것에 합의한 2명 이상의 고

령층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36]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우선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F)은 2009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자격조건은 1개의 아파트에 같이 생활하는 경우와 2개의 서로 인접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홍콩 주택국은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유형으로서 현재 크게 2가지 유형의 공공임대 아파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C)으로 이 유형을 다시 계획적 특성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는 소규모의 아파트로서 내부에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편의 시설물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아파트(-C F)으로 이 유형은 입지 및 개발 유형에 따라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베이비 붐 세대가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방향하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베이비 부머가 생애주기상의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수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특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유주택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노후소득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주택은 가장 활용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가구들이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의 갭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주택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

36)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서에 동시에 서명이 되어야 인정된다.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생애주기맞춤형 주택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소득수준이나 고령자, 장애인, 모자가정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들은 고령자 범주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 한 특별히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주거정책공백기간인 55~65세 가구의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입주청약자격에 은퇴한 고령세대주에게 가점(55세 이상 은퇴자)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는 베이비붐이전 세대에 비해 베이비붐세대와 베이비붐이후 세대가 그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자가소유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주택자산을 매각하면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저소득 차가의 경우 소득감소는 곧바로 생활유지 문제로 연결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책이 있지만 은퇴 후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들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의 활용방안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취업 및 결혼 등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가구 규모의 축소에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주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보유주택을 부분 임대할 수 있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가구들이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의 갭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지원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은퇴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일시적 세제지원( )을 하거나 은퇴이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반적 정년연령은 55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이나 역모기지 가입연령이 65세부터이다. 따라서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10년 동안 소득감소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은퇴시점과 연금수급시점까지 갭이 발생하는 베이비붐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이나 국민연금 수령까지 주택연금 대상 연령조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주택연금제도가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자칫 역진적 소득재분배 제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경희 외, 2011). 따라서 중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김수봉, 2009).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을 하는 D(주택도시건설청)의 EC (E C)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F A(연방저당금고)의 , 고소득층은 민간금융기관의 모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주택금액의 상한액이 작고 이용비용이 저렴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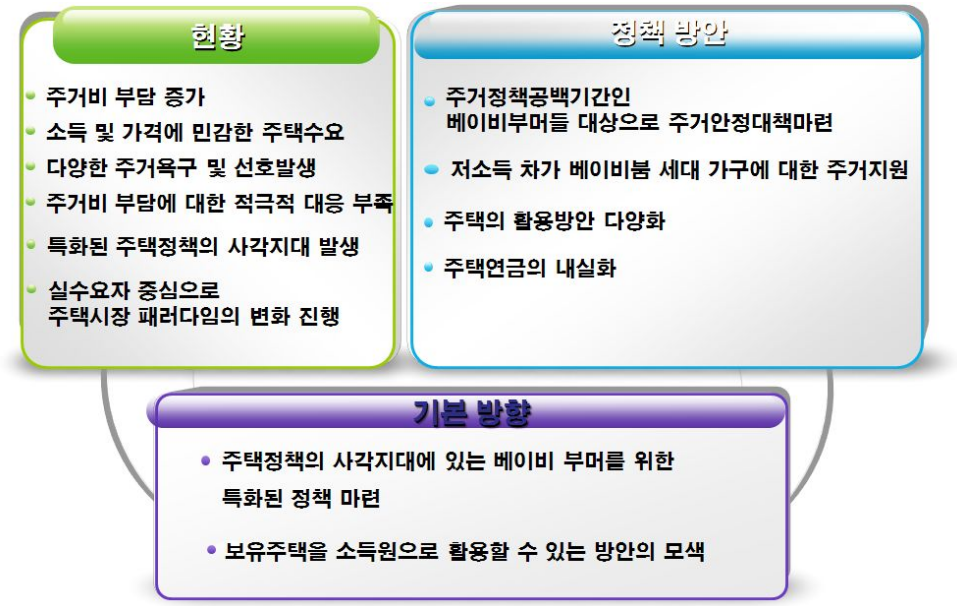

제6절 베이비 부머의 적절한 노년기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

2008년 3월~4월 실시된 전화조사 데이터 1000 케이스 중 베이비붐 세대 563명과 2010년 11 12월 실시된 전화조사 데이터 1000케이스 중 베이비 붐 세대 523명에 대한 재분석을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노후에 관한 인식과 노후준비 정도, 노후준비 상의 어려움과 관련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 부머가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업 정년이 54세부터 시작되면서 현 시점에서 베이비 부머들

이 점차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반면, 사회 내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교육 및 관련 기타 제도적 인프라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베이비 부머들은 이후 고령 세대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독립적이고 자기 개발 등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여 이전 세대와는 보다 차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방법이 모색될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실제 베이비 부머 중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베이비 부머의 78.1%는 노후에 대해 자주 또는 가끔 생각하고 있고 노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8.7%에 불과하여 노후에 대한 관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자주 생각하는 베이비 부머는 약 1/3에 불과하다. 즉 관심은 있되 그리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 모색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는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계층이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생활영위에 여유가 없는 계층은 노후생활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이비 부머가 노후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39.8%), 생활비용(34.3%), 치매 및 중풍(10.1%), 무위(8.3%) 등인 것으로 나타나 현 세대 노인과 마찬가지로 건강과 소득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걱정거리에 있어 직종별 차이가 확연하다. 사무직 종사자와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생활비용에 대한 걱정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전문가 및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무위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은 등 직업계층별 관심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합한 노후준비 시기에 대해서는 베이비 부머의 약 40%가 3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또한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0대 이전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노후에 대하여 51%가 걱정을 하고 있으며, 기대한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하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베이비 부머 사이에 노후준비를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못하며, 직업계층별로 그러한 고민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역별 노후준비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조사대상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노후설계의 영역별 준비도를 비교해 보면 건강은 19.5%만 준비를 못하고 있지만 여가 및 사회참여의 경우 각각 41.3%, 49.14%가 준비를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관련 준비도가 높다. 또한 직업별 차이도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주부 가운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준비와 여가에 대한 준비에 있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격차가 크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 가운데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가 영역의 성별 차이가 크다.

노후준비 영역별 노후준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은 경제적 여유와 관련되어 있고 건강, 여가생활, 사회참여의 경우 노후준비의 어려움은 주로 시간의 부재 및 경제적 여유와 관련되며 특히 타 연령집단(55세 64세)에 비해 시간의 부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참여 준비의 경우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도 타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 부머들의 생활주기상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 및 경험율을 살펴보면 28.2%만이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들의 비율은 24.4%에 불과하다. 베이비 부머의 42.4%

는 노후설계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36.4%는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가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 부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노후설계서비스 내용으로는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이 노후설계 교육 서비스, 전문가 상담 서비스, 맞춤형 관리 서비스의 순서이다.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가시화된 것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서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정책의 하나로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 과제를 포함하였고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노후설계 기반조성 과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이다. 실제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09).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에 기초하여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후설계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노후설계와 관련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던 것에 비하여 공적 영역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민간 기업, 컨설팅 기업, · , 종교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제공해온 서비스들은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제공되는 실정으로 각각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등이 다양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소정 외, 2008).

< 4-22>

	C		1
		,	50
	DB EA	/ ,	,

: . (2010). 5 .

아래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행복노후설계센터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 후, 민간 영역인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적극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나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본 센터는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 관련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서비스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그림 4-2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담서비스,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 교육 연계 및 자체 강좌를 운영하는 교육서비스, 노후설계 종합포털 「내연금」을 통한 노후설계 온라인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공단이 객관적 입장에서 공익적 재무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재무상담, 일·건강·여가 등 노후생활설계를 위한 -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상담, 영역별 사회자원에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23]

2011년 4월 기준 전국에 140개 행복노후설계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 동안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275,559건의 상담이 제공되었다.

< 4-23>

		2008	2009	2010
( )	607,758	107,410	224,789	275,559
(/)	7,512/342,583	-	1,385/56,382	6,127/286,201

상담의 내용은 크게 노후소득보장 상담과 노후생활 상담으로 나뉘어진다. 노후소득보장 상담은 고객의 지역별·개인별 생활수준에 맞는 노후 필요자금을 산출하고,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최대한 준비토록 설계해 주며, 나머지 부족 자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토록 상담하여 고객의 노후소득 준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노후생활 상담은 고객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건강, 일, 대인관계, 주거, 여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상담은 연령별로 특화되어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노후설계 교육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 교육과 취약계층 교육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은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식 교육으로 노후준비 필요성 전파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식 노후설계 교육은 학생, 근로자·자영업자 대상, 은퇴기 국민 대상 은퇴설계 교육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 교육은 교육과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가계자산과 저축관리, 건전한 소비습관과 대출관리 등 가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노후준비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후준비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노후설계교육과 연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및 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가입자,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이다. 또한 여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기관 433개소(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2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137개소), 여성새일센터(7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20개소))와 연계하여 여대생, 신혼부부,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민여성, 여성 장애인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의 경우는 노후소득과 노후생활 관련정보 제공, 노후 준비정도 자가진단 서비스,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노후설계종합포털 내연금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9.12월 2011.3월 기간중 방문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더불어 생생한 노후설계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인터넷카페 행복준사 를 운영 중이다.

< 4-24>

	20-30		◦ , ◦	
	40-50		◦ ◦ .	◦ ◦ ◦
	60 ~		◦ , ◦	
	20-30		◦ ◦ ,	◦
	40-50		◦ ◦	◦ ◦ ◦ ◦
	60 ~		◦ ◦	◦
	20-30		◦	
	40-50		◦ , ◦	◦ ◦ ◦
	60 ~		◦ , , ◦ ,	
	20-30		◦	
	40-50		◦ , ◦ ,	◦ ◦ ◦ ◦ ◦
	60 ~		◦ ◦	
	20-30		◦ ◦	
	40-50		◦ . ◦ 10	◦
	60 ~		◦	
	20-30		◦ ◦ ,	◦
	40-50		◦ ◦	◦ ◦ ◦ ◦
	60 ~		◦ ◦	◦

노후준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노후준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관의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프로그램 관심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베이비 부머 은퇴 전후 노년기 적응을 돕는 노인복지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 프로그램은 참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년부터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주축으로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름다운 중년학교(유성구노인복지관), 준고령자를 위한 사회환원 프로그램 인재마루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최고위 명강사 과정(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 등이 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들의 노년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최근 노후 준비를 위한 노년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고, 노년기 부부, 남성 노인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집단상담 형태로 치매, 대인관계, 우울증 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한 노년기 적응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년기 적응과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노년기 부부 대상 관계개선 프로그램(성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애니타임투게더(A)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부부사랑 아카데미(실버벨노인복지관). 남성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청주노인종합복지관), 스트레스 해소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대구노인종합복지관), 노년 우울증 예방 집단프로그램(신내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귀농돕기 프로그램 참살이 농부학교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와 같은 농어촌 지역 지원 서비스가 있다.

한편, 건강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실버플래너 육성 사업이 시범운영된 바 있다. 실버플래너는 2007~2009년 중앙모금회의 테마사업으로 노후설계를 위한 노인강사양성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노년기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육으로 사업 참여 실버플래너들과 이들에 의한 교육 수혜자들의 노후 설계 역량 및 노인인식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2009년 3년간 750명을 지역 노인복지관에

파견하고 있었는데, 노노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며, 노인의 삶 관련된 건강, 대인관계, 일자리 및 자원봉사, 노후 설계, 죽음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하여 시니어 층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시니어아카데미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노년기 예비 부부의 갈등 관리 및 부부관계 프로그램(잠실종합사회복지관), 중년남성대상 프로그램(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가하는 노후설계 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에 기초하여 노후설계 기반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국민연금공단의 행복노후설계센터와 같은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은 연계되지 않은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즉, 특정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노후설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마음, 주거, 죽음 등 각 영역들에서 개별적인 전문적 교육과 상담 및 실천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영역들을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콘텐츠의 제공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개별적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 모두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중요하지만, 보다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영역 간에 균형적인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이 차츰 더욱 요구된다.

현재의 노후설계 서비스를 네트워크의 독자성과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민간, 또는 사적 네트워크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서로 연계되어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 있다. 전문적인 기관들의 독자적 역할 강화와 더불어 각 기관들 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의 연계성 확보가 보다 강조되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체로 노후준비서비스는 생애 주기별, 또는 생애 과정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보다 생애 주기별, 그리고 생애 과정적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 노후준비, 생애디자인, 생애전략 등 다양한 용어 정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미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또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설계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각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이소정 외, 2010). 더불어 이들 기관들이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 자원을 보다 협력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4-25>

	( ) (4,50) C A	(
	(CA)	( )
	( ) ( )	( ) /
	( ) ( )	/
	( )	( )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들이 노후설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7].

첫 번째는 정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경우로 노인들과 그 가정에 노년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며 해법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하는 C C- E (E)라는 행정조직이 있다. 파리시내 각 행정구역 마다 E 설치(모두 15개)되어 있으며, 이에는 다양한 정보제공, 생애설계 상담 및 서비스와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코디네이터(C)가 배치되어 있다. E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노후생애설계를 위한 제반 정보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생애설계사의 역할보다 더 광범위한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공식 자격시험인 콩쿠르(C)에 합격해야 직무 수행 자격이 부여된다.

두 번째 유형은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국가이다. 영국과 호주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경우 A 가 대표적인 노후설계 제공기반인데, 이는 민간 씽크탱크(-)로서 올바른 퇴직 준비를 유도해 더욱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원래 퇴직 준비에 초점을 둔 조직이었으나 현재 생애설계( )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커리어 개발 및 퇴직 계획(C &), 생애설계사 자격증 코스(C), 석사학위 코스(- , -) 등 이다.

호주는 영리조직이 다수 있지만,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신력 있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호주정부는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부 및 비정부 관련 정보 제공위한 웹 포털인 . . 는 노인보

37) 각 국가별 상세한 내용은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현·한정란(2008). 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정리되어 있음.

건부(D)에서 운영하고 있다. C 또한 개인이 생애주기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은퇴 계획 포함)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서비스 기관으로 노후설계와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의 시장성을 반영하여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일과 삶에 있어 목표를 적시한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단체로 코칭, 코치교육, 트레이닝 워크샵,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로 은퇴를 다루고 있는 - (. .)이 대표적이다. 재정설계와 라이프스타일 설계가 모두 포함된 전체적인 은퇴계획( )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은퇴계획은 재정적인 계획 뿐 만 아니라 삶의 양식에 대한 은퇴계획( )이 포함되어야만 완벽하다는 모토아래 코칭, 워크북 제공, 훈련 을 주요활동으로 수행하는 민간 영리단체인 3 (.3 .)이 있다. 은퇴설계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A C A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유형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의 참여가 특징적인데 버클리대학 퇴직센터(:// . .)의 경우 퇴직한 교직원과 그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학습, 북클럽, 컴퓨터 강습, 회의 및 여행과 이벤트, 은퇴계획 선행, 자원봉사, 건강보험 상담, 재정계획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개최되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4주 또는 6주 동안 개최. 퇴직센터와 별도로 퇴직 및 은퇴 후 연금 및 보험 등 재정설계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으며, 퇴직과 관련 각종 법률 및 제도에 관해 분야별로 소책자들을 제공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

다. 노년기에 속한 개인은 같은 연령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이지만 동시에 각 개인이 상이한 인생경험과 상이한 자원과 상이한 가치관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이렇게 다양한 생애주기를 거치며 다양한 자원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별로 노후설계의 내용과 방법 또한 다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평성이 견지되어야 한다. 노후설계에 참여하는 주체가 특정 집단(예컨대, 도시에 거주하고, 학력수준과 직업계층이 높은 소위 상류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면 생애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원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직업계층이 높을수록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도와 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제도설계시 반영하지 않으면 자칫 노후설계가 이미 자원을 가진 특정층이 주요 혜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노후설계는 나머지 인생 후반부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만일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제1기, 2기 인생의 계층적 격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의 계층적 격차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노후설계의 영역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개인의 자원과 욕구에 따라 영역별 중요도와 비중은 달라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노후설계를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노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포괄성을 기반으로 하여 노후설계와 준비의 균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관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준비 욕구 정도도 다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생애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가장 강조되던 개인의 가치 영역이 한 순간에 상실될 수도 있다. 이때 다른 영역에서의 균형적인 노후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 예기치 못한 영역에서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보다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완충적, 중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영역들 간의 균형적인 노후준비를 기초로 다양성과 포괄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컨텐츠의 질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전문적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준공공재,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이소정 외, 2008).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생애 주기, 생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인들의 경제, 신체, 심리적 자원들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여러 영역들의 자원들을 통합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이미 건강, 재무, 여가 등 각 영역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국가 정책과 실천적 개입이 생애과정적 맥락에서 기존 제공되고 있으나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존 기관들 간에 연계가 어렵고, 각기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공적 기관에서의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잠재적 수요를 창출하며, 보다 국가가 개입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고령사회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적 개입의 필요성은 높다 하겠다.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차원은 공적인 노후설계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네크워크 구축, 표준화된 노후설계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노후설계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관리 감독을 통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기존 각 영역들에서의 전문 인력의 배치와 각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세대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역할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인증기관 시스템 등의 활용으로 국가 관리 감독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결국 많은 영역들의 통합을 요하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연계하고 각 영역의 전문성을 욕구에 부합하여 강화,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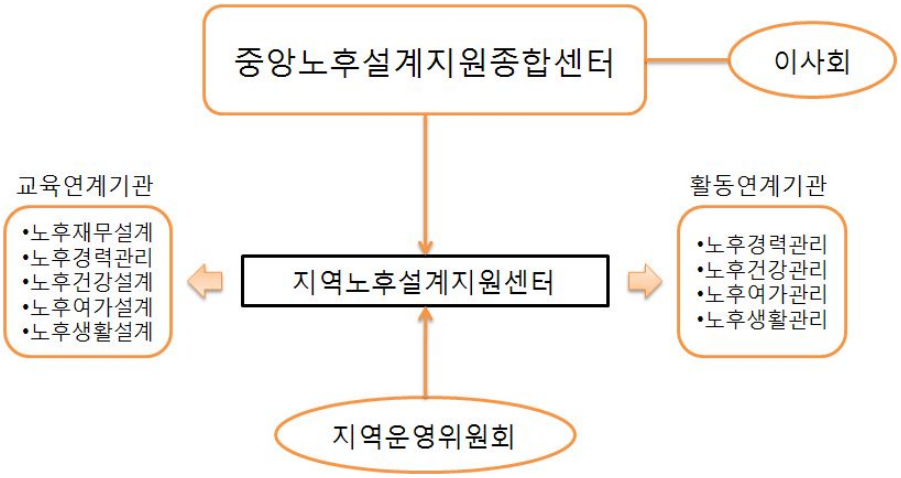

베이비 부머는 노년기를 바로 직전에 앞둔 세대로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생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노후준비프로그램은 다른 세대보다도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다 기술적, 실천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도 계속적인 근로활동에 대한 욕구가 이전 세대보다 높은 만큼 이에 관한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실천적,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후설계 지원체계를 통하여 노후설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 대상의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 개발과 더불어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컨텐츠 표준안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노후설계서비스의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국민 개개인이 노후설계를 할 수 있는 표준안와 더불어 국민을 교육하는 전문교육인을 위한 교육컨텐츠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후설계 컨텐츠에 기초한 노후생활 매뉴얼 또한 마련되어야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본인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컨텐츠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안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된 노후설계 컨텐츠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의 충실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표준안을 개발하고 자격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위탁기관 지정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설치, 노후설계서비스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법률은 독자적 제정목적, 입법목표도 상이하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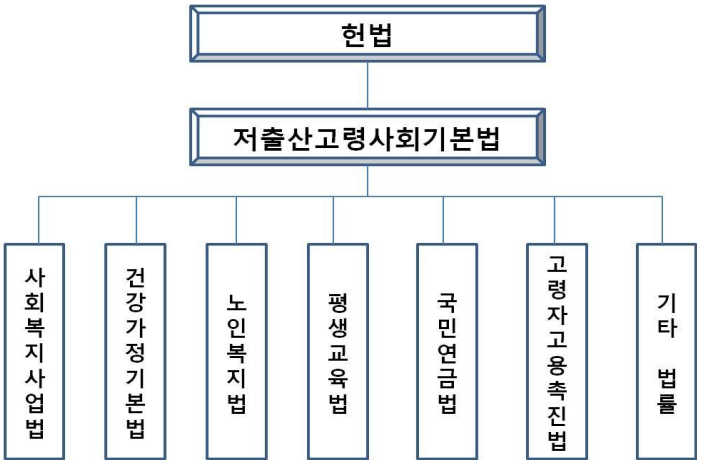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마련될 수 없다. 기업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정부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설정하며,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텐츠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및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직장중심의 노후준비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노후설계 준비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성에 기반한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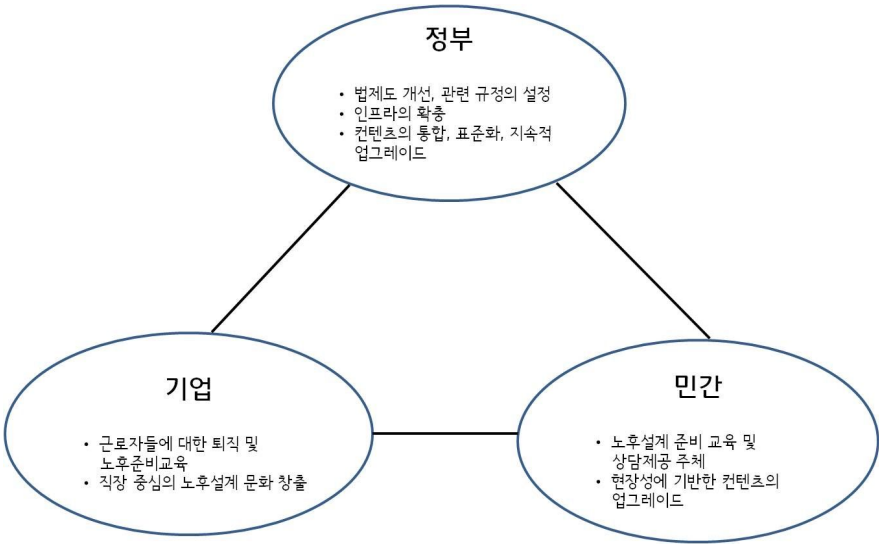

지금 노후를 시급히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생애주기에 있는 베이비 부머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서비스 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직장 내 찾아가는 노후준비서비스의 강화이다. 현재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함. 동시에 각 직장내에서 바쁜 일과로 인하여 실제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경험하게 된다. 즉, 실제로 노후준비가 가장 필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직장생활로 인하여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세대이므로, 직장 내의 찾아가는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성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관심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 이전 세대보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세계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업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베이비 부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직장 내 프로그램 활용, 또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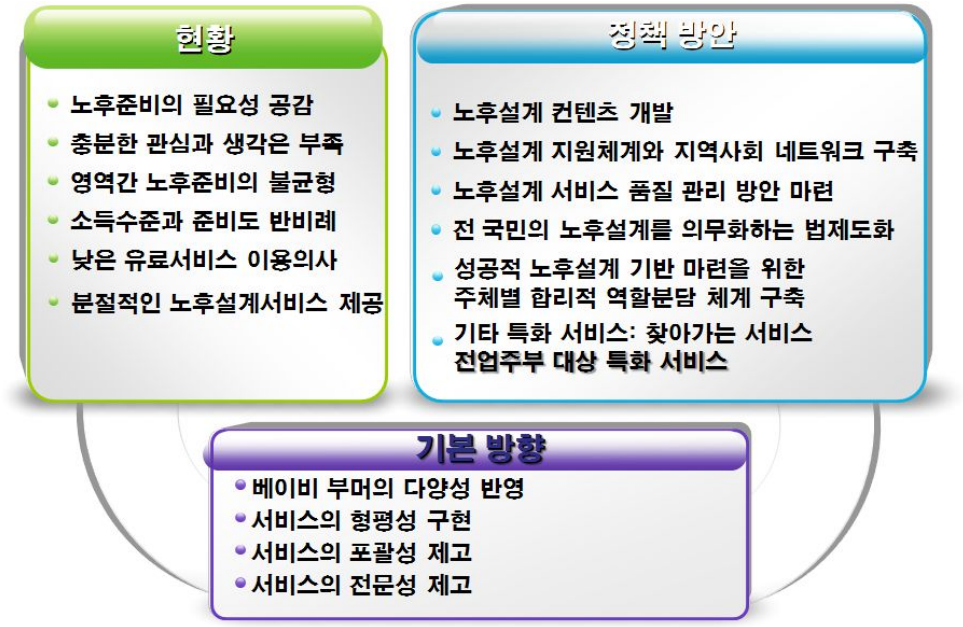

제7절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세대와는 달리 향후 고령화과정에서 최대 소비주도층을 형성할 세대로서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인데다가 부모 및 자녀 양육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논의가 상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세대의 욕구와 소비여력과 의향 그 자체가 바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당시장의 유망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관련기업들의 진입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최근까지 이루어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니즈, 소비행태와 사회적

욕구 등을 향후 주요 분야별 니즈와 향후 소비경향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38].

은퇴 후 일반적 재정상황과 노후자금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40.6%가 성공적인 노후조건을 경제적 안정과 여유로 인식하고 있으나, 은퇴 후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31.8%가 경제난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자가주택을 소유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안정적 노후자금원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는 85.2%이나, 이용의사가 있는 베이비 부머는 23%,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9.5%, 현재 주택이 없다는 응답자는 19.4%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과정에서 전반적인 재정사항이 크게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상황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 관련산업 전반의 활성화보다는 베이비 붐 세대 중 특정 세분화된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특정 품목과 서비스 중심의 활성화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63.9%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며, 70.9%가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소득창출(58.5%), 건강(16.2%), 자기발전(14.4%), 여가시간활용(7.5%), 사회 및 다른 사람을 돕기(3.4%) 순서이다. 희망하는 노후 일자리 유형으로는 31.1%가 주 5일 풀타임 근무이며, 68.9%가 주 5일 파트타임근로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70%는 노후 일자리로서 이전에 했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희망하나 30%는 전혀 새로운 일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83.4%는 현업이 중단 되었을 때를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노하우나 정보에 대한 부재가 은퇴 후를 대비한 준비의 부재로 연결 될 가능성 있다.

한편, 노후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베이비 부머의 54.7%가 건강악화를 들어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이 희망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정기적 건강검진이 38.4%, 운동처방이 17.4%, 건강 및 질병상담이 13.3%, 건강교육이 8.8%,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가 5.9%, -헬스가 4.8%, 질병관

38)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정경희 외(2010) 보고서에서 보고되고 있는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있음.

리서비스가 4.0% 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희망서비스에 건강검진을 많이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증진행위(식이, 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에 대한 경우 45.4%로 전반적인 질병 예방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활동에 관해서는 베이비 부머들의 42.3%가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 특히 60 63년생이 50 59년생보다 취미생활에 대한 응답이 더 높다. 베이비 붐 세대의 69.4%는 현재의 삶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7%는 노후의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여가산업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자녀 교육과 은퇴 후 재교육에 관해서는 베이비 부머의 소비항목별 지출 비중 중 15%가 교육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료품 소비에 13%, 음식· 숙박비에 13%, 교통비에 13%, 주거비에 10%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베이비 부머의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으로 높은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지출에 따른 결과이다. 자녀사교육비는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준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자녀양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의 영향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지연된다면 베이비 부머의 소비시장 또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설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43.9%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며,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단, 64.1%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함으로서 정보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에서의 제공 또는 무료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 상업적 정보서비스 제공업의 활성화 여건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노후 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베이비 부머가 부모를 위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9.2%,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2.4%, 병원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2.2%이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본인이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로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6.1%, 배우자에게 의존하겠다는 응답이 28.9%, 의료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1.1%,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해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노후자금, 일자리, 건강관리 및 요양서비스에서부터 여가와 노후설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니즈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제도운영 등으로 대응할 경우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등 새로운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베이붐 세대의 퇴직과 은퇴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되,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 붐세대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시장수요를 고려한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 등 시장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고령화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정책적 후순위 등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05.8)하여 산업화지원 기반을 구축하였고, 종합체험관서비스 사업을 통한 시장 인지도 확산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부산)를 구축(05.9 10.8, 국비 76억 원)하였다. 수도권(성남), 호남권(광주), 대경권(대구), 영남권(부산) 등 권역별 고령친화제품·종합서비스 체험관 구축을 통한 시장인지도 확산 기반이 구축되었다.

< 4-26>

2003	▪ .
2004	▪ ,
2005	▪ 8 19 ▪ 2005 4 . ▪ ( ) ▪ ▪ (2008.3) ▪ , ▪ ( ) 「 」 (2005.9~2010.8) - , ,
2006	▪ 「 1 5 (200 6~2010)」 ▪ ▪ (2006~2010)
2007	▪ 2008 ,
2008	▪ 「 」 ▪ DB , , ▪ 「 」 ▪ 7
2009	▪ ▪ .
2010	▪ - , , - . ▪
2011	▪ 2(2011~2015)

: (2011), 「 」 .172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08.7)을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복지용품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는데, 2008.7~2010년 복지용구 보험급여 1,526억 원('08년 132억 원, '09년 673억 원, '10년 721억 원)이다. 최근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헬스(-) 신산업창출 전략 수립(10.5)한 바 있다. 유메디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0~'12년, 국비125억 원)하고 있다.

업계현황을 살펴보면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864개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에 참여, 업체 평균 매출액은 15.4억 원(고령친화용품 산업실태조사, '09.8)으로 업체 증가율은 2006년 376개에서 2007년 415개로 10.4%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866개로 108.7% 증가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에 해당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계획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선시책 이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에 관한 사항은 거의 제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고령화는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그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행 기간 동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개발 및 지원 부족으로 산업 육성 기반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수요자 중심의 제품 개발이 미흡하고,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들이 인식이 부족하여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고령친화산업 정책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추진되어온 의료기기 등의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의 범주로 분류됨에 따라 기기산업과 정보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제2차 새로마지 플랜에는 식품산업이 추가 된 것 외에는 그 이전 단계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 및 14대 고령친화산업 총 34개 고령친화 전략품목의 관점에서 보면 불균형적인 현상이다. 새로마지 플랜 2015 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에는 일자리 사업,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 생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 제공 등의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 관광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등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이 아닌 복지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인복지 와 고령친화산업 의 개념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정책의 범주 또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 정책은 제품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서비스 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을 의미한다(이소정 외, 2010).

고령화에 따른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의 제한점과 문제점은 크게,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고령친화제품과 기기 및 서비스 관련된 정부나 민간의 체계적인 &D 추진전략 미흡 및 투자 부족,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부족,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미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강력한 재취업 의사와 현실적 경제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 은퇴 직후 시장니즈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즉 중고령전문인력파견업, 재취업교육서비스,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건강관리(항노화산업 포함)산업 등의 활성화 제약요인이 되는 법·제도상의 개선 추진 필요하다.

둘째, 고령친화제품과 기기 및 서비스 관련된 정부나 민간의 체계적인 &D 추진 전략이 미흡하고, 신성장동력 또는 융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 중이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자본금 10억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자체 &D 및 연구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정부 기술개발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고령친화산업체중 10억 미만 업체가 95%이며,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경우가 55%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D 예산 중 고령친화제품 지원액이 33.6억 원(전체 4.1조원의 0.0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고가·고기능 고령친화제품 대부분 스웨덴 또는 일본산이며, 저가·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고령친화용품 매출액 중 수입품이 3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시장 연평균 성장률('05 '08년) 27.6%로, 수입시장 연평균 성장률인 198.8%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화시대의 본격화에 대비한 기회선점과 글로벌 시장 지향의 성장성 있는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노력이 부족하다.

셋째, 비교적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기존제품과 및 정보서비스와의 융합 등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융합제품, 서비스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유헬스(-) 산업의 경우 제조·개발(·), 상품화(임상, 인허가, 보험수가개발 등), 서비스(운동, 식이, 요양)분야 등에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 일부 유헬스(-)의 경우 다기능적 복합교육시스템에 의한 - 인적자원개발사업(교과부, 07~09, 30억 원) 등의 관련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주로 기술인력 양성에만 치우쳐 종합적인 인력양성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은 대부분의 제품과 기기에 있어 원천기술 및 관련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부재로 경쟁력확보가 쉽지 않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확보가 곤란하다. 특히 관련 중소기업의 영세성, 대기업 시장참여 유인이 낮아 민간주도의 산업발전 모멘텀 확보가 어려워 산업발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은 현재 장기요양 관련용품 위주의 사업단체, 일부 대학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D 시스템, 실버제품체험관 중심의 산업발전기반 조성 차원의 공공기관만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유인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

산업의 국내 표준 및 해외 표준 정립 및 인증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 일상 생활용품에서부터 유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기술로 구성되는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일부용품과 기기 및 서비스의 연계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법 등의 다양한 관련 법· 제도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긴요하다. 그러나 정부정책 및 인프라 측면에서 기기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관련제도 및 인프라 구축, 표준화 구축 정도가 높지 않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관련 법 제정, 관련 규제개혁 등이 지연되어, 현재는 신성장동력 과제의 일부로 추진하거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39].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 구축 미흡하며, 일부 신성장동력 과제로 추진되거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중으로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산업기초 통계 등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현황 파악과 정책수립에 애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06.12)되었으나,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법에 따른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

기존 연구(2005, 2006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써 요양 관련 기기 및 용품, 주택, 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등을 지

39) 인포피아, 엘바이오는 통신지원 혈당, 혈압계를 개발했으나 통신사, 홈네트워크사별 다른 통신방식을 적용해야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중복 허가(FDA)로 출시 지연되고 있음.

칭한다.

기존 연구가 이루어진 2005,6년 당시 고령친화산업은 2007 8년 태동되어 2012년경 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고령자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전국민연금제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한편, 2012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현재 14대 매출액기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2.8원 규모이나, 2010년에는 약43.9조원 규모에 이른 후 그 10년후인 2020년에는 약 148.6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2010년 기간 중에서는 약 16.6%, 2010년-2020년 기간 중에는 14,6%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일 것으로 전망 2020년에는 모태산업[4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11년 현재 고령친화산업은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요양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당시 전망과는 달리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비록 2006년 고령친화산업 육성법 제정 등의 고령친화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발전 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 정보기기, 금융, 주택 등 여타 유망한 고령친화산업분야의 경우 각종 규제와 법제도상의 미비로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부진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유형과 시장규모는 2005,6년 당시 예비고령자로 간주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이 이전세대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당시 베이비 붐 세대는 '향후 50년간 인구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일한 연령군단으로' 약 1,000만명 규모의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으로 간주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축적하고,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노후 공적 소득보장이 더해져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실제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대 추정된 것으

40) 여기서 모태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주로 고령자, 예비고령자(베이비붐세대가 여기에 해당) 및 주수발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보았기기에 그 수요에 제한이 없는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칭(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로 평가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정부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와 실제적인 사업이 발달해오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시작되었던 일본이 경우도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품질 중시의 질적 성숙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제조업 보다는 주거산업, 금융산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현재 전체 소비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은 2만 여개의 실버타운과 7천여 개의 노인전문 병원이 있으며 80%이상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수봉 외, 2009)

유럽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해왔다. 최근에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네트워크(E E (E @E))를 구축하여 유럽 지역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독일 본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17, 18일에 제1차 유럽실버경제회의 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독일 북라인베스트팔리아 (-) 정부가 추진한 행사로 약 600명이 참가하여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차 유럽실버경제회의에서는 실버경제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특히 독립생활(주거, 건축, 신매체, 텔레커뮤니케이션), 관광, 스포츠, 문화, 재가서비스 및 쇼핑, 건강과 웰빙, 재무서비스, 지역간 네트워킹 부문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41]. 이후 2006년에는 제2차 유럽실버경제회의가 마스트리츠( )에서 열렸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11월 스페인

41) B 유럽실버경제선언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

안달루시아(A)에서 유럽을 움직이는 실버세대(
D E) 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4차 유럽실버경제회의는 2010년 1월 프랑스의 리모주( )에서 지역실버경제와 고령사회 전략: 우수 사례 를 주제로 열렸다. 유럽실버경제네트워크는 고령사회의 위기를 위협이 아닌 유럽 지역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이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2] 유럽실버경제네트워크는 지방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파트너가 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이소정 외, 2010).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개한 내용들은 /C C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안에 의거 / B 산하 특별작업반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배려한 규격개발지침(· EC 가이드 71)이 제정되었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사항을 제품, 서비스, 시설 등에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감능력, 신체능력, 인지능력 밀 알러지 등을 고려하여 정보표시, 포장용기, 소재, 설치, 사용자 조작성, 정비보관 폐기, 구축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장애인을 배려하는 국제표준화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용품의 일본공업표준( )은 일본복지용구생활지원용구협회(A A) 혹은

42) E @E 의 프로젝트:
- E E E E A E
- DE E DE - C E
E @E C C C B
C : 1.3 C / .
- E - E C
- C E A - ( )
E

- "C E - C A E
- AA EE - A A E E
- A - A E
- A - -

(사)일본재활의학회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A A를 원안 작성단체로 하여 제정된 고령친화용품 관련 표준은 수동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동·이승 지원용 리프트, 유도용 블록의 모양, 단차해소기, 주택용 전동 개호용 침대의 6 건이 제정되어 있다. (사)일본재활의학회를 원안 작성 단체로 하여 제정된 고령친화용품 관련 표준은 복지관련기기용어(의자·장구 부문), 복지관련기기용어(재활기기부문), 수뇨기, 스토마( )용품에 관한 용어, 스토마용품의 시험방법의 5 건이 제정되어 있다. 그 외로는 (재)일본규격협회를 중심으로 제정된 복지용구 관련 표준 1건(전동 휠체어 전자 양립성 요건 및 시험방법) 이 있으며, 일본의 기타 / C173 과 관련한 규격은 총 3건이다. (재)일본제품안전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인증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 )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2007년 7월 기준으로 129 종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복지용구는 지팡이, 보행차(롤레이터 및 워킹테이블), 수동휠체어, 간이허리걸침변좌, 이동식변좌, 목욕의자, 전동개호침대, 전동기립보조의자의 9 종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개발 및 그와 관련된 산업이 다양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센터(생활품질기술연구센터)는 케너기멜런 대학에 기반을 두고, 프츠버그대학교를 핵심파트너로 하여 노인, 장애인, 전문의들과 협력하여 노인을 위한 휴대용 건강체크장치에서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능형 홈 시스템을 목료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산업계와는 로봇공학, 의료장비, 가정제품,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을 대표하는 18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 이라는 명칭아래 유지쿼터스 를 활용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고도 에이전트 기술개

43) 관련 내용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유비쿼터스사회 리더」에 기초해있음.

발, 이용자 인터페이스 향상, 정보접근성 확보, 고령자·장애인의 이용 지원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하여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나가 정보접근이 원활한 보편적 디자인( )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정내에서 의료나 사회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은퇴 후에도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게 되어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서비스에는 응급체계(알람서비스 전화), 탐지기/모니터(활동, 화재, 가스), 라이프스타일 모니터링,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의 공동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AA (A A)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령자에게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모니터링, 안전 및 보안, 응급시스템, 사회참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E 회원국간의 공동 프로젝트로 2007~2013년의 7년간 약 3억5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의료기기, 노인기술, 건강, 스마트홈, 스마트 의료, 로봇,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 실용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관련산업의 발전여건은 현재의 의료수준, 의료기기기술, 기술, 웰빙(-)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적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트렌드의 도래는 세계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 및 의료수준은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

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후 경제활동과 건강상태, 노후준비 자금사정과 실질적인 니즈와 수요패턴에 부응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대응은 민간 산업 영역임과 동시에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측면이 결합되어 있어 공공복지 제공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와 본격 고령화시기로 나누어 접근해가도록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실질적인 니즈( )와 이에 부응한 시장형성의 속도와 규모가 크게 다를 것이므로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 활성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와 본격 고령화시기로 나누어 유망산업과 정책적 관심 산업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이들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 산업 구조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일부 고령친화제품의 경우 해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유망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D 기획과 이를 통한 선제적 기술 확보와 서비스개발이 중요하다.

넷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체계적 장기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관련 중장기적 과제로는 국내시장의 협소 등의 발전제약 요인을 고려, 글로벌차원에서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유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및 B 기반 기술의 비교우위와 베이비붐의 고령화로 인해 형성되는 국내시장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삼는 전략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부품소재 및 장비 업체가 핵심적 부문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이 중요하다.

< 4-27>

산업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중고령 전문 인력 파견업	은퇴 후에도 해당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파견업무 희망함	<미국> 약 $800억 <일본> 약$400억 추산.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한번도 2%대를 넘은 적이 없으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점유율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장점이나 정규직과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	<유럽> 1990년대 중장년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이전과 자리회전 모델 실시 <일본> 대표적 파견업체인 '파소나' 2,369억 엔 매출('08년)
재취업 관련 교육서비스 산업	중고령층 퇴직가의 재취업 관련 서비스를 원함	많은 선진국에서 실직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등 정부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제공함	복지적 측면이 강해 국가가 실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뉴딜 50플러스'라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제도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함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낌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싶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낌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유럽>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관리 자문업이 한국에 비해 많이 발달한 상황임	2020년: 185,241억 원	소유자산의 불균형이 나타남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함 (낮은 금융자산 + 높은 실물자산) 부동산을 통한 소득창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음	<미국> 은행,증권사,뮤츄얼 펀드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및 Life cycle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며 노후에 대비함

건강관리서비스산업	고령화로 인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 프로그램의 필요성 느낌	<미국> 2010년: $57억 2015년: $33억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시 시장규모: 약2조원(2014년) 3만8천명 일자리 창출 예상됨	'건강주의군'에게 영양, 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	<일본> 2008년 정부 주도로 시작, 현재 3042개 병원, 의원과 139개 전문관리회사가 보건지도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적극 도움
유웰니스(u-wellness)산업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싶어함	2011년: $1,071억 2013년: $1,487억	2011년: 2,100억 원 2013년: 1조6,814억 원	국내업계의 관심은 증가추세이나 성공사례가 없어 시장창출 지연됨	나이키와 애플의 NIKE+iPOD Sport Kit'
항노화산업	자신의 외모, Well-being,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비교적 관심이 많음 치료목적의 항노화 제품뿐만 아니라, 외모관리 서비스로서의 항노화 서비스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	<미국,유럽, 일본> 매년8.9%급 성장할것으로예상됨 2008년: $1,612억 2010년: $1,895억 2015년: $2,919억	2020년: 9,000억 원 2020년: 27조원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임 항노화 식품의 경우(세계시장의 0.5%차지) 산업의 발전 미약함	<미국,유럽, 일본> 항노화서비스가 예방, 진단,관리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발전 <프랑스,독일,일본> 일반화 되어있는 수(水)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함
여가 및 관광산업	은퇴 후 고령자를 위한 관광레저·스포츠 산업	OECD국가들은 GDP의 3%~9%를 여가비용으로 사용	2006년: 총 여가산업규모 71조 3천여억 원	여가용품, 여가공간, 여가서비스 등 여가활동에 대응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미국의 '엘더호스텔'은 55세 이상 노인에게 교육과 여행서비스를 제공, 유스호스텔의 고령자판
실버주거	중산층도 고려한 고령자 주택 등	중장년층의 급격한	2010년: 26,778억원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일본> 고령자용 임대

지 및 주택 등 쾌적한 생활 공간 관련 산업	다양한 고령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느낌	증가는 임대보다는 자가 소유주택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고령자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임	2020년: 75,045억 원 ※주택개조 시장 2010년: 478억 원 2020년: 2,386억 원 ※실비(임대) 고령자 주택공급시장 2010년: 9,840억 원 2020년: 8,933억 원	자산상황에 따라 잠재수요의 폭이 넓어 비즈니스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시장의 미성숙으로 고령친화주택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함	주택에서 주택안전Repair 서비스, 사고방지 Total서비스에 이르는 폭넓은 시장이 형성되었음 <미국, 일본>민간이 고령친화주택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유헬스 (u-Health) 서비스 산업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베이비 부머들은 의료비절감의 필요성을 느낌	2007년: $1,058억 2009년: $1,434억 2011년: $1,893억 2013년: $2,540억 연평균 15.7% 증가 ※홈&모바일 헬스케어시장 2010년: $57억 2015년: $336억	※만성질환자의 u-Health 시장규모 2012년 고혈압 환자 : 6,926억 원 2012년 당뇨환자 : 2,741억 원 총: 약 2조 원(추정치)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여, 표준화 및 법· 제도가 미진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수준임. u-Health의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 임.	<미국> 만성질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홈&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한된 예산을 받는 노인 보호시설에 널리 보급함
의료기기 산업(노인 생활 편의기기 중심) 산업	영상진단, 치과용, 의료용 소모품 이외도 노인생활 편의성 중심의 기기수요 증대	2009년: $2,215억 2012년: $2,660억	2009년: 3.6조 원 연평균 13% 성장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수준	<EU> 의료기기 S/W검증 의무화('10.10) <미국> IEC의 강화된 성능심사기준 적용 예정('12.6 시행)

건강 기능 식품 산업	고령화로 인한 생체기능 저하를 막고 질병발생 위험을 감소하며 건강유지욕구 크게 확대	2008년: $2,798억 연평균 8.2%성장	2010년: 약 2조 원 연평균 10%이상 성장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초기 성숙기로 접어들었음	<미국> 1994년 건강기능식품 건강 및 교육법 제정으로 국가지원정책과 의회의 특별예산 지원
노인 장기 요양 관련 시설, 용품 및 기기, 서비스 산업	급속한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에도 건강하며,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증가함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함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이라는 가격적인 요소 이외에도 높은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도 고려함	중국,인도 등의 고령화가 진행 될 경우, 거대규모의 고령친화제품시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비율을 65세 이상 노인의 14.8%로 잡을 경우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명 (추정치)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시장규모 2010년: 4조 9천 억 원 2020년: 9조3,661억 원 ※시설요양 서비스 2010년: 7,006억 원 2020년: 42,293억 원 ※재가요양 서비스 2010년: 12,774억 원 2020년: 80,887억 원	고령친화용품 제조·유통하는 기업의 평균 자본금이 1억 300만원에 불과할 만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었음 실버용품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생산 및 유통체계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부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노인복지용품이 혼동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이 필요함	<영국> 커뮤니티케어법을 통해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로서 확립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 중고령 친화산업이 3배 이상 성장함. <일본> 고령친화제품 대여, 가정도우미서비스 시설 등 의료서비스 업체가 활성화 되어있음 시설요양보다는 재가요양을 장려함 <서유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재정조달과는 무관하게 나타남

.

고령친화직업과 일자리를 겨냥,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능력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실제 현장 맞춤형 또는 기업니즈에 부합한 재취업과 연계하는 인력파견업의 활성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에 대한 소비선호에 부응한 민간교육기관의 활성화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중고령인력파견업의 경우 중고령파견업 관련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확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조건 완화 등의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재취업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교육·복지·고용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안 조정 및 부처 간 분담 및 연계차원에서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교육훈련촉진법 등) 및 부처 간 업무조정 또는 교육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와 추진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중·고령자 재취업 교육과 관련된 주요 관련법인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평생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인복지법 중 중·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 시설 관련 규정이 전부이며(노인복지법제36조1항3호), 동 법에서 노인교육시설은 여가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중·고령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평생교육법에는 중·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조항 없다.

건강관리서비스와 금융자산 관련 자문 민간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후 건강관리 및 금융자산,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에 부응한 시장형성을 고려, 이들 산업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요양 및 질병치료 수요와 정부의 공적 지원 부담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민간 서비스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추진이 요구되며[44], 항노화산업의 경우 수(水)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기존 건강보험의 확대적용 관련 제도개선 검토,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운용, 신탁업무, 자산종합관리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시스템 형식으로 전

44)
. : 2008 4 , (3,042), (139) (2009)

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버주거지 및 주택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족 환경 등의 특성 고려한 유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 및 유헬스(-) 산업의 장기 발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선점의 기회가 주요 선진국(미국과 일본)에서 공통된 현상인 만큼, 협소한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와 유헬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차원의 장기발전 전략과 발전기반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고령친화기기, 정보 분야는 전 세계 고령자들의 공통 수요인 건강한 삶과 웰빙(-)이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주요 부문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시장에서의 출시 실적누적을 통해 향후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이 가능한 부문이다. 그러나 현재 신성장동력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와 유헬스(-) 산업의 육성발전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들 산업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으로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및 유헬스(-) 산업 활성화 차원의 의료법 개정[45]과 함께, 대학병원 임상·개발 및 개원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원격진료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글로벌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후와 본격 고령화시기의 실질적인 니즈와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시 필요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핵심 의 선제적 개발 &D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치료재료, 융합기기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에 대한 &D를 집중 지원하여 국산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유웰니스(-) 관련 운동기록 평가·운동통합운영 , 영양분석관리 , 건

45)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원격의료 우선 허용 후 성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개선

강평가·분석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에 대한 &D 확대 및 상용화 기술 &D 강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및 급여지급 범위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요양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이 분야의 활발한 기업 양산과 함께 단가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질의 저가제품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 시장 확대의 가능성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 중 고령친화제품을 급여대상 복지용구에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시장 선점의 기회도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고령친화산업과 베이비붐 세대 관련 유망산업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기업계수요, 기술개발 수준,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고령친화산업 및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의 인력수급 기초조사 및 인력수급현황,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한 인력양성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고령친화산업분야 필요 인력양성과 관련, 기존의 지역별 또는 기업의 연구센터 설치 및 설비구매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양성보다는, 대학과 중소기업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장기 &D 프로젝트와 신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조사와 통계기반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 위주로 전환해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고령친화산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관련제품과 서비스분야의 혁신적 창업활성화,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서비스 니즈와 수요특성, 글로벌시장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하여 현재의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제 국내외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수요, 고령친화산업 분야 기업의 진출의사, 장애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긴요하다.

더불어 일부 출시 중이거나 출시예정인 고령친화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시장 조성차원의 시범사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46] 확대 등 조기 시장조성 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출시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고령친화의약품 및 용품,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유효성 평가체계 구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화, 최저품질 기준 마련 등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유헬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표준화·인증체계 확립 및 유효성평가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산업은 기업 간 연계와 공동 시장조사와 신제품 및 서비스의 공동개발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업계 단체 및 연구기관 지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방지 관심증가와 함께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노화 산업은 항노화 관련기업의 클러스터, 항노화 센터, 노인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을 통해 항노화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수립 및 추진이 중요하다. 성장동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령친화산업(베이비 부머 포함)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분야별 발전시책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사전에 수립해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 전략계획 수립 부처와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

46) 복지부가 2010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추진 중(총 6개 지자체 시행, 2,200여 명에 바우처 제공)

고령친화산업 관련 통계를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은 분야별 통계 관련기관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정보 및 통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담당부처의 실행체계와 함께,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상황 점검, 각 부처 쟁점사항 및 이견조율 및 고령친화산업 발전기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 모니터링 실행 거버넌스 마련을 검토하도록 한다[47].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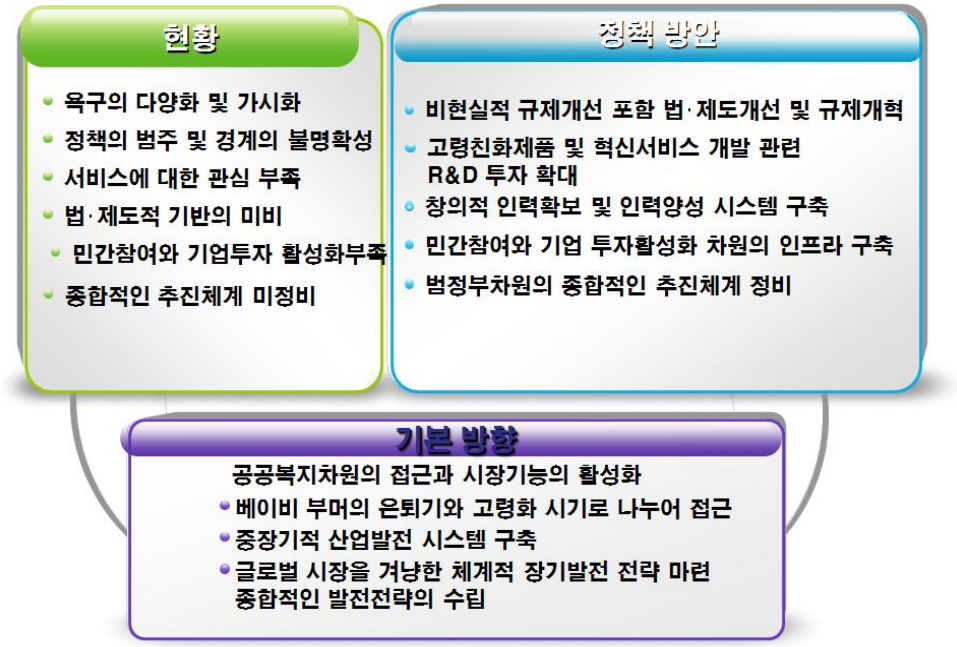

47) (예시) 총리실 산하 (가칭)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D 과제 발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각 부처 추진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고령친화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친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추가반영(발전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재원확보 및 배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

05

KIHASA

5

본 연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한 베이비 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을 구성하고 매월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자료를 재분석 하거나 필요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출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도출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베이비 부머의 양적 규모와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가 요구된다. 공공이나 민간의 참여만으로는 베이비 부머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세대 노인과는 다른 특징과 욕구를 갖는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의 특성을 반영된 특화된 서비스와 정책 개발과 동시에 정책의 기본기조의 변화 즉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 정책에서 전제하였던 평생고용, 전통적인 성역할분담, 기본욕구의 충족 중시 등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제도는 별개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서는 안되며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참여행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주거행태 또한 노후소득의 충분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정책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베이비 부머의 개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들이 적절한 노후를 설계하고 향유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요구된 노후설계 서비스와 고령친화산업 영역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베이비 부머가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연장과 정년보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전진적 퇴직제도 적용,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고령친화성 제고, 자영업 지속성 제고 및 창업지원 및 베이비 부머 개인 차원의 노력 경주가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다양한 인식과 동기에 대응한 맞춤형 자원봉사활성화 및 여가활동 활성화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 둘째 다양한 특성에 대응한 맞춤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셋째 자원봉사관련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 넷째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여가인식의 강화, 여섯째 여가활동 비용 부담 완화, 일곱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이다.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구체화, 퇴직금의 노후소득으로의 활용도 제고,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축소,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적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강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계획의 구체화, 건강증진과 예방이 통합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구축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정책방안은 베이비 부머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정책공백기간인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활성화하고, 주택의 활용방안 다양화하며 주택연금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베이비 부머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노후설계를 실시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노후설계 컨텐츠 개발,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전 국민의 노후설계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를 위해 특화된 노후설계서비스 개발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라 활성활 될 것으로 예견되는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정부 &D 투자 확대,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가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구현될 때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전략의 효과성이 향상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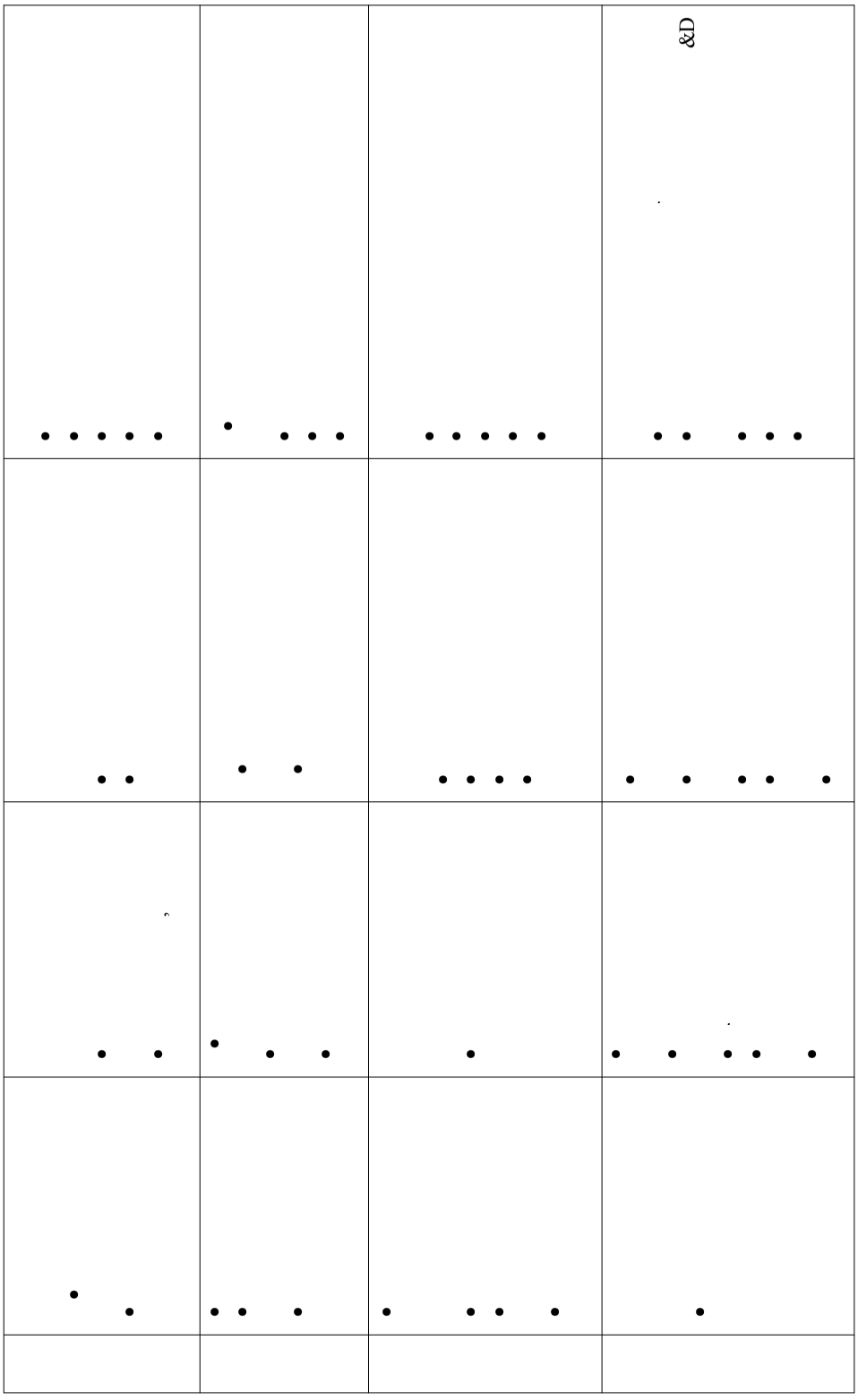
&D

강 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20), .95-116.

강병구, 윤명수(2003). 근로소득의 불평등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경제발전연구, 9(1), .155-175.

강병창, 박병현(2010). 중고령여성가구주의 연령특성별 빈곤 및 저소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0), .1-29.

강성호, 김준영(2007).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경제학, 12(2). .89-118.

강성호, 임병인(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25(2). .55-85.

강성호, 김준영. (2007).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경제학, 12(2). 89-118.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6(3), .75-107.

강창호, 박창수(2009). 주거만족도가 베이비 부머의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2). .99-10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고정민(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E .

구인회, 임세희(2007).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악화의 요인분해-개인근로소득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겨울호), .5-27.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권현정, 박화옥(2009).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복지관점에서. [illegible], 28(3). .535-553. ※연도숫자가 다름

권혜자(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김경아(2008). 국내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연구. [illegible], 32(0). .79-107.

김경아, 강성호(2008). 우리나라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연구. [illegible], 1(3). .21-52.

김기홍(2008). 중고령자 진로전화 지원 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기홍(2011). 베이비 부머세대의 진로전환인식실태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 제 6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24-55. ※2010은 있는데 2011이 없음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illegible], 29(1), 203-216.

김미령(2011). 베이비붐세대, 세대, 준고령세대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연구. [illegible], 51(0). .7-34.

김상철(2010). 베이비붐 세대의 역모기지 이용의사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호(2003). 공적연금자산과 가계저축의 대체효과: 독일 패널테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illegible], 51(4), .33-55.

김상호(2005). 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대체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illegible], 53(4), .47-65.

김상호(2007).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illegible], 55(3), .47-65.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란, 주재선(2010). 베이비붐 세대 남녀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용성(2005). 빈곤실태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김용하, 임성은(2011). 베이비붐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illegible], 31(2). .36-59.

김우성, 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세대, 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비교. [illegible], 10(4). .31-53.

김은정(2003). 베이비붐1세대, 1962-1969년 출생자세대, 20대의 세대간 및 세대별 가족이념 경향 분석.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욱(2002).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분석, [illegible], 19(), .267-293.

김진욱, 정의철(2010). 도시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분석-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illegible], 26(1), 33-60.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illegible], 17(1), 115-146.

남상섭(2005). 1990년대 후반기소득분배변화요인분석. [illegible], 23(3), .27-53.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여가백서.

박경숙(2001). 노년기불평등의 미래. [illegible], 35(6). .141-168.

박길성, 함인희, 조대엽(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집문당, 아산재단연구총서, 192집.

박성준(2000). 금융위기이후 소득불균등에대한 연구. [illegible], 23(2), .61-80.

박시내, 심규호(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2010상반기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박찬용, 강석훈, 김태완(2002).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10). 한국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이성균, 우석진, 김기헌, 김지경(2011).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변화와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09). 한국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 (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백은영(2011). 베이비 부머의 은퇴준비와 준비유형 결정요인 분석. [illegible], 27(2). .357-383.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2011).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

서울사이버대학교(2009). C A1급 과정 개발·운영 제안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재은,이기주(2010).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특성별유형화와다층노후소득보장전략.한국사회보장학회추계정기학술대회자료집,2010(2). .25-74.

선우덕(2011).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의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1(4).

선우덕, 김동진, 송양민, 김나영, 이윤경, 유혜영(201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0).

성명재(2001). 소득분배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김종면(2004).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손경환 (2011),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손병돈(2009). 노인소득의 불평등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illegible], 29(4). .1445-1461.

손유미, 김찬훈(2010).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신동균, 이정우, 방하남, 안종범, 강석훈(2009), 한국 근로자들의 은퇴경로 분석: 점진적 은퇴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신연희, 한경혜, 김호, 김병후, 김혜영, 박경숙(2010).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국신(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분석[illegible], 1(0), .53-76.

안국신, 박완규, 유항근(1995). 우리나라계층별소득분배의결정요인분석, 계량경제학보, 6(0), .57-86.

우석진(2010).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illegible], 30(2), .499-513.

우석진(2010). 한국 대졸 실업의 장기화와 세대간 이전, .

원종욱(1999).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가 직역간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노동경제논집[illegible], 22(2), .229-242.

유경준(1998).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변화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 김대일(2002). 외환 위기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윤소영,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08.

윤소영, 윤주, 박수정, 오세숙, 조아미, 지현진(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이미진(2002). 인구특성별 삶의 질 비교. 노인복지연구[illegible], 11(0). .115-186.

이만우 · 김진영 · 김대철(2007). 국민연금기대자산과 가계저축-전체 가계저축 및 소득계층별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학회 2007년 추계정기학술대회, 재정학회.

이미진, 김미혜 ,홍백의(2007). 남성고령자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illegible], 23(1). .1-26.

이삼식 외(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외(201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자원 수요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특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2063.

이소정, 정경희, 손병돈, 이미숙, 홍백의, 이은진(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이소정, 정경희, 김경래, 이은진, 강인, 이금룡외(2010). 노후 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유삼현, 한정란(2008). 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렬, 최강식(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행위에 미치는 영향, [illegible], 23(4), .83-103.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illegible], 16(3), 547-562.

이장영, 김문겸, 김민규, 박근수, 류승호, 강효민,외(2004). 여가. 일신사.

이정수.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 2010

이정우, 이성림(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illegible], 7(2), .79-109.

이지영(2011).베이비 부머 가계 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철선(2009).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임경묵, 문형표(2003),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 최경수외 편, 한국개발연구원.

임병인, 전승훈(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장윤정(2001). 세대의 라이프스타일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지연, 신현구(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2011). 고용안전망과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전승훈, 임병인(2008),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보험개발연구

정경희(2010).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복지욕구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119.

정경희(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5-10.

정경희, 남상호, 오영희, 이소정, 이윤경, 정홍원외 7(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2011)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1-37-9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외(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0-30-18.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순둘, 구미정(2011). 우울영향요인: 베이비 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illegible], 52(0). .305-324.

정옥분(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illegible], 12(2), 215-249.

정의신(2010). 한국의 국민연금과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전후세대의 은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정의철, 김진욱(2007).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에 관한 연구. [illegible], 23(3), .57-77.

정진호, 최강식(2001). 근로자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분해, [illegible], 49(3), .39-64.

정호성, 강성원, 문외솔, 박준, 손민중, 이찬영외(2010). 베이비붐세대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47), .72-80.

조현성, 김영범, 이주연(2004).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지은정(2011). 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생애주기관점을 중심으로. [illegible], 42(1). .333-370.

채구묵(2007). 소득불평등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illegible]

사회복지학, 59(1), .199-221.

최성철.(2008).베이비붐세대가국민연금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원광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인영, 최혜경(2009). 한국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81-109.

최현수(2002).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22(3), .223-243.

통계청(2005),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 특성 변동 추이, 보도자료(2005년6월22일, . . .)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2011년4월19일, . . .).

통계청(2011), 2010인구 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 요약, 보도자료(2011년5월31일, . . .).

한경혜,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일 대응방안, 2010 헬스케어심포지엄/노인사회참여활성화 포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149-171.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2011). B B : 한국의 베이비 부머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6). 노인생애경력조언자 양성교육 기본과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문화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함재봉(2005). 소득불평등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7(). .173-199.

허은정, 김우성(2003). 베이비붐세대가계와 세대가계의 소비지출 및 저축. 가족과 문화, 6(3), .79-97.

A , A (2001). " B A B B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589-595.

A & B , 2005.

A A(. . A A)(2007). A 2007-2012.

A , . & , .(1991). - '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53), .13-27.

A , (2005). , (32

), *Manpower Education Institute.*

B . . & B -B , . ., & ,

B , A.(2000). "E A :

A ,"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1(2)*, .7-18.

B - , .(2000). " D F A

A ," .

B , D (1998). "F , E

," D C , .

,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 , (2001). " D :

A ," . . C

. F , ., -

, C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3-241

B , . F. & D , C. .(1991). B B -E .

Population Bulletin 46(3). 2-35.

B , E. ., , . ., & F , . C.(1984).

?

. *Journal of Gerontology, 39*, .736-746.

B , E. ., , . ., F - , . C. & , A. .(1983).

' : A

. *Journal of Gerontology, 38*, .597-607.

B , .(1998). . , .

B , (2002). "A - E B B -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402-406.

B & B , 1996.

B , (1999). "E D C F C . . D ", *European Economic Review, 43,* .853-865.

B (2006). : 25% , C ; E , . C . A B .

C , (2006). " F ," *AFA Presidential Address*

C , & D . (1999). " ' E : E ", *Demography, 36(2), pp.*173-184.

C , , D & . (1993). " A C " : A , D , & , *Russell Saga Foundation.*

C D C , AA , A A . A 50-64: C C . A , A: A C D D ; 2009.A . . /

C . .(2008). C B . 2009. 7.22.

C A (2006). C C E : , 2006. 3. 30.

D , C. (2004). " :

D ' E C F
B ", *Economica, 73*, .75-98.
D , . (1980). "D F
?",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0),* .444-451.
E , .A., , C. ., & , D. .(1993). B
B ? , ,
F C C .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97-522.
E (2007). , . E ,
2007. 11.
F , B. (1993). " -
?" :
A , D , & , *Russell Saga Foundation.*
(1993). " F B B ", A D ,
1993, .36-40.
, . (1986). . *Generations, 10*, .16-20.
, . A.(1988). B B : A
- . *Family Relations, 37(4)*, .411-414.
, . C.(1979).
. , 19(3), .301-309.
, ., : A , C , A:
. 2003.
, , " , , : B
F ", *Journal of Economic Perpectives,* 11(2), .21-40.
, A . (1999). "E :
A D ,"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50, .271-324

, A . (2004), " D '
,"
, . , ,
D.C.: *Brookings Institution*, .57-125
.
, ,
. C

, . ., , . ., & , . C.(1983).
. , 23, .626-631.
. . & , . A., : A
,
, . & B. . (1993). "
" :
A , D , & , *Russell Saga Foundation.*
-D , B., , . B., & , . B.(2001). A
A C : E .
Family Relations, 50(3), .262-271.
-A , . E., .
: . C. B C , 1980.
.(2007). . A
DA , 2007. 4. 3.
, C & . . (1997). " F
",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72-97.
, A. & B , "D C , E
, D - , 1959-1989",
Demography, 32(3), .379-405.

, .A. & D - .(2001). A B B
?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569-579.
. C. & , D. (2010). -F
, :
.
, . & . (1985). " E
: A A A
", *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151-156.
, ., C , .,& , . (1993). - : A ,
, . A 8, .301-313.
, . & , .(1996).F : E
. .
, A. & , . (2007). B B :
, ,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205-224.
, A (1999). , E ,
, B D E , .
A , ,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and Russel Sage Foundation*
, A (2003). " ,"
, *Dartmouth College*
, A . . (2006). "B B
: , F ,
," ,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 A.,&B , .(1989). A A C :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275-290.

, D.A(1981). : A .
Social Work, 26, .419-423.
, (1988). " ," *Journal*
of Labor Economics, 6, .28-29
, D & A (1982). "A D A
", *The Economic Journal, 92(368),*
.888-902.
(2006). " :
- ?", , 2006, .58-67.
, ., C , . 1975.
, . & F . (1993). " C
" : A ,
D , & , *Russell Saga Foundation.*
, B.(2004). F :
C C , E , C .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8(1), 72-75.
, D. (1981). : A
. , A: A - .
, . F , :
, 1976.
, (2001), "D A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565-584
, .(2008). 'A': , -
. , A .
, . ., , . . & F , A.(E .), A : '
, ,
: , 1994.
, , , 2006

, C., , ., & , . (1990).
: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1029-1078.
, .C.(1977). -
. *Gerontologist, 17,* .421-425.
, .C.(1978). C '
. *Family Coordinator, 27,* .341-350.
, .C(1981). F : A
. *Journal of Minority Aging, 5,* .286-292.
, .C.(1984). F
. .92-109 . A.
(.), A : F .
, D: A .
, .C.,& , . .(1977). "F
." *Gerontologist 17. pp.*492-499.
, .(1992). C A ; :
. / 32, .648-655.
, . E. , . .,&A , . C.(1979). F .
B , CA: .
, ., , D., & - , . (2009).
.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82,* .8-14.
, E. (1986). .
.-F . 20-28.
, . & E , . (1990). E - :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p.*235-242.
(2008). ,

. C A , F , 2008. 1. 24.

<참고 사이트>

강남구노인복지관 . .

건강가정지원센터(2010).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국가통계포털 . .

국민연금공단 . . .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 . .

대한노인회 . .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 .

평생교육진흥원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2010). . . .

강남구노인복지관 . .

KIHASA

부록 1 포럼 위원 명단

	-